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형주

공동연구원 이종원



연구보고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명예연구위원)

연구보조원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실태, 요구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환경, 정책대안 등을 중심으로 시사점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로서 청소년 근로환경에 관한 선행연구와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정책 동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만 15세부터 24세까지의 500명 내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정도, 근로 경험과 관련한 인식 및 경험,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도움정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이란 비전 하에 총 5개 분야 10개 과제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노동시장 분야에서 공공부문에서의 고졸 청소년 일자리 제공, 청소년에 대한 취업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둘째,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분야에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부당임금 지급에 대한 감독 강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셋째, 근로청소년 건강권 분야에서 근로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시행, 근로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도입, 넷째, 노동인권 교육 분야에서 노동인권 교육 수혜 청소년 확대, 고용주 및 교사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 다섯째,

노동인권 상담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 센터 확충, 부처 간 근로청소년 대상 연계·통합 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노동문제는 학교교육과 대학입시라는 교육문제에 밀려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과 지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정책제언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근로청소년, 근로환경, 노동인권, 근로권익, 상담서비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실태, 요구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환경, 정책 대안 등을 중심으로 시사점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로서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선행연구와 청소년 근로보호와 관련된 정책 동향을 고찰하였음
- 전문가 자문으로서 청소년 근로상담 지원기관,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단체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관련 활동과 지원현황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였음
- 설문조사 시행으로, 조사대상은 청소년 중 법적 근로가 가능한 만 15~24세 청소년 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실태, 인식, 요구사항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로서, 근로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대상으로 정책현황 관련 의견 수렴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음

3. 주요결과

1) 청소년 근로환경 및 근로보호에 대한 문헌고찰

-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근로환경,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익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하였음
-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으로서,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상담·신고체계,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해 고찰하였음

2) 청소년 근로환경에 관한 인식 및 실태

-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정도인데, 헌법의 경우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반면,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한다’ 조항은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근로기준법의 경우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장/사업주는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반면, ‘임금의 시효는 3년이다’, ‘노동자가 사망/퇴직 시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조항은 가장 낮게 나타났음. 또한 ‘18세 미만 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고용을 금지한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반면, ‘18세 미만자의 야간, 휴일 노동 제한, 본인 동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가능하다’ 조항은 가장 낮게 나타났음. 청소년 관련법령의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고용을 금지한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반면, ‘(청소년기본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한 청소년 권리 홍보/교육, 근로기준법에 정한 청소년노동자 권리 교육 및 상담을 한다’

조항은 가장 낮게 나타났음. 기타 노동관련 법령의 경우는 ‘(최저임금법) 최저 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반면, ‘(최저임금법)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감액 가능하고, 단순응답자 특성별로 큰 업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는다’ 조항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근로 경험과 관련한 인식 및 실재에 있어서 노동문제에 관한 인식의 경우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등의 순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나타났음. 노동문제 관련 실제 경험의 경우는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등의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노동권 관련 교육정보 경험의 경우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 접함’, ‘학교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음’,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접 관련 정보 찾음’ 등의 순으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노동관련 피해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인식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나 노동관서에 도움 요청’,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 ‘관련 상담 등을 해주는 기관에 도움 요청’ 등의 순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도움정도에 있어서, 중앙부처 정책에 대한 이해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역할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정도의 경우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인지도 및 도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원’ 인지도 및 도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역할에 대한 인지와 도움정도의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 대상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 인지도 및 도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의 보호’, ‘업주와 동료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고객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등의 순으로 정부정책의 중점 추진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음

4.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비전 하에 총 5개 분야 10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청소년 노동시장 분야에서 공공부문에서의 고졸 청소년 일자리 제공, 청소년에 대한 취업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분야에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부당임금 지급에 대한 감독 강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등을 제안하였음
- 근로청소년 건강권 분야에서 근로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시행, 근로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도입 등을 제안하였음
- 노동인권 교육 분야에서 노동인권 교육 수혜 청소년 확대, 고용주 및 교사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음
- 노동인권 상담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 센터 확충, 부처간 근로청소년 대상 연계·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 19-R54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6
 - 3. 연구방법 6
- II.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문헌고찰
 - 1.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 2.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정책 동향 29
- III.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인식조사
 - 1. 조사 개요 37
 - 2. 청소년 근로환경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 39
- IV. 정책 제언 및 결론
 - 1. 정책 비전 및 분야 241
 - 2. 정책 제언 242
 - 3. 결론 257

참고문헌	261
부록	265
ABSTRACT	279

표 목차

표 II-1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	13
표 II-2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14
표 II-3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15
표 II-4 아르바이트의 종류(복수응답)	16
표 II-5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규모	17
표 II-6 아르바이트 급여 액수	19
표 II-7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방식	20
표 II-8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20
표 II-9 주당 아르바이트 근무일수	21
표 II-10 주당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22
표 II-11 근로권익 교육(노동교육)을 받은 경험	23
표 II-12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률	24
표 II-13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	26
표 II-14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방식(복수응답)	27
표 II-15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의/신고의 효과	28
표 III-1 조사 응답자 특성	38
표 III-2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노동조건을 법률로 정한다	39
표 III-3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노동조건을 법률로 정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40
표 III-4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41
표 III-5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42
표 III-6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43
표 III-7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44
표 III-8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한다	45

표 Ⅲ-9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46
표 Ⅲ-10 사용자는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	47
표 Ⅲ-11 사용자는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48
표 Ⅲ-12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지 못한다	49
표 Ⅲ-13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지 못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50
표 Ⅲ-14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51
표 Ⅲ-15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52
표 Ⅲ-16 사장 또는 사업주는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53
표 Ⅲ-17 사장 또는 사업주는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54
표 Ⅲ-18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55
표 Ⅲ-19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56
표 Ⅲ-20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한다	57
표 Ⅲ-2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58
표 Ⅲ-22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금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해지, 서면 명시 및 교부한다	59
표 Ⅲ-23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금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해지, 서면 명시 및 교부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60
표 Ⅲ-24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61

표 Ⅲ-25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62
표 Ⅲ-26 임금지급은 월 1회 이상 전체 금액을 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지급한다	63
표 Ⅲ-27 임금지급은 월 1회 이상 전체 금액을 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지급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64
표 Ⅲ-28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65
표 Ⅲ-29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66
표 Ⅲ-30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67
표 Ⅲ-31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68
표 Ⅲ-32 임금의 시효는 3년이다	69
표 Ⅲ-33 임금의 시효는 3년이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70
표 Ⅲ-34 18세 미만의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35시간 원칙, 초과 노동은 하루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제한한다	71
표 Ⅲ-35 18세 미만의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35시간 원칙, 초과 노동은 하루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제한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72
표 Ⅲ-36 18세 미만자의 야간, 휴일 노동 제한, 본인 동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가능하다	73
표 Ⅲ-37 18세 미만자의 야간, 휴일 노동 제한, 본인 동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가능하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74
표 Ⅲ-38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60분 이상 자유로운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75
표 Ⅲ-39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60분 이상 자유로운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76
표 Ⅲ-40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77
표 Ⅲ-41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78
표 Ⅲ-42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79
표 Ⅲ-43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80
표 Ⅲ-44 18세 미만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고용을 금지한다	81

표 Ⅲ-45 18세 미만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고용을 금지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82
표 Ⅲ-46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83
표 Ⅲ-47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84
표 Ⅲ-48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85
표 Ⅲ-49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86
표 Ⅲ-50 감독 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87
표 Ⅲ-51 감독 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88
표 Ⅲ-52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및 필요 시책을 마련한다	89
표 Ⅲ-53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및 필요 시책을 마련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90
표 Ⅲ-54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시 신고를 의무화 한다	91
표 Ⅲ-55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시 신고를 의무화 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92
표 Ⅲ-56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를 금지한다	93
표 Ⅲ-57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를 금지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94
표 Ⅲ-58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한 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 근로기준법에 정한 청소년노동자 권리 교육 및 상담을 한다	95
표 Ⅲ-59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한 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 근로기준법에 정한 청소년노동자 권리 교육 및 상담을 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96

표 Ⅲ-60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고용을 금지한다	97
표 Ⅲ-61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고용을 금지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98
표 Ⅲ-6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한다	99
표 Ⅲ-63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00
표 Ⅲ-64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101
표 Ⅲ-65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02
표 Ⅲ-66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감액 가능하고, 단순업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는다	103
표 Ⅲ-67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감액 가능하고, 단순업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는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04
표 Ⅲ-68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	105
표 Ⅲ-69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106
표 Ⅲ-70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	107
표 Ⅲ-71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08
표 Ⅲ-72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한다	109
표 Ⅲ-73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10
표 Ⅲ-74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11
표 Ⅲ-75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112
표 Ⅲ-76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113
표 Ⅲ-77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14
표 Ⅲ-78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115

표 Ⅲ-79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16
표 Ⅲ-80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117
표 Ⅲ-81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18
표 Ⅲ-82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119
표 Ⅲ-83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20
표 Ⅲ-84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121
표 Ⅲ-85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22
표 Ⅲ-86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	123
표 Ⅲ-87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24
표 Ⅲ-88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125
표 Ⅲ-89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26
표 Ⅲ-90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127
표 Ⅲ-91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28
표 Ⅲ-92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해준 경우	129
표 Ⅲ-93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해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30
표 Ⅲ-94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131
표 Ⅲ-95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32
표 Ⅲ-96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133
표 Ⅲ-97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34
표 Ⅲ-98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35
표 Ⅲ-99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36
표 Ⅲ-100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137
표 Ⅲ-101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38
표 Ⅲ-102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139

표 Ⅲ-103 임금율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40
표 Ⅲ-104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141
표 Ⅲ-105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42
표 Ⅲ-106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143
표 Ⅲ-107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44
표 Ⅲ-108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145
표 Ⅲ-109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46
표 Ⅲ-110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147
표 Ⅲ-111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48
표 Ⅲ-112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149
표 Ⅲ-113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50
표 Ⅲ-114 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해준 경우	151
표 Ⅲ-115 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해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52
표 Ⅲ-116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153
표 Ⅲ-117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54
표 Ⅲ-118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155
표 Ⅲ-119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56
표 Ⅲ-120 학교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157
표 Ⅲ-121 학교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58
표 Ⅲ-122 학교 이외의 곳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159
표 Ⅲ-123 학교 이외의 곳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60
표 Ⅲ-124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 노동권 관련 정보 접한 경험	161
표 Ⅲ-125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 노동권 관련 정보 접한 경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62

표 III-126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경험	163
표 III-127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경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64
표 III-128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165
표 III-129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66
표 III-130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167
표 III-131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68
표 III-132	여성가족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169
표 III-133	여성가족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70
표 III-134	고용노동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171
표 III-135	고용노동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72
표 III-136	교육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173
표 III-137	교육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74
표 III-138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75
표 III-139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76
표 III-140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77
표 III-141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78
표 III-142	교육부/교육청이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시행	179
표 III-143	교육부/교육청이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시행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80
표 III-144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181
표 III-145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인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82

표 III-146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도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83
표 III-147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원	184
표 III-148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원(인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85
표 III-149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원(도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86
표 III-150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	187
표 III-151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인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88
표 III-152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도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89
표 III-153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190
표 III-154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인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91
표 III-155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도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92
표 III-156 청소년 대상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	193
표 III-157 청소년 대상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인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94
표 III-158 청소년 대상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도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95
표 III-159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96
표 III-160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인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97
표 III-161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도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98
표 III-16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제공	199
표 III-16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제공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00
표 III-164 청소년 대상 일자리 정보서비스 확대	201
표 III-165 청소년 대상 일자리 정보서비스 확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02
표 III-166 청소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감독 강화 ..	203
표 III-167 청소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감독 강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04
표 III-168 청소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	205

표 Ⅲ-169	청소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06
표 Ⅲ-170	노동관련 법률·행정 용어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	207
표 Ⅲ-171	노동관련 법률·행정 용어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08
표 Ⅲ-172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209
표 Ⅲ-173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10
표 Ⅲ-174	일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211
표 Ⅲ-175	일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12
표 Ⅲ-176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	213
표 Ⅲ-177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14
표 Ⅲ-178	부당한 임금미지급이나 임금삭감으로부터 보호 강화	215
표 Ⅲ-179	부당한 임금미지급이나 임금삭감으로부터 보호 강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16
표 Ⅲ-180	학교에서 노동인권(권익) 교육 강화	217
표 Ⅲ-181	학교에서 노동인권(권익) 교육 강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18
표 Ⅲ-182	학교 내에 노동인권 관련 상담 구제 서비스 체계 마련 ..	219
표 Ⅲ-183	학교 내에 노동인권 관련 상담 구제 서비스 체계 마련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20
표 Ⅲ-184	업주와 동료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221
표 Ⅲ-185	업주와 동료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22
표 Ⅲ-186	고객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223
표 Ⅲ-187	고객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24
표 Ⅲ-188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의 보호	225
표 Ⅲ-189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의 보호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226
표 Ⅲ-190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사기구 참여 보장	227
표 Ⅲ-191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사기구 참여 보장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28

표 III-192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인력 및 역할 확대	229
표 III-193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인력 및 역할 확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30
표 III-19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법 위반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231
표 III-19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법 위반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32
표 III-196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 서비스 실시	233
표 III-197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 서비스 실시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34
표 III-198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	235
표 III-199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36
표 III-200 고용주 및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강화	237
표 III-201 고용주 및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강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38
표 IV-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제공	242
표 IV-2 청소년 대상 일자리 정보서비스 확대	244
표 IV-3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245
표 IV-4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인력 및 역할 확대	247
표 IV-5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248
표 IV-6 일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250
표 IV-7 학교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251
표 IV-8 학교 이외의 곳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252
표 IV-9 고용주 및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강화	253
표 IV-10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254
표 IV-11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 서비스 실시	256

그림 목차

그림 Ⅰ-1.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 및 실업률	4
그림 Ⅲ-1.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노동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	39
그림 Ⅲ-2.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41
그림 Ⅲ-3.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43
그림 Ⅲ-4.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한다	45
그림 Ⅲ-5. 사용자는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	47
그림 Ⅲ-6.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지 못한다	49
그림 Ⅲ-7.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51
그림 Ⅲ-8. 사장 또는 사업주는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53
그림 Ⅲ-9.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55
그림 Ⅲ-10.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한다	57
그림 Ⅲ-11.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금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해지, 서면 명시 및 교부한다	59
그림 Ⅲ-12.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61
그림 Ⅲ-13. 임금지급은 월 1회 이상 전체 금액을 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지급한다	63
그림 Ⅲ-14.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65
그림 Ⅲ-15. 노동자가 사망/퇴직 시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67
그림 Ⅲ-16. 임금의 시효는 3년이다	69

그림 Ⅲ-17. 18세 미만의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35시간 원칙, 초과 노동은 하루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제한한다 ..	71
그림 Ⅲ-18. 18세 미만자의 야간, 휴일 노동 제한, 본인 동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가능하다	73
그림 Ⅲ-19.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60분 이상 자유로운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75
그림 Ⅲ-20.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77
그림 Ⅲ-21.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79
그림 Ⅲ-22. 18세 미만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고용을 금지한다	81
그림 Ⅲ-23.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83
그림 Ⅲ-24.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85
그림 Ⅲ-25. 감독 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87
그림 Ⅲ-26.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및 필요 시책을 마련한다	89
그림 Ⅲ-27.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시 신고를 의무화 한다	91
그림 Ⅲ-28.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를 금지한다	93
그림 Ⅲ-29.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한 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 근로기준법에 정한 청소년노동자 권리 교육 및 상담을 한다	95
그림 Ⅲ-30.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고용을 금지한다	97
그림 Ⅲ-31.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한다	99
그림 Ⅲ-32.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101
그림 Ⅲ-33.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감액 가능하고, 단순업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는다	103
그림 Ⅲ-34.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	105

그림 Ⅲ-35.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107
그림 Ⅲ-36.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한다	109
그림 Ⅲ-37.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11
그림 Ⅲ-38.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113
그림 Ⅲ-39.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115
그림 Ⅲ-40.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	117
그림 Ⅲ-41.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	119
그림 Ⅲ-42.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	121
그림 Ⅲ-43.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	123
그림 Ⅲ-44.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125
그림 Ⅲ-45.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127
그림 Ⅲ-46.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해준 경우 ..	129
그림 Ⅲ-47.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131
그림 Ⅲ-48.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133
그림 Ⅲ-49.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35
그림 Ⅲ-50.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137
그림 Ⅲ-51.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139
그림 Ⅲ-52.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	141
그림 Ⅲ-53.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	143
그림 Ⅲ-54.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145
그림 Ⅲ-55.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147
그림 Ⅲ-56.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149
그림 Ⅲ-57. 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해준 경우	151
그림 Ⅲ-58.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153
그림 Ⅲ-59.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155
그림 Ⅲ-60. 학교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157
그림 Ⅲ-61. 학교 이외의 곳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159
그림 Ⅲ-62.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 노동권 관련 정보 접한 경험	161

그림 Ⅲ-63.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경험	163
그림 Ⅲ-64.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165
그림 Ⅲ-65.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167
그림 Ⅲ-66. 여성가족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169
그림 Ⅲ-67. 고용노동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171
그림 Ⅲ-68. 교육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173
그림 Ⅲ-69.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75
그림 Ⅲ-70.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77
그림 Ⅲ-71. 교육부/교육청이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시행	179
그림 Ⅲ-72.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181
그림 Ⅲ-73.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원	184
그림 Ⅲ-74.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	187
그림 Ⅲ-75.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190
그림 Ⅲ-76. 청소년 대상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	193
그림 Ⅲ-77.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96
그림 Ⅲ-7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제공	199
그림 Ⅲ-79. 청소년 대상 일자리 정보서비스 확대	201
그림 Ⅲ-80. 청소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감독 강화	203
그림 Ⅲ-81. 청소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205
그림 Ⅲ-82. 노동관련 법률·행정 용어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	207
그림 Ⅲ-83.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209
그림 Ⅲ-84. 일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211
그림 Ⅲ-85.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213
그림 Ⅲ-86. 부당한 임금미지급이나 임금삭감으로부터 보호 강화	215
그림 Ⅲ-87. 학교에서 노동인권(권익) 교육 강화	217
그림 Ⅲ-88. 학교 내에 노동인권 관련 상담 구제 서비스 체계 마련	219
그림 Ⅲ-89. 업주와 동료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221
그림 Ⅲ-90. 고객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223

그림 Ⅲ-91.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의 보호	225
그림 Ⅲ-92.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사기구 참여 보장	227
그림 Ⅲ-93.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인력 및 역할 확대	229
그림 Ⅲ-9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법 위반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231
그림 Ⅲ-95.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 서비스 실시	233
그림 Ⅲ-96.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	235
그림 Ⅲ-97. 고용주 및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강화	237
그림 Ⅳ-1.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정책 비전 및 분야별 정책과제 ...	241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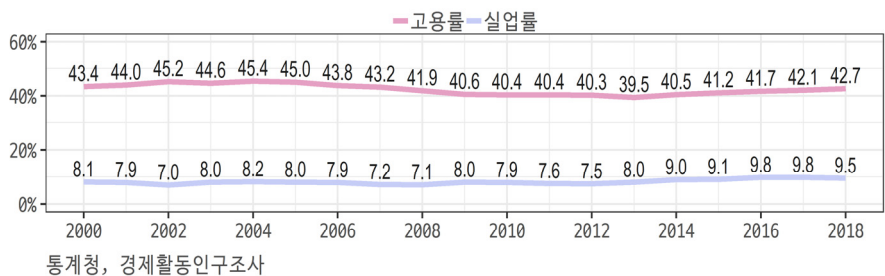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단계까지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 현 정부에서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 시기의 연령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부분 교육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소년정책 혹은 청소년사업 시각에서의 접근도 주로 학교 안과 밖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지원, 보호복지 등에 초점을 맞춰오다 보니 청소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 등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의 법적 연령 중 노동이 가능한 만 15~24세 연령대의 경우는 공교육과 고등교육 단계로 학업과 진학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고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는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학 진학이라는 문제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큰 사안이 되어 왔다. 하지만 결국 제도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가 건전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인으로서의 성장과 진출이고 이는 경제적으로 보면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를 하든 아니면 진학 대신 풀타임 근로를 선택하든 간에 이는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사회인으로서 진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역할이다.

1)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018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2.7%로 전년보다 0.6%p 증가하였는데, 청년층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4년부터 증가 추세이고, 연령대별 고용률은 15~24세가 26.2%로 전년대비 1.0%p 감소한 반면, 25~29세는 70.2%로 전년대비 1.5%p 증가하였다. 2018년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3%p 감소하였는데, 2013년 이후 청년층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소폭 감소(-0.3%p)하였고, 연령대별 실업률은 15~24세는 10.5%로 전년보다 0.2%p 증가한 반면, 25~29세는 8.8%로 전년보다 0.7%p 감소하였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9).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p.24.

그림 1-1.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 및 실업률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일상적인 활동의 하나로 인식될 만큼 노동시장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무척 다양한데,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생계형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고자 스펙관리 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2015).

통계청의 2019년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 실태와 관련하여 2018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중·고등학생)은 9.0%였으며 이는 2016년(11.3%)에 비해 2.3% 감소하였다. 중·고등학생 중 남자(8.7%)보다 여자(9.4%)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많고,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5.0%로 중학생(1.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주일 평균근로일수는 2.7일, 일일 근로시간은 6.2시간, 시간당 금액은 7,785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45.9%), 뷔페, 웨딩홀, 연회장(14.1%) 등 주로 서빙이나 주방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으며,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급별로 중학생은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보다 「전단지 배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9).

하지만 학교와 학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 방식이 청소년기의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일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낮설며,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은 다른 분야에 비해 높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사회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환경은 기본적인 법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감독이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청소년 근로환경과 관련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안선영,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실태, 요구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환경, 정책대안 등을 중심으로 시사점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이다. 여기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근로환경,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익에 대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이다.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상담·신고체계,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및 인식 파악이다.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환경 실태 파악,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청소년 대상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 및 수요에 대한 파악을 하였다.

넷째,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이다.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서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 및 분석으로서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선행연구와 청소년 근로보호와 관련된 정책 동향을 고찰하였다.

둘째, 청소년 근로관련 전문가 자문으로서 청소년 근로상담 지원기관,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단체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관련 활동과 지원현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로서, 조사대상은 청소년 중 법적 근로가 가능한 만 15~24세 청소년 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실태, 인식, 요구사항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넷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이다. 근로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대상으로 정책현황 관련 의견 수렴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다.

○———— 제2장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문헌고찰

- 1.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정책 동향

1.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선행연구 검토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조사는 대부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대다수가 학생 신분으로서, 일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직업 활동으로서 보다는 용돈 마련이나 학비 보조와 같은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는 독일어 “Arbeit”에서 유래된 “노동”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청소년 및 학생 등이 정규 업무가 아닌 부수적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 행하는 노동”(김동재, 2007)으로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직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언제든 더 나은 기회가 있으면 그만둘 수 있는 일자리”(황여정 외, 2015)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사회에서 아르바이트가 일하는 청소년들의 가장 일반적인 노동형태임을 고려하여, 아르바이트 관련 선행연구의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자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분석의 대상을 1) 최근 10년간 수행된 연구로서, 2) 24세 이하의 일반 청소년 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 확률표집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집 된, 4) 전국 단위의 조사로 한정하였다.

2) 이 장은 이종원 명예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1)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1)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2) 지난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지, 3) (기준 시점을 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지의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이 세 척도를 각각 현재경험률, 연간경험률, 그리고 생애경험률로 구분하여 그 선행연구의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1>과 같다.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현재경험률은 2016년과 2018년 조사에서 모두 3.3%였고, 같은 조사에서 연간경험률은 각각 11.3%(2016년), 9.0%(2018년)로 나타나 현재경험률의 세 배 수준이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의 다수가 학기 중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 주말이나 방학 등을 활용하여 짧은 기간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조사에서는 연간경험률이 18.2%로 높게 나타났는데, 중3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연령층이 높아진 데서 기인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차례에 걸쳐 조사한 연간경험률의 추이를 보면 11%~13% 남짓한 수준으로 이 기간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르바이트 생애경험률의 조사결과를 보면, 13세~24세 청소년들은 2014년 31.2%, 2017년 48.7%로서 중·고등학생들(2013년 17%, 2014년 25.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대학생, 비진학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훨씬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에 13~24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생애경험률이 48.7%로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우리사회의 청년층을 둘러싼 취업환경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1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

(단위: %)

구분	조사대상	조사명(약칭)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현재 경험률	중· 고등학생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¹⁾	—	—	—	—	3.3	—	3.3
연간 경험률	중· 고등학생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¹⁾	—	—	—	—	11.3	—	9.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²⁾	13.7	13.3	13.5	12.2	13.5	12.2	11.0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³⁾	—	—	18.2	—	—	—	—
생애 경험률	중· 고등학생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³⁾	—	17.0	25.1	—	—	—	—
	13~24 세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⁴⁾	38.1	—	31.2	—	—	48.7	—

* 출처: 1) 황여정, 김지경, 이윤주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김지경, 연보라, 정은진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 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서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유성렬, 최창욱 (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했는지, 선행연구의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2>와 같다. 중·고등학생들은 2013~2018년 기간 중에 이루어진 네 차례 조사에서 모두 친구/지인 또는 친구/선후배의 소개가 과반수를 점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 가족/친척 또는 가족/친지의 소개 순이었다. 인터넷을 활용한 구직은 친구/지인 또는 친구/선후배의 소개보다 다음 순위에 있지만 해가 갈수록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24세의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조사에서는 인터넷 알바 사이트의 응답률이 53.0%로서 친구/지인 소개의 응답률(22.7%)을 크게 상회하여 중·고등학생과 대조를 이루었다. 후기청소년들의 과반수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

트 일자리를 얻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알바 사이트 이용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조사대상	조사년도	1순위	2순위	3순위
중·고등학생	2013 ¹⁾	친구/지인 소개 (60.7%)	인터넷 알바 사이트 (19.1%)	가족/친척 소개 (10.8%)
	2014 ²⁾	친구/지인 소개 (57.0%)	인터넷 알바 사이트 (22.7%)	가족/친척 소개 (12.3%)
	2016 ³⁾	친구/선후배 소개 (55.4%)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24.6%)	부모/형제자매/친지소개 (12.3%)
	2018 ⁴⁾	친구/선후배 소개 (54.2%)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19.1%)	부모/형제자매/친지소개 (12.3%)
19~24세	2015 ⁵⁾	인터넷 알바 사이트 (53.0%)	친구/지인 소개 (22.7%)	가족/친척 소개 (7.5%)

* 출처: 1) 안선영 외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안선영 외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황여정 외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4) 김지경 외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5) 황여정 외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한 선행연구의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3>과 같다. 각 조사마다 응답항목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중·고등학생들은 용돈 마련이, 19세 또는 20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들은 생활비 충당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3년과 2016, 2018년의 조사에서는 용돈 부족 (“필요한 것을 사고 싶어서” 포함)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가정 형편 때문에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후기청소년들은 용돈이나 사회생활 경험보다는 생활비 마련의 응답률이 높았고, 등록금/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도 10% 안팎이었다. 고등학교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학비를 조달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표 II-3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조사대상	조사년도	1순위	2순위	3순위
중·고등학생	2013 ¹⁾	필요한 것을 사고 싶어서 (25.7%)	돈을 버는 목적 (24.3%)	사회경험을 쌓고 싶어서 (22.8%)
	2016 ²⁾	용돈이 부족해서 (50.0%)	사회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19.4%)	용돈 받을 형편이 아니어서 (12.3%)
	2018 ³⁾	용돈이 부족해서 (54.4%)	사회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24.6%)	용돈 받을 형편이 아니어서 (12.3%)
19~24세	2015 ⁴⁾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 (68.5%)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10.9%)	등록금을 벌기 위해 (7.5%)
20~24세	2016 ⁵⁾	생활비 충당 (38.6%)	용돈 마련 (37.1%)	학비 마련 (12.1%)

* 출처: 1) 안선영 외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황여정 외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 김지경 외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4) 황여정 외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이종원, 유한구, 채창균, 오승근, 김윤나 (2016).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한편,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안선영 외, 2013),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42.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21.1%), “부모님이 반대”(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 시기의 아르바이트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며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음식점이나 식당/레스토랑 서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2018년 기간 중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세 차례 조사 모두 음식점/식당 서빙이 가장 많았고, 전단지 돌리기(2013년)와 뷔페/웨딩홀/연회장(2016, 2018년)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층별 조사에서는 가장 어린 12~17세 청소년들 식당/레스토랑/카페 서빙과 전단지 돌리기가 많아서 중·고등학생과 유사한 응답결과를 보여주었지만, 20대 초반을 포함한 조사(13~24세, 19~24세)에서는 식당과 더불어 사무업

무나 매장 관리/판매, 서비스 등 아르바이트의 종류가 다양화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II-4 아르바이트의 종류(복수응답)

조사대상	조사년도	1순위	2순위	3순위
중·고등학생	2013 ¹⁾	음식점 (28.2%)	전단지 돌리기 (24.4%)	뷔페/웨딩홀 (13.1%)
	2016 ²⁾	음식점/식당/레스토랑 (41.6%)	뷔페/웨딩홀/연회장 (17.9%)	전단지 배포 (6.9%)
	2018 ³⁾	음식점/식당/레스토랑 (45.9%)	뷔페/웨딩홀/연회장 (14.1%)	전단지 배포 (7.8%)
12~17세	2013 ⁴⁾	식당/레스토랑/카페 (45.5%)	전단지 돌리기 (16.8%)	편의점/가게 판매원 (15.7%)
13~24세	2011 ⁵⁾	식당 (38.5%)	사무업무 (13.1%)	옷가게(10.4%)
	2014 ⁶⁾	식당 (46.3%)	옷가게 (9.0%)	사무업무 (8.4%)
19~24세	2015 ⁷⁾	서빙/주방 (38.1%)	매장관리/판매 (32.3%)	서비스 (19.3%)

* 출처: 1) 안선영 외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황여정 외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 김지경 외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4)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최은진, 이봉주, 김선숙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5)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6) 유성렬 외 (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7) 황여정 외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24세의 후기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아르바이트의 종류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비진학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매장관리/판매(45.5%)와 서빙/주방(43.9%)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대학생들은 사무/회계(16.8%), 개인지도/과외(18.8%)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황여정 외, 2015).

한편, 중·고등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카페 점원(21.8%)을 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편의점 직원(17.3%), PC방 점원(10.0%)의 순으로 나타났다(안선영 외, 2013). 중·고등학생들이 실제

로 많이 하고 있는 식당 서빙과 전단지 돌리기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각각 6.8%, 7.0%),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하고 싶어 하는 일 사이에는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근로환경

청소년들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가 2013년 49.8%, 2014년 42.4%로서 각각 가장 다수였다. 19~24세의 후기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지만,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가 35.5%로서 가장 많았다.

상시 근무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조항(근로시간 제한, 야근/주말 가산수당 지급,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연차/생리 휴가 부여)의 예외가 인정됨을 고려할 때, 일하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법적인 보호로부터 취약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5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규모

(단위: %)

조사대상	조사년도	1~4인	5~9인	10~29인	39~99인	100인 이상	잘 모름
중·고등학생	2013 ¹⁾	49.8	50.2				—
	2014 ²⁾	42.4	25.9	13.2	4.9	2.6	11.0
19~24세	2015 ³⁾	35.2	25.9	14.1	7.4	5.3	12.2

* 출처: 1) 안선영 외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안선영 외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황여정 외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할 때 급여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19~24세의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2015년)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급여 수준이라는 응답(1, 2순위 응답의 합산치)이 57.1%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무일/근무시간대(48.1%), 집/학교와의 거리(44.4%) 등의 순이었다. 업무내용(23.3%)이나 관심/적성과 업무 연관성(13.1%)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황여정 외, 2015). 이것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는 한시적인 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급여는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지만,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2018년 평균시급이 7,785원으로서 국가에서 규정한 최저임금(시급 7,530원)보다는 다소 많았지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가 전체의 1/3 이상(34.9%)이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 중 최저임금 미만 수급자 비율이 2018년에 34.9%로서 2013년(22.2%)과 2016년(25.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19~24세의 후기청소년들은 최저임금 미만 수급자 비율이 16.2%(2015년)로서 중·고등학생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나 근로자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적용되고 있음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최저임금의 차별적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최저임금 일률적용 원칙이 폐기될 경우 일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6 아르바이트 급여 액수

조사대상	조사년도	아르바이트 시급(평균)	국가 지정 최저임금	최저시급 미만 비율
중·고등학생	2013 ¹⁾	—	4,860원	22.2%
	2016 ²⁾	6,574.8원	6,030원	25.8%
	2018 ³⁾	7,785.1원	7,530원	34.9%
13~24세	2011 ⁴⁾	5,712원	4,320원	—
	2014 ⁵⁾	6,348원	5,210원	—
19~24세	2015 ⁶⁾	—	5,580원	16.2%

* 출처: 1) 안선영 외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황여정 외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 김지경 외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4)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5) 유성렬 외 (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6) 황여정 외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 미만 수급 등 임금상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급여명세서는 이 사실을 증빙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9~24세의 후기청소년들 중 급여명세서를 받은 경우는 17.0%로서 전체의 1/5에도 못 미쳤다.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89.7%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황여정 외, 2015).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에게 임금대장의 기재만이 의무화되어 있을 뿐 근로명세서의 발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명세서가 저임금 근로자, 특히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는 방식은 시급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66.7%가 시급으로 받았고 이어서 일당(14.6%), 월급(10.9%)의 순이었으며 주급(5.4%)이 가장 적었다. 2016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시급은 감소한 한편 월급은 다소 증가하였다. 아르바이트 급여의 지급방식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

로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시급과 월급, 전단지 배포는 일당,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은 주급으로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김지경 외, 2018).

표 II-7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방식

(단위: %)

조사대상	조사년도	시급	일당	주급	월급	기타
중·고등학생	2016 ¹⁾	72.1	14.6	3.1	7.1	3.1
	2018 ²⁾	66.7	14.6	5.4	10.9	2.4

* 출처: 1) 황여정 외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 김지경 외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아르바이트는 정규직 일자리에 비해 근무기간이 짧은 편이며,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학업 부담으로 인하여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4~2018년 기간 중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조사결과를 보면, 세 차례의 조사 모두 1주일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개월 미만의 응답률은 해마다 감소(2014년 59.3%, 2016년 51.5%, 2018년 43.0%)한 반면, 6개월 이상은 각각 10.2%, 14.1%, 20.6%로서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II-8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단위: %)

조사대상	조사년도	하루~6일	1주일~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중·고등학생	2014 ¹⁾	41.6	17.7	21.0	9.4	10.2
	2016 ²⁾	35.6	15.9	22.0	12.4	14.1
	2018 ³⁾	28.2	14.8	21.7	14.7	20.6
19~24세	2015 ⁴⁾	22.6		29.7	22.2	25.5

* 출처: 1) 안선영 외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황여정 외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 김지경 외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4) 황여정 외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현행 법령에 따르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사용자는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산출의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근속기간이 증가하는 것은 근로보호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24세의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2015년)에서는 아르바이트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인 경우가 29.7%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개월 이상이 25.5%로 나타났다. 후기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주당 아르바이트 근무일수에 대한 선행연구의 조사결과는 <표 II-9>와 같다. 중·고등학생들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조사 모두 2일 이상~3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각각 36.1%, 21.7%), 5일 이상 일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다. 주당 평균 근무일수를 산출하면 2016년 2.8일, 2018년 2.7로서 큰 변화는 없었다.

표 II-9 주당 아르바이트 근무일수

(단위: %)

조사대상	조사년도	1일 이상~ 2일 미만	2일 이상~ 3일 미만	3일 이상~ 5일 미만	5일 이상	일주일 평균
중·고등학생	2014 ¹⁾	25.0	36.1	18.9	20.0	2.8일
	2016 ²⁾	20.0	42.1	21.7	16.3	2.7일
19~24세	2015 ³⁾	54.4			45.5	대학생: 3.79일 비전학: 4.58일

* 출처: 1) 황여정 외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 김지경 외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 황여정 외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24세의 후기청소년들은 5일 이상 상근하는 청소년이 45.5%(2015년)로서 중·고등학생의 2배 이상에 달하였다. 후기청소년들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진학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어 대학생은 3.8일, 비진학 청소년은 4.6일로서 하루 가까이 차이가 났다. 근무일수의 측면에서 보면, 고졸 비진학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주 5일 근무하는 일반 정규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주당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10>과 같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2013년과 2016년, 2018년의 세 차례 조사에서 10시간 이하인 경우가 30.9%에서 34.1%, 36.0%로 조금씩 증가한 한편 20시간 초과는 각각 38.3%, 26.5%, 19.8%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17.2시간에서 2018년 15.7시간으로 2년 사이에 약 1.5시간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의 감소현상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김지경 외, 2018). 19~24세의 후기청소년들의 근무시간(2015년)은 15시간 초과~40시간미만이 58.5%를 점하고 있고 40시간을 넘는 경우도 15.1%로서 중·고등학생들보다 훨씬 오랜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주당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단위: %)

조사대상	조사년도	8시간 이하	8~10 시간	10~15 시간	15~20 시간	20~40 시간	40시간 초과	주당 평균
중·고등학생	2013 ¹⁾	30.9		18.8	12.1	29.1	9.2	—
	2016 ²⁾	22.6	11.5	18.3	21.1	21.9	4.6	17.2시간
	2018 ³⁾	22.8	13.2	22.1	22.1	16.5	3.2	15.7시간
19~24세	2015 ⁴⁾		26.4			58.5	15.1	—

* 출처: 1) 안선영 외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황여정 외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 김지경 외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4) 황여정 외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익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보호를 위해서는 노동 관련 주요 법령과 노동자의 인권,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이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근로권익 교육이나 노동교육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중·고등학생들이 근로권익 교육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4년은 16.5%(생애경험률), 2016년은 28.8%, 2018년은 36.1%(각각 연간경험률)로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교육을 받은 장소(기관)는 2016년과 2018년 모두 학교가 가장 많았고, 2018년에는 공공기관/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

19~24세의 후기청소년들은 근로권익 교육을 받은 경험자가 17.5%(생애경험률)에 머물러 2016년과 2018년의 중·고등학생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이나 특강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노동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학교나 사업체 또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교육 기회는 매우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11 근로권익 교육(노동교육)을 받은 경험

(단위: %)

조사대상	조사년도	교육 받은 경험 있음	교육받은 장소(기관)			
			학교	공공기관/ 전문교육기관	청소년시설	아르바이트 업체
중·고등학생	2014 ¹⁾	16.5				
	2016 ²⁾	28.8	26.5	6.2	6.7	2.7
	2018 ³⁾	36.1	36.1	33.8	8.1	3.2
19~24세	2015 ⁴⁾	17.5				

* 출처: 1) 안선영 외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황여정 외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 김지경 외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4) 황여정 외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근로권의 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들에게 그 교육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질문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도움이 됨” 60.1%, “매우 도움이 됨” 11.8%)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근로권의 교육이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지경 외, 2018). 실제로 근로권의 교육을 받은 경험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예컨대 노동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받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황여정 외, 2015).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제17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시간제 노동이 대부분인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이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표 II-12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률

(단위: %)

조사대상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중·고등학생 ¹⁾	16.7	21.6	22.9	28.6	30.2	34.4	42.5
13~24세 ²⁾	33.9	—	44.0	—	—	—	—
19~24세 ³⁾	—	—	—	37.6	—	—	—
20~24세 ⁴⁾	—	—	—	—	37.6	—	—

* 출처: 1) 최창욱 외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유성렬 외 (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3) 황여정 외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이종원 외 (2016).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7개년에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이 2016년 16.7%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42.5%로 나타났다. 지난 7개년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 미작성 사업장이 더 많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4세 이하의 청소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체로 같은 시기의 중·고등학생들 보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중·고교생들은 “작성하지 않아도 일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46.9%)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고용주(사장)가 싫어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서”(30.8%) 이었다(안선영 외, 2013). 19~24세의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하여 “고용주가 작성하자고 하지 않아서”(50.2%),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32.4%), “내가 먼저 쓰자고 하면 채용이 안될까 봐”(7.0%)의 순으로 나타났다(황여정 외, 2015). 근로계약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 부족과 더불어 고용주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청소년들 중 20.1%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 수급자가 9.6%에 머물렀다(황여정 외, 2015). 이것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7개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는 <표 II-13>과 같다. 임금 관련 부당한 처우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구타나 폭행, 성적인 피해 경험도 보고되었다.

표 II-13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

(단위: %)

	2011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22.0	27.2	27.1	25.0	20.2	20.5	18.6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7.3	15.1	17.5	17.1	15.0	17.5	13.1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했다	17.3	14.8	18.5	13.8	15.6	17.1	14.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6.0	9.3	7.3	6.9	6.0	7.9	10.2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했다	11.7	13.6	13.0	10.3	9.5	15.0	11.3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했다	10.2	14.5	11.5	11.8	10.6	12.3	12.2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1.4	5.4	4.7	2.5	3.1	3.0	3.3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1.7	6.3	6.0	3.2	3.3	4.4	2.9

* 출처: 최창욱 외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대부분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4년의 조사결과를 보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그냥 계속 일하거나(59.7%), 일을 그만 두는 것(33.8%)과 같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항의(15.7%)나 신고(1.8%)와 같은 적극적 대응은 소수에 머물렀다. 19~24세의 연장청소년들은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항의하거나(19.7%), 신고(6.2%)하는 등 적극적 대응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소극적 대응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다수임에는 차이가 없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방식은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들은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항의,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0%인 반면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13%에 달하여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안선영 외, 2014). 이와 같은 응답경향은 19~24세의 연장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노동인권 교육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황여정 외, 2015).

표 II-14 부당한 처우에 대한 대응방식(복수응답)

(단위: %)

조사대상	조사년도	계속 일함	도움 요청할 곳을 몰라 아무것도 못함	일을 그만 둠	개인적으로 항의	주변/단체 의 도움을 받음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 신고
중·고등학생	2014 ¹⁾	59.7	10.6	33.8	15.7	10.6	1.8
19~24세	2015 ²⁾	46.6	12.7	36.7	19.7	12.9	6.2

* 출처: 1) 안선영 외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황여정 외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항의 또는 신고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하였다. 특히 항의나 신고를 통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응답이 2016년 35.3%에서 2018년에 47.3%로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권의 교육의 일환으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표 II-15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의/신고의 효과

(단위: %)

조사대상	조사년도	도움이 되었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	도움이 되었고, 문제가 일부 해결	도움이 되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음
중·고등학생	2016 ¹⁾	35.3	22.1	12.8	29.9
	2018 ²⁾	47.3	22.7	11.0	19.0

* 출처: 1) 황여정 외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 김지경 외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정책 동향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부처 간 연계 하에 공동으로 또는 개별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 근로보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립된 종합대책으로는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2005), “연소근로자 보호대책”(2008),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추진방안”(고용노동부, 2014)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상담·신고체계, 청소년 근로권의 교육과 홍보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정부는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하여 편의점,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근로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 감독을 병행하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감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연소청소년(15~18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외, 2012).

사업장 점검은 매년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활성화되

는 여름/겨울 방학기간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노동관계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주요점검 항목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 보호조항 미준수, 최저임금 미지급 등이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위반 여부, 금지 표지(“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및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미부착 등도 점검대상이 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별 위반율을 발표함으로써 법 위반 예방 및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a). 특히 2013년부터는 점검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을 위반한 업체로 하여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반복적인 위반 업체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다(고용노동부 외, 2012). 방학기간의 점검과 더불어 매년 4월 10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018년 겨울방학 기간에 이루어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결과(여성가족부, 2018b)를 보면, 전국 25개 지역 478개 업소(청소년 고용업소 23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 211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6건 등 총 227개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이중 노동법규 위반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이 과반수였고(52.1%), 다음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0.4%), 최저임금 미고지(18.0%) 등의 순이었다. 위반업소의 유형별로는 편의점/슈퍼가 39.1%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반음식점(26.0%), 커피전문점(12.5%), 빙수/제과점(7.7%), ‘패스트푸드점’(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계기관의 정례적인 합동점검과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은퇴 전문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하여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 직장 내 성희롱 등 청소년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점검과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에서 130명의 지킴이가 위촉되어 최저임금 미준수,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법 위반·의심 사업장 5,785개소를 적발하였고, 144,157개소에서 최저임금 관련 현장 홍보를 실시하였다(고용노동부, 2018)

2) 청소년 근로보호 관련 상담·신고체계

현재 고용노동부가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담·신고 체계로는 “1318 알바신고센터”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이 있다.

알바신고센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알바신고센터에는 전담교사(생활지도교사 등)가 배치되어 수집된 피해 사례를 지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면, 근로감독관은 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모바일 앱과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설치하고 전국 노동관서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48명)을 지정하는 등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였다(여성가족부, 2018a).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이 상담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와 더불어, 온라인(www.youthlabor.co.kr), 모바일(앱, 카카오톡 ID: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을 통하여 실시간 댓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센터를 통한 상담 후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가 필요하거나 지방관서를 통한 진정사건 등으로 접수를 희망할 경우,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관할 지역 청소년보호위원(2017년 269명)을 배정하여 신고 및 소송을 대행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통합 상담·권리 구제 지원체계를 마련

하였다(고용노동부, 2018). 이밖에 센터에서는 수요자 요구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청, 지방관서 등과 협업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2017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주요 실적을 보면, 상담 15,462건, 권리구제 392건, 체불 해결금액 2억 8천만원, 교육 259회(교육인원 23,397명) 등으로 집계되었다(고용노동부, 2018).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다양한 방식(전화, 문자·카카오톡,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등)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현장지원과 연계지원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현장지원은 센터의 근로현장 도우미(해피워크 매니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중재를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임금체불, 성희롱, 폭언·폭행 등 심각한 사안으로서 중재가 어려울 경우 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처리절차를 밟기도 한다. 연계지원은 청소년들의 근로 사유와 여건을 파악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서비스(건강, 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이밖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근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실적을 보면 근로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32,882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근로현장 도우미의 밀착상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18,112건의 근로권익 침해를 해결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3)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과 홍보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근로권익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은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등 근로권익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체로 각 지역의 고용노동청과 교육청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며 고용노동청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강사(지방관서 변호사, 공인노무사, 청소년근로권익 보호위원, 청소년 전담 감독관 등)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김지경, 이상준, 2015; 여성가족부, 2018a). 2014년까지 특성화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15년부터는 희망하는 일반계고등학교로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밖에 중·고등학생 대상 일터 현장체험 프로그램인 잡스쿨(Job School) 운영 시 학생에 대한 직업의식 및 법정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실 운영 시 취업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a).

고용노동연수원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년과 교사,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용노동연수원, 201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 과정은 “찾아가는 청소년 고용노동 교실”,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 “청소년 진로캠프” 등이 있다. 찾아가는 청소년 고용노동 교실은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법 및 노사관계 등을 교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는 청소년들이 1박2일 동안 합숙하면서 노동가치관과 직업윤리, 산업현장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대우/차별사례와 대처방안 등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사 대상의 교육과정으로는 “청소년 지도를 위한 찾아가는 고용노동교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원직무 연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노동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강사가 중·고등학교,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 관련 법령, 부당처우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a).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단(267개 단체, 1만 8천여 명 활동)을 활용하여 편의점, 카페,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길잡이 책자를 배포하여 업주의 청소년 근로자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노동관계법·청소년 보호법 제도 및 캠페인 활동을 상시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a).

○ — 제3장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인식조사

- 1. 조사 개요
- 2. 청소년 근로환경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

1. 조사 개요

1) 모집단

본 연구의 모집단은 만 15~24세 청소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설계

- 표본수 : 총 5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구축 후 설문 URL 이메일 발송
- 표본추출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취업유형별 균등할당
- 조사기간 : 2019년 9월 19일 ~ 10월 13일
- 주요 조사내용 :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정도, 근로 경험과 관련한 인식 및 경험,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도움정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

3)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3)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대상자인 만 15~24세 청소년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III-1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전체		500	100.0%
연령	10대	250	50.0%
	20대	250	50.0%
성별	남자	250	50.0%
	여자	250	50.0%
학력별	고졸	313	62.6%
	대졸	179	35.8%
	대학원이상	8	1.6%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3.2%
	비정규직 취업	167	33.4%
	정규직 취업	167	33.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67.1%
	한시적노동	49	29.3%
	비전형노동	6	3.6%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94.6%
	시간제노동	9	5.4%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0.0%
	충청권	100	20.0%
	경상권	100	20.0%
	전라권	100	20.0%
	강원/제주권	100	20.0%

2. 청소년 근로환경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

1) 근로환경 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1) 노동환경 관련 ‘헌법’ 보호 조항에 대한 이해

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노동조건을 법률로 정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노동조건을 법률로 정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2.8%(매우: 17.0% + 알고 있는 편: 55.8%)로 ‘모른다’는 응답 27.2%(전혀: 4.6% + 모르는 편: 2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72.8%) 및 20대(72.8%) 응답이 70%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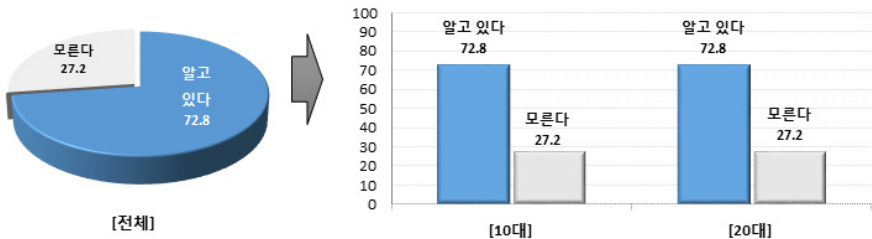


그림 III-1.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노동조건을 법률로 정한다

표 III-2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노동조건을 법률로 정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85(17.0)	279(55.8)	113(22.6)	23(4.6)	-
10대	250	51(20.4)	131(52.4)	55(22.0)	13(5.2)	1.489
20대	250	34(13.6)	148(59.2)	58(23.2)	10(4.0)	(.223)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노동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85(17.0)	279(55.8)	113(22.6)	23(4.6)	-
성별	남자	250	51(20.4)	132(52.8)	56(22.4)	11(4.4)	.240 (.624)
	여자	250	34(13.6)	147(58.8)	57(22.8)	12(4.8)	
학력별	고졸	313	56(17.9)	172(55.0)	71(22.7)	14(4.5)	.411 (.664)
	대졸	179	28(15.6)	103(57.5)	40(22.3)	8(4.5)	
	대학원이상	8	1(12.5)	4(50.0)	2(25.0)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3(19.9)	86(51.8)	36(21.7)	11(6.6)	.132 (.876)
	비정규직 취업	167	21(12.6)	101(60.5)	41(24.6)	4(2.4)	
	정규직 취업	167	31(18.6)	92(55.1)	36(21.6)	8(4.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7(15.2)	60(53.6)	31(27.7)	4(3.6)	.897 (.410)
	한시적노동	49	3(6.1)	36(73.5)	10(20.4)	0(0)	
	비전형노동	6	1(16.7)	5(83.3)	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0(19.1)	82(52.2)	34(21.7)	11(7.0)	.021 (.886)
	시간제노동	9	3(33.3)	4(44.4)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5(15.0)	62(62.0)	22(22.0)	1(1.0)	.404 (.806)
	충청권	100	18(18.0)	56(56.0)	18(18.0)	8(8.0)	
	경상권	100	18(18.0)	54(54.0)	24(24.0)	4(4.0)	
	전라권	100	14(14.0)	54(54.0)	28(28.0)	4(4.0)	
	강원/제주권	100	20(20.0)	53(53.0)	21(21.0)	6(6.0)	

*P<.05, **P<.01, ***P<.001

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1.4%(매우: 15.0% + 알고 있는 편: 46.4%)로 ‘모른다’는 응답 38.6%(전혀: 7.6% + 모르는 편: 3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3.6%로 10대(59.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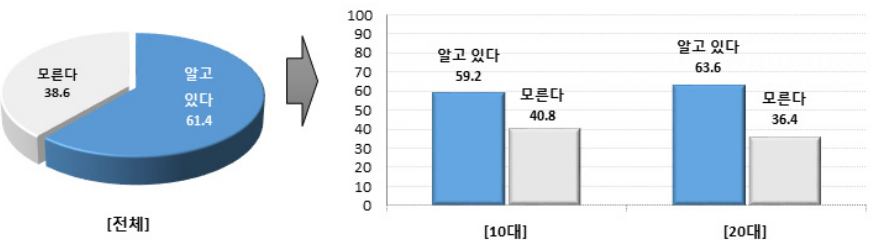


그림 Ⅲ-2.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표 Ⅲ-4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75(15.0)	232(46.4)	155(31.0)	38(7.6)	-
10대	250	48(19.2)	100(40.0)	79(31.6)	23(9.2)	10.885**
20대	250	27(10.8)	132(52.8)	76(30.4)	15(6.0)	(.001)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75(15.0)	232(46.4)	155(31.0)	38(7.6)	-
성별	남자	250	51(20.4)	110(44.0)	72(28.8)	17(6.8)	.473 (.492)
	여자	250	24(9.6)	122(48.8)	83(33.2)	21(8.4)	
학력별	고졸	313	54(17.3)	136(43.5)	98(31.3)	25(8.0)	.262 (.769)
	대졸	179	21(11.7)	91(50.8)	55(30.7)	12(6.7)	
	대학원이상	8	0(.0)	5(62.5)	2(25.0)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3(19.9)	61(36.7)	54(32.5)	18(10.8)	.561 (.571)
	비정규직 취업	167	17(10.2)	85(50.9)	57(34.1)	8(4.8)	
	정규직 취업	167	25(15.0)	86(51.5)	44(26.3)	12(7.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3(11.6)	52(46.4)	42(37.5)	5(4.5)	.285 (.753)
	한시적노동	49	4(8.2)	30(61.2)	12(24.5)	3(6.1)	
	비전형노동	6	0(.0)	3(50.0)	3(5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0(19.1)	59(37.6)	50(31.8)	18(11.5)	.000 (.982)
	시간제노동	9	3(33.3)	2(22.2)	4(44.4)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0(10.0)	57(57.0)	28(28.0)	5(5.0)	.070 (.991)
	충청권	100	19(19.0)	44(44.0)	25(25.0)	12(12.0)	
	경상권	100	19(19.0)	39(39.0)	33(33.0)	9(9.0)	
	전라권	100	13(13.0)	47(47.0)	34(34.0)	6(6.0)	
	강원/제주권	100	14(14.0)	45(45.0)	35(35.0)	6(6.0)	

*P<.05, **P<.01, ***P<.001

다.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85.8%(매우: 36.8% + 알고 있는 편: 49.0%)로 ‘모른다’는 응답 14.2%(전혀: 3.2% + 모르는 편: 1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86.4%) 및 20대(85.2%) 응답이 85%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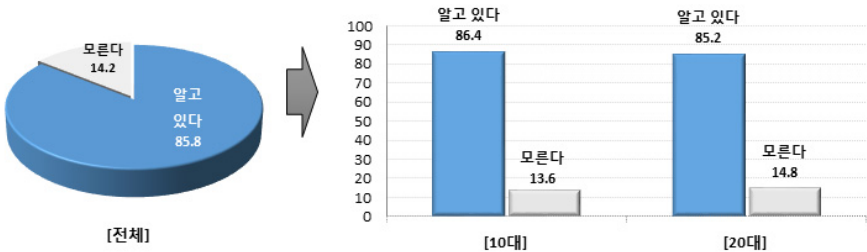


그림 Ⅲ-3.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표 Ⅲ-6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84(36.8)	245(49.0)	55(11.0)	16(3.2)	-
10대	250	92(36.8)	124(49.6)	25(10.0)	9(3.6)	.005
20대	250	92(36.8)	121(48.4)	30(12.0)	7(2.8)	(.944)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93.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7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84(36.8)	245(49.0)	55(11.0)	16(3.2)	-
성별	남자	250	86(34.4)	125(50.0)	33(13.2)	6(2.4)	.633 (.427)
	여자	250	98(39.2)	120(48.0)	22(8.8)	10(4.0)	
학력별	고졸	313	114(36.4)	157(50.2)	32(10.2)	10(3.2)	.270 (.763)
	대졸	179	66(36.9)	85(47.5)	22(12.3)	6(3.4)	
	대학원이상	8	4(50.0)	3(37.5)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66(39.8)	78(47.0)	17(10.2)	5(3.0)	.628 (.534)
	비정규직 취업	167	56(33.5)	92(55.1)	16(9.6)	3(1.8)	
	정규직 취업	167	62(37.1)	75(44.9)	22(13.2)	8(4.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8(33.9)	59(52.7)	13(11.6)	2(1.8)	.497 (.609)
	한시적노동	49	17(34.7)	29(59.2)	2(4.1)	1(2.0)	
	비전형노동	6	1(16.7)	4(66.7)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60(38.2)	76(48.4)	16(10.2)	5(3.2)	.002 (.968)
	시간제노동	9	6(66.7)	2(22.2)	1(11.1)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5(35.0)	58(58.0)	7(7.0)	0(0)	1.335 (.256)
	충청권	100	42(42.0)	44(44.0)	11(11.0)	3(3.0)	
	경상권	100	36(36.0)	53(53.0)	8(8.0)	3(3.0)	
	전라권	100	31(31.0)	48(48.0)	17(17.0)	4(4.0)	
	강원/제주권	100	40(40.0)	42(42.0)	12(12.0)	6(6.0)	

*P<.05, **P<.01, ***P<.001

라.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한다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2%(매우: 12.6% + 알고 있는 편: 41.6%)로 ‘모른다’는 응답 45.8%(전혀: 8.2% + 모르는 편: 37.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6.0%로 20대(52.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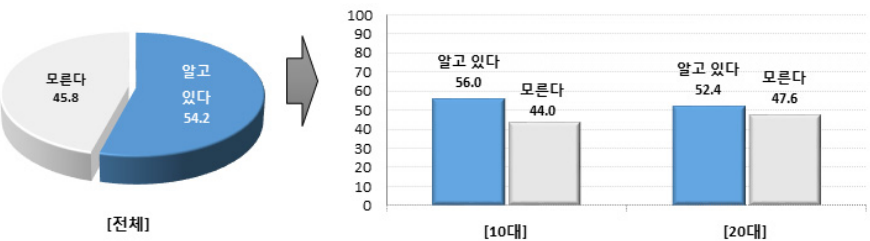


그림 Ⅲ-4.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한다

표 Ⅲ-8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63(12.6)	208(41.6)	188(37.6)	41(8.2)	-
10대	250	44(17.6)	96(38.4)	87(34.8)	23(9.2)	8.203**
20대	250	19(7.6)	112(44.8)	101(40.4)	18(7.2)	(.004)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63(12.6)	208(41.6)	188(37.6)	41(8.2)	-
성별	남자	250	36(14.4)	108(43.2)	87(34.8)	19(7.6)	.005 (.945)
	여자	250	27(10.8)	100(40.0)	101(40.4)	22(8.8)	
학력별	고졸	313	48(15.3)	132(42.2)	110(35.1)	23(7.3)	3.098* (.046)
	대졸	179	15(8.4)	71(39.7)	77(43.0)	16(8.9)	
	대학원이상	8	0(.0)	5(62.5)	1(12.5)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1(18.7)	54(32.5)	64(38.6)	17(10.2)	.056 (.945)
	비정규직 취업	167	13(7.8)	84(50.3)	59(35.3)	11(6.6)	
	정규직 취업	167	19(11.4)	70(41.9)	65(38.9)	13(7.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1(9.8)	54(48.2)	41(36.6)	6(5.4)	.333 (.717)
	한시적노동	49	2(4.1)	26(53.1)	17(34.7)	4(8.2)	
	비전형노동	6	0(.0)	4(66.7)	1(16.7)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9(18.5)	52(33.1)	60(38.2)	16(10.2)	.132 (.717)
	시간제노동	9	2(22.2)	2(22.2)	4(44.4)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9(9.0)	51(51.0)	36(36.0)	4(4.0)	1.204 (.308)
	충청권	100	16(16.0)	43(43.0)	29(29.0)	12(12.0)	
	경상권	100	13(13.0)	40(40.0)	41(41.0)	6(6.0)	
	전라권	100	12(12.0)	43(43.0)	40(40.0)	5(5.0)	
	강원/제주권	100	13(13.0)	31(31.0)	42(42.0)	14(14.0)	

*P<.05, **P<.01, ***P<.001

(2) 노동환경 관련 ‘근로기준법’ 보호 조항에 대한 이해

가. 사용자는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 노동을 가용하지 못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84.2%(매우: 30.4% + 알고 있는 편: 53.8%)로 ‘모른다’는 응답 15.8%(전혀: 2.8% + 모르는 편: 1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83.6%) 및 20대(84.8%) 응답이 84%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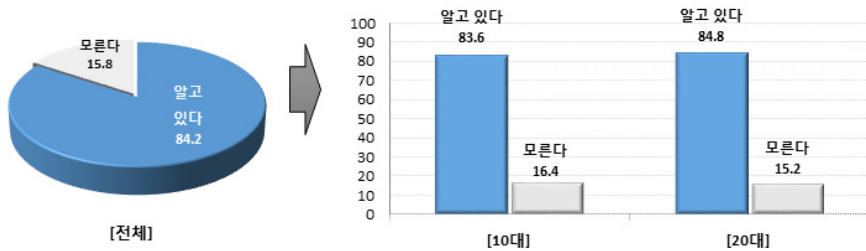


그림 III-5. 사용자는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

표 III-10 사용자는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52(30.4)	269(53.8)	65(13.0)	14(2.8)	-
10대	250	70(28.0)	139(55.6)	33(13.2)	8(3.2)	.955
20대	250	82(32.8)	130(52.0)	32(12.8)	6(2.4)	(.329)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87.6%), 수도권(90.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1 사용자는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52(30.4)	269(53.8)	65(13.0)	14(2.8)	-
성별	남자	250	74(29.6)	128(51.2)	42(16.8)	6(2.4)	.165 (.685)
	여자	250	78(31.2)	141(56.4)	23(9.2)	8(3.2)	
학력별	고졸	313	88(28.1)	177(56.5)	38(12.1)	10(3.2)	.764 (.467)
	대졸	179	60(33.5)	89(49.7)	26(14.5)	4(2.2)	
	대학원이상	8	4(50.0)	3(37.5)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6(27.7)	91(54.8)	24(14.5)	5(3.0)	.556 (.574)
	비정규직 취업	167	53(31.7)	89(53.3)	23(13.8)	2(1.2)	
	정규직 취업	167	53(31.7)	89(53.3)	18(10.8)	7(4.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6(32.1)	57(50.9)	19(17.0)	0(.0)	1.748 (.177)
	한시적노동	49	16(32.7)	29(59.2)	3(6.1)	1(2.0)	
	비전형노동	6	1(16.7)	3(50.0)	1(16.7)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3(27.4)	87(55.4)	22(14.0)	5(3.2)	.214 (.644)
	시간제노동	9	3(33.3)	4(44.4)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8(28.0)	62(62.0)	9(9.0)	1(1.0)	.705 (.588)
	충청권	100	38(38.0)	47(47.0)	10(10.0)	5(5.0)	
	경상권	100	25(25.0)	57(57.0)	15(15.0)	3(3.0)	
	전라권	100	29(29.0)	57(57.0)	12(12.0)	2(2.0)	
	강원/제주권	100	32(32.0)	46(46.0)	19(19.0)	3(3.0)	

*P<.05, **P<.01, ***P<.001

나.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지 못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82.0%(매우: 33.8% + 알고 있는 편: 48.2%)로 ‘모른다’는 응답 18.0%(전혀: 4.0% + 모르는 편: 1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80.8%) 및 20대(83.2%) 응답이 80%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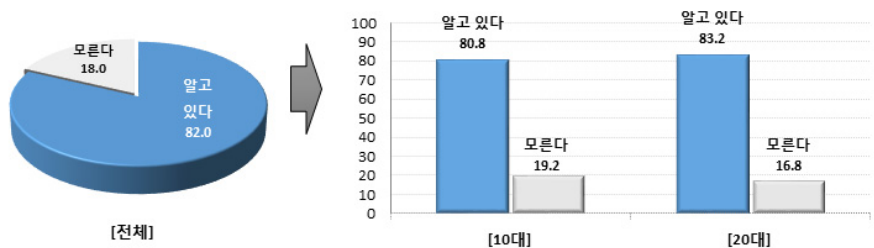


그림 Ⅲ-6.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지 못한다

표 Ⅲ-12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지 못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69(33.8)	241(48.2)	70(14.0)	20(4.0)	-
10대	250	76(30.4)	126(50.4)	36(14.4)	12(4.8)	1.018
20대	250	93(37.2)	115(46.0)	34(13.6)	8(3.2)	(.313)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89.0%)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3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지 못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69(33.8)	241(48.2)	70(14.0)	20(4.0)	-
성별	남자	250	81(32.4)	123(49.2)	33(13.2)	13(5.2)	.036 (.849)
	여자	250	88(35.2)	118(47.2)	37(14.8)	7(2.8)	
학력별	고졸	313	101(32.3)	154(49.2)	43(13.7)	15(4.8)	.592 (.554)
	대졸	179	64(35.8)	85(47.5)	25(14.0)	5(2.8)	
	대학원이상	8	4(50.0)	2(25.0)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8(28.9)	84(50.6)	25(15.1)	9(5.4)	1.576 (.208)
	비정규직 취업	167	59(35.3)	82(49.1)	22(13.2)	4(2.4)	
	정규직 취업	167	62(37.1)	75(44.9)	23(13.8)	7(4.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8(33.9)	56(50.0)	17(15.2)	1(9)	2.895 (.058)
	한시적노동	49	21(42.9)	22(44.9)	4(8.2)	2(4.1)	
	비전형노동	6	0(0)	4(66.7)	1(16.7)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2(26.8)	83(52.9)	24(15.3)	8(5.1)	3.183 (.076)
	시간제노동	9	6(66.7)	1(11.1)	1(11.1)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5(35.0)	54(54.0)	8(8.0)	3(3.0)	.826 (.509)
	충청권	100	35(35.0)	50(50.0)	10(10.0)	5(5.0)	
	경상권	100	34(34.0)	40(40.0)	22(22.0)	4(4.0)	
	전라권	100	31(31.0)	47(47.0)	18(18.0)	4(4.0)	
	강원/제주권	100	34(34.0)	50(50.0)	12(12.0)	4(4.0)	

*P<.05, **P<.01, ***P<.001

다.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0.0%(매우: 25.6% + 알고 있는 편: 44.4%)로 ‘모른다’는 응답 30.0%(전혀: 5.2% + 모르는 편: 2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1.6%로 10대(68.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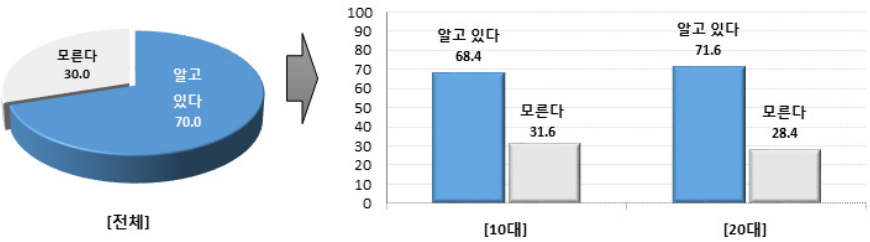


그림 Ⅲ-7.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표 Ⅲ-14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28(25.6)	222(44.4)	124(24.8)	26(5.2)	-
10대	250	63(25.2)	108(43.2)	65(26.0)	14(5.6)	.887
20대	250	65(26.0)	114(45.6)	59(23.6)	12(4.8)	(.347)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에 따라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28(25.6)	222(44.4)	124(24.8)	26(5.2)	-
성별	남자	250	66(26.4)	111(44.4)	59(23.6)	14(5.6)	.001 (.975)
	여자	250	62(24.8)	111(44.4)	65(26.0)	12(4.8)	
학력별	고졸	313	84(26.8)	132(42.2)	80(25.6)	17(5.4)	.711 (.492)
	대졸	179	41(22.9)	86(48.0)	43(24.0)	9(5.0)	
	대학원이상	8	3(37.5)	4(50.0)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2(25.3)	69(41.6)	45(27.1)	10(6.0)	.491 (.612)
	비정규직 취업	167	38(22.8)	79(47.3)	45(26.9)	5(3.0)	
	정규직 취업	167	48(28.7)	74(44.3)	34(20.4)	11(6.6)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5(22.3)	54(48.2)	29(25.9)	4(3.6)	3.129* (.046)
	한시적노동	49	13(26.5)	23(46.9)	13(26.5)	0(.0)	
	비전형노동	6	0(.0)	2(33.3)	3(50.0)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8(24.2)	66(42.0)	43(27.4)	10(6.4)	.000 (.983)
	시간제노동	9	4(44.4)	3(33.3)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9(29.0)	47(47.0)	22(22.0)	2(2.0)	1.013 (.400)
	충청권	100	29(29.0)	44(44.0)	19(19.0)	8(8.0)	
	경상권	100	25(25.0)	45(45.0)	24(24.0)	6(6.0)	
	전라권	100	22(22.0)	44(44.0)	30(30.0)	4(4.0)	
	강원/제주권	100	23(23.0)	42(42.0)	29(29.0)	6(6.0)	

*P<.05, **P<.01, ***P<.001

(3)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 관련 보호 조항에 대한 이해

가. 사장 또는 사업주는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장 또는 사업주는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81.4%(매우: 26.2% + 알고 있는 편: 55.2%)로 ‘모른다’는 응답 18.6%(전혀: 2.6% + 모르는 편: 1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3.2%로 10대(79.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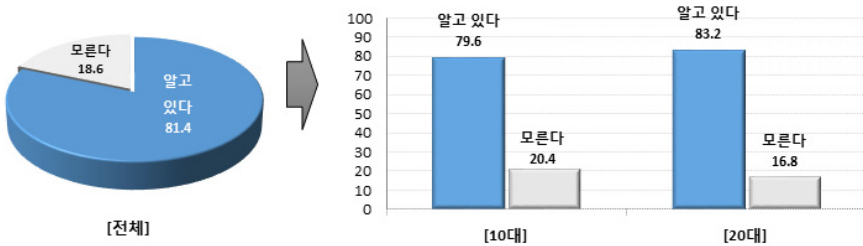


그림 III-8. 사장 또는 사업주는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표 III-16 사장 또는 사업주는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31(26.2)	276(55.2)	80(16.0)	13(2.6)	-
10대	250	66(26.4)	133(53.2)	41(16.4)	10(4.0)	.692
20대	250	65(26.0)	143(57.2)	39(15.6)	3(1.2)	(.406)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7 사장 또는 사업주는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31(26.2)	276(55.2)	80(16.0)	13(2.6)	-
성별	남자	250	61(24.4)	144(57.6)	38(15.2)	7(2.8)	1.306 (.254)
	여자	250	70(28.0)	132(52.8)	42(16.8)	6(2.4)	
학력별	고졸	313	79(25.2)	171(54.6)	52(16.6)	11(3.5)	1.499 (.224)
	대졸	179	49(27.4)	100(55.9)	28(15.6)	2(1.1)	
	대학원이상	8	3(37.5)	5(62.5)	0(.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5(27.1)	82(49.4)	32(19.3)	7(4.2)	.754 (.471)
	비정규직 취업	167	39(23.4)	103(61.7)	23(13.8)	2(1.2)	
	정규직 취업	167	47(28.1)	91(54.5)	25(15.0)	4(2.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5(22.3)	69(61.6)	17(15.2)	1(.9)	1.734 (.180)
	한시적노동	49	13(26.5)	32(65.3)	3(6.1)	1(2.0)	
	비전형노동	6	1(16.7)	2(33.3)	3(5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1(26.1)	77(49.0)	32(20.4)	7(4.5)	.163 (.687)
	시간제노동	9	4(44.4)	5(55.6)	0(.0)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2(22.0)	63(63.0)	14(14.0)	1(1.0)	.104 (.981)
	충청권	100	30(30.0)	49(49.0)	18(18.0)	3(3.0)	
	경상권	100	25(25.0)	54(54.0)	18(18.0)	3(3.0)	
	전라권	100	27(27.0)	54(54.0)	16(16.0)	3(3.0)	
	강원/제주권	100	27(27.0)	56(56.0)	14(14.0)	3(3.0)	

*P<.05, **P<.01, ***P<.001

나.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5.2%(매우: 26.4% + 알고 있는 편: 48.8%)로 ‘모른다’는 응답 24.8%(전혀: 3.2% + 모르는 편: 2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74.8%) 및 20대(75.6%) 응답이 75%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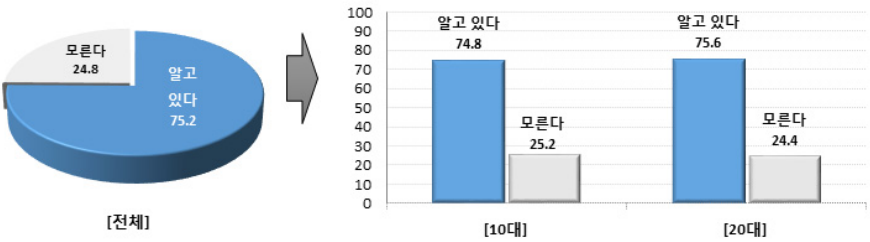


그림 III-9.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표 III-18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32(26.4)	244(48.8)	108(21.6)	16(3.2)	-
10대	250	68(27.2)	119(47.6)	54(21.6)	9(3.6)	.414
20대	250	64(25.6)	125(50.0)	54(21.6)	7(2.8)	(.520)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83.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9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32(26.4)	244(48.8)	108(21.6)	16(3.2)	-
성별	남자	250	67(26.8)	121(48.4)	56(22.4)	6(2.4)	.166 (.684)
	여자	250	65(26.0)	123(49.2)	52(20.8)	10(4.0)	
학력별	고졸	313	84(26.8)	148(47.3)	70(22.4)	11(3.5)	.063 (.939)
	대졸	179	47(26.3)	90(50.3)	37(20.7)	5(2.8)	
	대학원이상	8	1(12.5)	6(75.0)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7(28.3)	74(44.6)	38(22.9)	7(4.2)	.593 (.553)
	비정규직 취업	167	34(20.4)	93(55.7)	37(22.2)	3(1.8)	
	정규직 취업	167	51(30.5)	77(46.1)	33(19.8)	6(3.6)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2(19.6)	62(55.4)	25(22.3)	3(2.7)	.992 (.373)
	한시적노동	49	12(24.5)	27(55.1)	10(20.4)	0(0)	
	비전형노동	6	0(0)	4(66.7)	2(33.3)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4(28.0)	69(43.9)	37(23.6)	7(4.5)	.324 (.570)
	시간제노동	9	3(33.3)	5(55.6)	1(11.1)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4(24.0)	59(59.0)	16(16.0)	1(1.0)	.528 (.715)
	충청권	100	32(32.0)	40(40.0)	24(24.0)	4(4.0)	
	경상권	100	29(29.0)	46(46.0)	21(21.0)	4(4.0)	
	전라권	100	24(24.0)	47(47.0)	25(25.0)	4(4.0)	
	강원/제주권	100	23(23.0)	52(52.0)	22(22.0)	3(3.0)	

*P<.05, **P<.01, ***P<.001

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한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55.6%(매우: 16.8% + 알고 있는 편: 38.8%)로 ‘모른다’는 응답 44.4%(전혀: 6.6% + 모르는 편: 37.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8.0%로 10대(53.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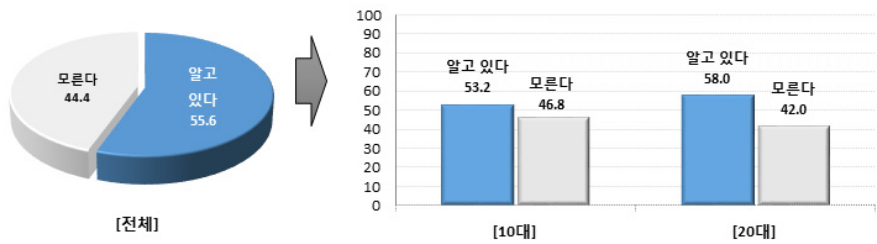


그림 Ⅲ-10.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한다

표 Ⅲ-20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84(16.8)	194(38.8)	189(37.8)	33(6.6)	-
10대	250	44(17.6)	89(35.6)	100(40.0)	17(6.8)	1.060
20대	250	40(16.0)	105(42.0)	89(35.6)	16(6.4)	(.304)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전라권(63.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84(16.8)	194(38.8)	189(37.8)	33(6.6)	-
성별	남자	250	46(18.4)	96(38.4)	92(36.8)	16(6.4)	.130 (.719)
	여자	250	38(15.2)	98(39.2)	97(38.8)	17(6.8)	
학력별	고졸	313	52(16.6)	115(36.7)	128(40.9)	18(5.8)	.176 (.839)
	대졸	179	31(17.3)	74(41.3)	60(33.5)	14(7.8)	
	대학원이상	8	1(12.5)	5(62.5)	1(12.5)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7(16.3)	58(34.9)	68(41.0)	13(7.8)	1.102 (.333)
	비정규직 취업	167	24(14.4)	68(40.7)	67(40.1)	8(4.8)	
	정규직 취업	167	33(19.8)	68(40.7)	54(32.3)	12(7.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6(14.3)	45(40.2)	45(40.2)	6(5.4)	1.454 (.237)
	한시적노동	49	8(16.3)	21(42.9)	19(38.8)	1(2.0)	
	비전형노동	6	0(0)	2(33.3)	3(50.0)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6(16.6)	54(34.4)	64(40.8)	13(8.3)	1.134 (.289)
	시간제노동	9	1(11.1)	4(44.4)	4(44.4)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7(17.0)	39(39.0)	40(40.0)	4(4.0)	.707 (.588)
	충청권	100	19(19.0)	37(37.0)	36(36.0)	8(8.0)	
	경상권	100	16(16.0)	38(38.0)	37(37.0)	9(9.0)	
	전라권	100	17(17.0)	46(46.0)	32(32.0)	5(5.0)	
	강원/제주권	100	15(15.0)	34(34.0)	44(44.0)	7(7.0)	

*P<.05, **P<.01, ***P<.001

라.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금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해지, 서면 명시 및 교부한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금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해지, 서면 명시 및 교부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4.0%(매우: 19.4% + 알고 있는 편: 44.6%)로 ‘모른다’는 응답 36.0%(전혀: 5.0% + 모르는 편: 3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6.8%로 20대(61.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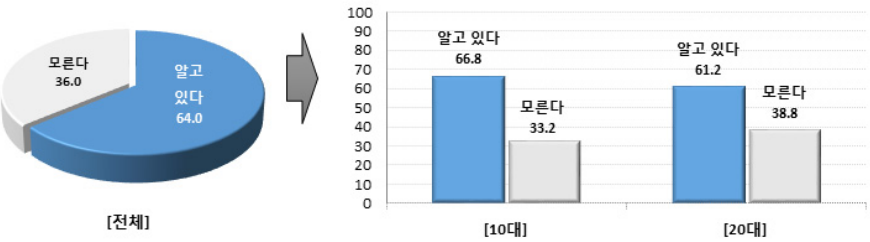


그림 Ⅲ-11.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금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해지, 서면 명시 및 교부한다

표 Ⅲ-22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금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해지, 서면 명시 및 교부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97(19.4)	223(44.6)	155(31.0)	25(5.0)	-
10대	250	56(22.4)	111(44.4)	71(28.4)	12(4.8)	.051
20대	250	41(16.4)	112(44.8)	84(33.6)	13(5.2)	(.822)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66.8%), 수도권(72.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3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금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해지, 서면 명시 및 교부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97(19.4)	223(44.6)	155(31.0)	25(5.0)	-
성별	남자	250	48(19.2)	111(44.4)	74(29.6)	17(6.8)	1.448 (.229)
	여자	250	49(19.6)	112(44.8)	81(32.4)	8(3.2)	
학력별	고졸	313	66(21.1)	143(45.7)	90(28.8)	14(4.5)	1.599 (.203)
	대졸	179	30(16.8)	76(42.5)	62(34.6)	11(6.1)	
	대학원이상	8	1(12.5)	4(50.0)	3(37.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4(20.5)	70(42.2)	55(33.1)	7(4.2)	.116 (.891)
	비정규직 취업	167	27(16.2)	81(48.5)	51(30.5)	8(4.8)	
	정규직 취업	167	36(21.6)	72(43.1)	49(29.3)	10(6.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9(17.0)	55(49.1)	33(29.5)	5(4.5)	.965 (.383)
	한시적노동	49	8(16.3)	24(49.0)	14(28.6)	3(6.1)	
	비전형노동	6	0(.0)	2(33.3)	4(6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1(19.7)	69(43.9)	50(31.8)	7(4.5)	1.670 (.198)
	시간제노동	9	3(33.3)	1(11.1)	5(55.6)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8(18.0)	54(54.0)	27(27.0)	1(1.0)	.701 (.591)
	충청권	100	27(27.0)	35(35.0)	29(29.0)	9(9.0)	
	경상권	100	18(18.0)	43(43.0)	33(33.0)	6(6.0)	
	전라권	100	17(17.0)	48(48.0)	31(31.0)	4(4.0)	
	강원/제주권	100	17(17.0)	43(43.0)	35(35.0)	5(5.0)	

*P<.05, **P<.01, ***P<.001

마.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52.4%(전혀: 10.4% + 모르는 편: 42.0%)로 ‘알고 있다’는 응답 47.6%(매우: 14.0% + 알고 있는 편: 3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2.8%로 20대(4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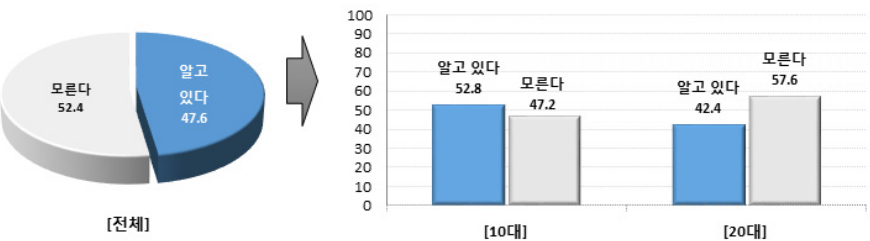


그림 Ⅲ-12.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표 Ⅲ-24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 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70(14.0)	168(33.6)	210(42.0)	52(10.4)	-
10대	250	42(16.8)	90(36.0)	92(36.8)	26(10.4)	2.473
20대	250	28(11.2)	78(31.2)	118(47.2)	26(10.4)	(.116)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56.0%), 현재 취업 상태가 비정규직 취업(53.3%)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70(14.0)	168(33.6)	210(42.0)	52(10.4)	-
성별	남자	250	45(18.0)	95(38.0)	85(34.0)	25(10.0)	4.070* (.044)
	여자	250	25(10.0)	73(29.2)	125(50.0)	27(10.8)	
학력별	고졸	313	51(16.3)	106(33.9)	125(39.9)	31(9.9)	2.797 (.062)
	대졸	179	17(9.5)	59(33.0)	82(45.8)	21(11.7)	
	대학원이상	8	2(25.0)	3(37.5)	3(37.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3(13.9)	58(34.9)	66(39.8)	19(11.4)	.584 (.558)
	비정규직 취업	167	20(12.0)	69(41.3)	63(37.7)	15(9.0)	
	정규직 취업	167	27(16.2)	41(24.6)	81(48.5)	18(10.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2(10.7)	46(41.1)	43(38.4)	11(9.8)	.422 (.657)
	한시적노동	49	8(16.3)	19(38.8)	19(38.8)	3(6.1)	
	비전형노동	6	0(0)	4(66.7)	1(16.7)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1(13.4)	55(35.0)	62(39.5)	19(12.1)	.180 (.672)
	시간제노동	9	2(22.2)	3(33.3)	4(44.4)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1(11.0)	37(37.0)	47(47.0)	5(5.0)	.670 (.613)
	충청권	100	16(16.0)	34(34.0)	36(36.0)	14(14.0)	
	경상권	100	17(17.0)	31(31.0)	41(41.0)	11(11.0)	
	전라권	100	14(14.0)	39(39.0)	37(37.0)	10(10.0)	
	강원/제주권	100	12(12.0)	27(27.0)	49(49.0)	12(12.0)	

*P<.05, **P<.01, ***P<.001

바. 임금지급은 월 1회 이상 전체 금액을 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지급한다
 ‘임금지급은 월 1회 이상 전체 금액을 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지급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0%(매우: 18.6% + 알고 있는 편: 41.4%)로 ‘모른다’는 응답 40.0%(전혀: 9.2% + 모르는 편: 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3.6%로 10대(56.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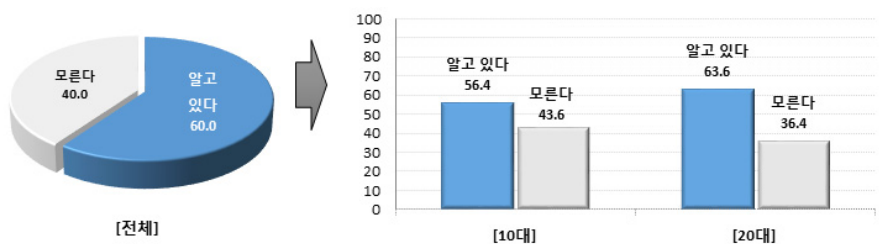


그림 Ⅲ-13. 임금지급은 월 1회 이상 전체 금액을 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지급한다

표 Ⅲ-26 임금지급은 월 1회 이상 전체 금액을 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지급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93(18.6)	207(41.4)	154(30.8)	46(9.2)	-
10대	250	45(18.0)	96(38.4)	87(34.8)	22(8.8)	.297
20대	250	48(19.2)	111(44.4)	67(26.8)	24(9.6)	(.586)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 상태가 정규직 취업 (66.5%), 수도권(69.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상태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임금지급은 월 1회 이상 전체 금액을 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지급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93(18.6)	207(41.4)	154(30.8)	46(9.2)	-
성별	남자	250	48(19.2)	101(40.4)	78(31.2)	23(9.2)	.115 (.735)
	여자	250	45(18.0)	106(42.4)	76(30.4)	23(9.2)	
학력별	고졸	313	56(17.9)	126(40.3)	100(31.9)	31(9.9)	.665 (.515)
	대졸	179	36(20.1)	75(41.9)	54(30.2)	14(7.8)	
	대학원이상	8	1(12.5)	6(75.0)	0(.0)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0(18.1)	51(30.7)	66(39.8)	19(11.4)	3.278* (.039)
	비정규직 취업	167	29(17.4)	79(47.3)	46(27.5)	13(7.8)	
	정규직 취업	167	34(20.4)	77(46.1)	42(25.1)	14(8.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0(17.9)	52(46.4)	34(30.4)	6(5.4)	.329 (.720)
	한시적노동	49	9(18.4)	23(46.9)	11(22.4)	6(12.2)	
	비전형노동	6	0(.0)	4(66.7)	1(16.7)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8(17.8)	48(30.6)	63(40.1)	18(11.5)	.017 (.896)
	시간제노동	9	2(22.2)	3(33.3)	3(33.3)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0(20.0)	49(49.0)	23(23.0)	8(8.0)	1.477 (.208)
	충청권	100	24(24.0)	35(35.0)	30(30.0)	11(11.0)	
	경상권	100	18(18.0)	38(38.0)	36(36.0)	8(8.0)	
	전라권	100	18(18.0)	45(45.0)	31(31.0)	6(6.0)	
	강원/제주권	100	13(13.0)	40(40.0)	34(34.0)	13(13.0)	

*P<.05, **P<.01, ***P<.001

사.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6.8%(매우: 27.2% + 알고 있는 편: 49.6%)로 ‘모른다’는 응답 23.2%(전혀: 4.6% + 모르는 편: 1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0.4%로 10대(73.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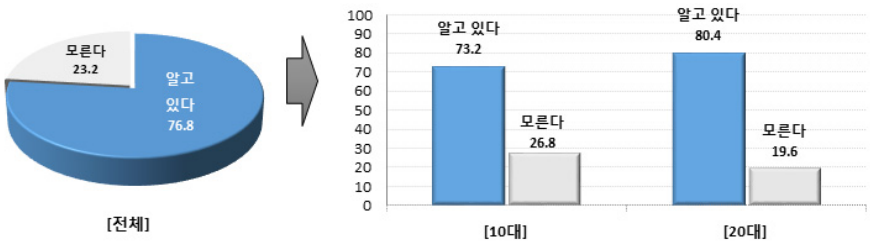


그림 Ⅲ-14.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표 Ⅲ-28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36(27.2)	248(49.6)	93(18.6)	23(4.6)	-
10대	250	69(27.6)	114(45.6)	52(20.8)	15(6.0)	5.177*
20대	250	67(26.8)	134(53.6)	41(16.4)	8(3.2)	(.023)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80.8%), 현재 취업 상태가 비정규직 취업(83.2%)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9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36(27.2)	248(49.6)	93(18.6)	23(4.6)	-
성별	남자	250	63(25.2)	119(47.6)	55(22.0)	13(5.2)	1.480 (.224)
	여자	250	73(29.2)	129(51.6)	38(15.2)	10(4.0)	
학력별	고졸	313	86(27.5)	146(46.6)	64(20.4)	17(5.4)	.718 (.488)
	대졸	179	48(26.8)	97(54.2)	28(15.6)	6(3.4)	
	대학원이상	8	2(25.0)	5(62.5)	1(12.5)	0(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6(27.7)	72(43.4)	39(23.5)	9(5.4)	1.637 (.196)
	비정규직 취업	167	46(27.5)	93(55.7)	24(14.4)	4(2.4)	
	정규직 취업	167	44(26.3)	83(49.7)	30(18.0)	10(6.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9(25.9)	66(58.9)	14(12.5)	3(2.7)	1.193 (.306)
	한시적노동	49	16(32.7)	25(51.0)	7(14.3)	1(2.0)	
	비전형노동	6	1(16.7)	2(33.3)	3(50.0)	0(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4(28.0)	68(43.3)	36(22.9)	9(5.7)	.096 (.758)
	시간제노동	9	2(22.2)	4(44.4)	3(33.3)	0(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1(21.0)	61(61.0)	17(17.0)	1(1.0)	1.606 (.172)
	충청권	100	31(31.0)	49(49.0)	16(16.0)	4(4.0)	
	경상권	100	30(30.0)	49(49.0)	18(18.0)	3(3.0)	
	전라권	100	31(31.0)	45(45.0)	17(17.0)	7(7.0)	
	강원/제주권	100	23(23.0)	44(44.0)	25(25.0)	8(8.0)	

*P<.05, **P<.01, ***P<.001

아.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52.2%(매우: 14.8% + 알고 있는 편: 37.4%)로 ‘모른다’는 응답 47.8%(전혀: 9.4% + 모르는 편: 3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51.2%) 및 20대(53.2%) 응답이 50%대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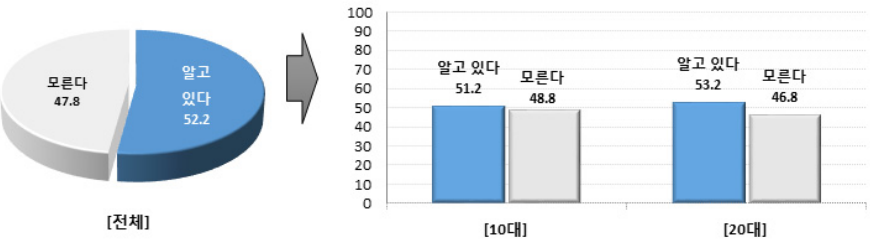


그림 Ⅲ-15. 노동자가 사망/퇴직 시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표 Ⅲ-30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74(14.8)	187(37.4)	192(38.4)	47(9.4)	-
10대	250	41(16.4)	87(34.8)	98(39.2)	24(9.6)	1.023
20대	250	33(13.2)	100(40.0)	94(37.6)	23(9.2)	(.312)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한시적노동(63.3%)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1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74(14.8)	187(37.4)	192(38.4)	47(9.4)	-
성별	남자	250	44(17.6)	88(35.2)	98(39.2)	20(8.0)	.331 (.565)
	여자	250	30(12.0)	99(39.6)	94(37.6)	27(10.8)	
학력별	고졸	313	49(15.7)	118(37.7)	117(37.4)	29(9.3)	.515 (.598)
	대졸	179	24(13.4)	65(36.3)	72(40.2)	18(10.1)	
	대학원이상	8	1(12.5)	4(50.0)	3(37.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7(16.3)	54(32.5)	71(42.8)	14(8.4)	.311 (.733)
	비정규직 취업	167	23(13.8)	63(37.7)	63(37.7)	18(10.8)	
	정규직 취업	167	24(14.4)	70(41.9)	58(34.7)	15(9.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5(13.4)	37(33.0)	45(40.2)	15(13.4)	1.699 (.186)
	한시적노동	49	7(14.3)	24(49.0)	16(32.7)	2(4.1)	
	비전형노동	6	1(16.7)	2(33.3)	2(33.3)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5(15.9)	52(33.1)	66(42.0)	14(8.9)	.004 (.952)
	시간제노동	9	2(22.2)	2(22.2)	5(55.6)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2(12.0)	41(41.0)	38(38.0)	9(9.0)	.133 (.970)
	충청권	100	17(17.0)	33(33.0)	38(38.0)	12(12.0)	
	경상권	100	17(17.0)	38(38.0)	34(34.0)	11(11.0)	
	전라권	100	13(13.0)	41(41.0)	40(40.0)	6(6.0)	
	강원/제주권	100	15(15.0)	34(34.0)	42(42.0)	9(9.0)	

*P<.05, **P<.01, ***P<.001

자. 임금의 시효는 3년이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64.8% (전혀: 19.4% + 모르는 편: 45.4%)로 ‘알고 있다’는 응답 35.2%(매우: 10.4% + 알고 있는 편: 2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36.4%) 및 20대(34.0%) 응답이 30%대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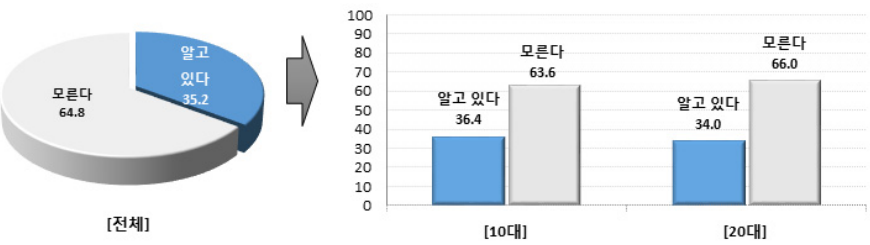


그림 Ⅲ-16. 임금의 시효는 3년이다

표 Ⅲ-32 임금의 시효는 3년이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52(10.4)	124(24.8)	227(45.4)	97(19.4)	-
10대	250	32(12.8)	59(23.6)	112(44.8)	47(18.8)	2.518
20대	250	20(8.0)	65(26.0)	115(46.0)	50(20.0)	(.113)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가 정규직 취업 (41.3%), 충청권(44.0%), 전라권(44.0%)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1% 수준에서, 거주지역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임금의 시효는 3년이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52(10.4)	124(24.8)	227(45.4)	97(19.4)	-
성별	남자	250	36(14.4)	62(24.8)	109(43.6)	43(17.2)	8.762** (.003)
	여자	250	16(6.4)	62(24.8)	118(47.2)	54(21.6)	
학력별	고졸	313	39(12.5)	79(25.2)	138(44.1)	57(18.2)	1.792 (.168)
	대졸	179	12(6.7)	44(24.6)	84(46.9)	39(21.8)	
	대학원이상	8	1(12.5)	1(12.5)	5(62.5)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1(12.7)	33(19.9)	83(50.0)	29(17.5)	2.106 (.123)
	비정규직 취업	167	13(7.8)	40(24.0)	74(44.3)	40(24.0)	
	정규직 취업	167	18(10.8)	51(30.5)	70(41.9)	28(16.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9(8.0)	28(25.0)	50(44.6)	25(22.3)	.257 (.774)
	한시적노동	49	4(8.2)	11(22.4)	20(40.8)	14(28.6)	
	비전형노동	6	0(.0)	1(16.7)	4(66.7)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0(12.7)	30(19.1)	78(49.7)	29(18.5)	.351 (.554)
	시간제노동	9	1(11.1)	3(33.3)	5(55.6)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5(5.0)	27(27.0)	56(56.0)	12(12.0)	2.897* (.022)
	충청권	100	17(17.0)	27(27.0)	36(36.0)	20(20.0)	
	경상권	100	9(9.0)	22(22.0)	41(41.0)	28(28.0)	
	전라권	100	12(12.0)	32(32.0)	42(42.0)	14(14.0)	
	강원/제주권	100	9(9.0)	16(16.0)	52(52.0)	23(23.0)	

*P<.05, **P<.01, ***P<.001

(4)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건강’ 관련 보호 조항에 대한 이해

가. 18세 미만의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원칙, 초과 노동은 하루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제한한다

‘18세 미만의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원칙, 초과 노동은 하루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제한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59.8%(매우: 18.8% + 알고 있는 편: 41.0%)로 ‘모른다’는 응답 40.2%(전혀: 6.6% + 모르는 편: 3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8.8%로 20대(5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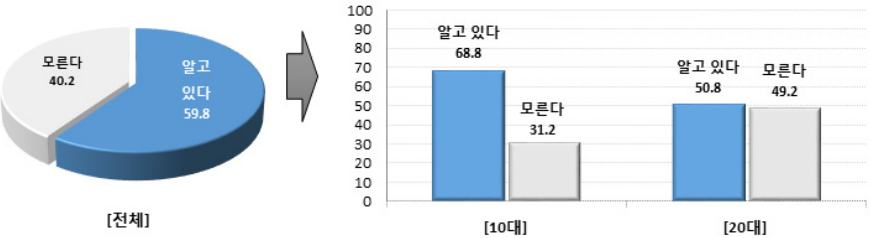


그림 III-17. 18세 미만의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35시간 원칙, 초과 노동은 하루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제한한다

표 III-34 18세 미만의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35시간 원칙, 초과 노동은 하루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제한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94(18.8)	205(41.0)	168(33.6)	33(6.6)	-
10대	250	59(23.6)	113(45.2)	65(26.0)	13(5.2)	2.861
20대	250	35(14.0)	92(36.8)	103(41.2)	20(8.0)	(.091)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66.4%)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별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5 18세 미만의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35시간 원칙, 초과 노동은 하루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제한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94(18.8)	205(41.0)	168(33.6)	33(6.6)	-
성별	남자	250	54(21.6)	94(37.6)	83(33.2)	19(7.6)	3.606 (.058)
	여자	250	40(16.0)	111(44.4)	85(34.0)	14(5.6)	
학력별	고졸	313	68(21.7)	140(44.7)	88(28.1)	17(5.4)	7.233** (.001)
	대졸	179	25(14.0)	61(34.1)	77(43.0)	16(8.9)	
	대학원이상	8	1(12.5)	4(50.0)	3(37.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7(22.3)	66(39.8)	55(33.1)	8(4.8)	1.064 (.346)
	비정규직 취업	167	26(15.6)	71(42.5)	58(34.7)	12(7.2)	
	정규직 취업	167	31(18.6)	68(40.7)	55(32.9)	13(7.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8(16.1)	46(41.1)	39(34.8)	9(8.0)	.161 (.316)
	한시적노동	49	6(12.2)	22(44.9)	18(36.7)	3(6.1)	
	비전형노동	6	2(33.3)	3(50.0)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4(21.7)	65(41.4)	51(32.5)	7(4.5)	3.103 (.080)
	시간제노동	9	3(33.3)	1(11.1)	4(44.4)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4(14.0)	46(46.0)	35(35.0)	5(5.0)	.049 (.996)
	충청권	100	20(20.0)	44(44.0)	26(26.0)	10(10.0)	
	경상권	100	17(17.0)	44(44.0)	34(34.0)	5(5.0)	
	전라권	100	22(22.0)	34(34.0)	38(38.0)	6(6.0)	
	강원/제주권	100	21(21.0)	37(37.0)	35(35.0)	7(7.0)	

*P<.05, **P<.01, ***P<.001

나. 18세 미만자의 야간, 휴일 노동 제한, 본인 동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가능하다

‘18세 미만자의 야간, 휴일 노동 제한, 본인 동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가능하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55.0%(매우: 15.4% + 알고 있는 편: 39.6%)로 ‘모른다’는 응답 45.0%(전혀: 6.4% + 모르는 편: 3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7.6%로 20대(52.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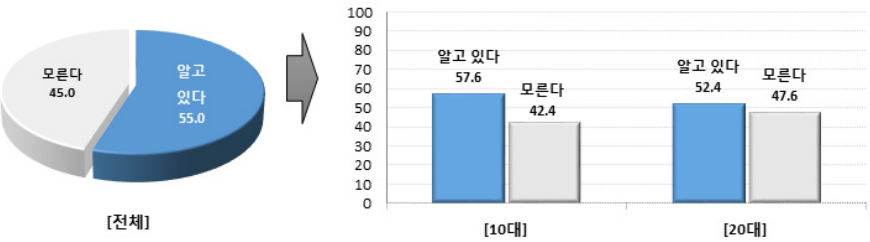


그림 III-18. 18세 미만자의 야간, 휴일 노동 제한, 본인 동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가능하다

표 III-36 18세 미만자의 야간, 휴일 노동 제한, 본인 동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가능하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77(15.4)	198(39.6)	193(38.6)	32(6.4)	-
10대	250	45(18.0)	99(39.6)	91(36.4)	15(6.0)	0.241
20대	250	32(12.8)	99(39.6)	102(40.8)	17(6.8)	(.623)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58.8%), 고졸(58.5%)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7 18세 미만자의 야간, 휴일 노동 제한, 본인 동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가능하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77(15.4)	198(39.6)	193(38.6)	32(6.4)	-
성별	남자	250	45(18.0)	102(40.8)	82(32.8)	21(8.4)	2.766 (.097)
	여자	250	32(12.8)	96(38.4)	111(44.4)	11(4.4)	
학력별	고졸	313	54(17.3)	129(41.2)	112(35.8)	18(5.8)	2.253 (.106)
	대졸	179	23(12.8)	65(36.3)	77(43.0)	14(7.8)	
	대학원이상	8	0(0)	4(50.0)	4(50.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7(16.3)	58(34.9)	70(42.2)	11(6.6)	.689 (.503)
	비정규직 취업	167	20(12.0)	75(44.9)	59(35.3)	13(7.8)	
	정규직 취업	167	30(18.0)	65(38.9)	64(38.3)	8(4.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6(14.3)	50(44.6)	37(33.0)	9(8.0)	.645 (.526)
	한시적노동	49	4(8.2)	22(44.9)	20(40.8)	3(6.1)	
	비전형노동	6	0(0)	3(50.0)	2(33.3)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5(15.9)	55(35.0)	67(42.7)	10(6.4)	.440 (.508)
	시간제노동	9	2(22.2)	3(33.3)	3(33.3)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3(13.0)	36(36.0)	45(45.0)	6(6.0)	1.276 (.278)
	충청권	100	16(16.0)	40(40.0)	37(37.0)	7(7.0)	
	경상권	100	23(23.0)	35(35.0)	40(40.0)	2(2.0)	
	전라권	100	14(14.0)	39(39.0)	37(37.0)	10(10.0)	
	강원/제주권	100	11(11.0)	48(48.0)	34(34.0)	7(7.0)	

*P<.05, **P<.01, ***P<.001

다.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60분 이상 자유로운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60분 이상 자유로운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7.0%(매우: 24.0% + 알고 있는 편: 43.0%)로 ‘모른다’는 응답 33.0%(전혀: 6.8% + 모르는 편: 2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9.6%로 10대(64.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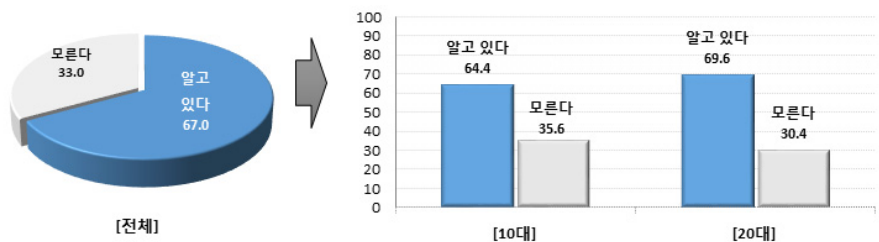


그림 Ⅲ-19.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60분 이상 자유로운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표 Ⅲ-38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60분 이상 자유로운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20(24.0)	215(43.0)	131(26.2)	34(6.8)	-
10대	250	62(24.8)	99(39.6)	68(27.2)	21(8.4)	5.268*
20대	250	58(23.2)	116(46.4)	63(25.2)	13(5.2)	(.022)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거 취업형태(현재 미취업)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60분 이상 자유로운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20(24.0)	215(43.0)	131(26.2)	34(6.8)	-
성별	남자	250	60(24.0)	101(40.4)	69(27.6)	20(8.0)	3.363 (.067)
	여자	250	60(24.0)	114(45.6)	62(24.8)	14(5.6)	
학력별	고졸	313	71(22.7)	135(43.1)	84(26.8)	23(7.3)	.818 (.442)
	대졸	179	47(26.3)	75(41.9)	46(25.7)	11(6.1)	
	대학원이상	8	2(25.0)	5(62.5)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4(20.5)	69(41.6)	49(29.5)	14(8.4)	2.090 (.125)
	비정규직 취업	167	46(27.5)	72(43.1)	41(24.6)	8(4.8)	
	정규직 취업	167	40(24.0)	74(44.3)	41(24.6)	12(7.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3(29.5)	42(37.5)	31(27.7)	6(5.4)	.131 (.877)
	한시적노동	49	12(24.5)	26(53.1)	9(18.4)	2(4.1)	
	비전형노동	6	1(16.7)	4(66.7)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3(21.0)	63(40.1)	47(29.9)	14(8.9)	4.503* (.035)
	시간제노동	9	1(11.1)	6(66.7)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9(19.0)	51(51.0)	25(25.0)	5(5.0)	.440 (.779)
	충청권	100	24(24.0)	41(41.0)	28(28.0)	7(7.0)	
	경상권	100	29(29.0)	42(42.0)	23(23.0)	6(6.0)	
	전라권	100	24(24.0)	40(40.0)	27(27.0)	9(9.0)	
	강원/제주권	100	24(24.0)	41(41.0)	28(28.0)	7(7.0)	

*P<.05, **P<.01, ***P<.001

라.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8%(매우: 21.8% + 알고 있는 편: 39.0%)로 ‘모른다’는 응답 39.2%(전혀: 8.2% + 모르는 편: 3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3.6%로 10대(58.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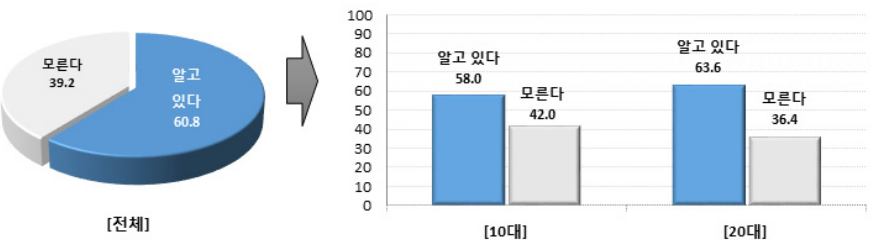


그림 Ⅲ-20.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표 Ⅲ-40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09(21.8)	195(39.0)	155(31.0)	41(8.2)	-
10대	250	56(22.4)	89(35.6)	81(32.4)	24(9.6)	3.686
20대	250	53(21.2)	106(42.4)	74(29.6)	17(6.8)	(.055)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69.0%)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09(21.8)	195(39.0)	155(31.0)	41(8.2)	-
성별	남자	250	54(21.6)	92(36.8)	80(32.0)	24(9.6)	2.244 (.135)
	여자	250	55(22.0)	103(41.2)	75(30.0)	17(6.8)	
학력별	고졸	313	69(22.0)	114(36.4)	101(32.3)	29(9.3)	.743 (.476)
	대졸	179	39(21.8)	75(41.9)	53(29.6)	12(6.7)	
	대학원이상	8	1(12.5)	6(75.0)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4(20.5)	62(37.3)	55(33.1)	15(9.0)	.458 (.633)
	비정규직 취업	167	37(22.2)	62(37.1)	58(34.7)	10(6.0)	
	정규직 취업	167	38(22.8)	71(42.5)	42(25.1)	16(9.6)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3(20.5)	41(36.6)	39(34.8)	9(8.0)	3.067* (.049)
	한시적노동	49	14(28.6)	19(38.8)	16(32.7)	0(0)	
	비전형노동	6	0(0)	2(33.3)	3(50.0)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3(21.0)	58(36.9)	51(32.5)	15(9.6)	1.290 (.258)
	시간제노동	9	1(11.1)	4(44.4)	4(44.4)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8(18.0)	51(51.0)	23(23.0)	8(8.0)	1.148 (.333)
	충청권	100	20(20.0)	34(34.0)	34(34.0)	12(12.0)	
	경상권	100	30(30.0)	33(33.0)	31(31.0)	6(6.0)	
	전라권	100	22(22.0)	39(39.0)	31(31.0)	8(8.0)	
	강원/제주권	100	19(19.0)	38(38.0)	36(36.0)	7(7.0)	

*P<.05, **P<.01, ***P<.001

마.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연차휴가를 보장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59.4%(매우: 22.2% + 알고 있는 편: 37.2%)로 ‘모른다’는 응답 40.6%(전혀: 7.4% + 모르는 편: 3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5.6%로 10대(53.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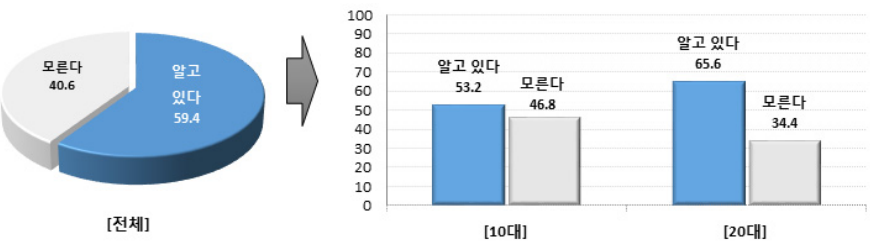


그림 III-21.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표 III-42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11(22.2)	186(37.2)	166(33.2)	37(7.4)	-
10대	250	50(20.0)	83(33.2)	96(38.4)	21(8.4)	2.788
20대	250	61(24.4)	103(41.2)	70(28.0)	16(6.4)	(.096)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대학원 이상(100.0%), 현재 취업상태가 정규직 취업(66.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한시적노동(79.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에 따라 0.1% 수준에서, 과거 취업형태(현재 미취업)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3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11(22.2)	186(37.2)	166(33.2)	37(7.4)	-
성별	남자	250	53(21.2)	92(36.8)	85(34.0)	20(8.0)	.160 (.689)
	여자	250	58(23.2)	94(37.6)	81(32.4)	17(6.8)	
학력별	고졸	313	68(21.7)	113(36.1)	108(34.5)	24(7.7)	.916 (.401)
	대졸	179	42(23.5)	66(36.9)	58(32.4)	13(7.3)	
	대학원이상	8	1(12.5)	7(87.5)	0(.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3(19.9)	61(36.7)	61(36.7)	11(6.6)	2.385 (.093)
	비정규직 취업	167	33(19.8)	59(35.3)	61(36.5)	14(8.4)	
	정규직 취업	167	45(26.9)	66(39.5)	44(26.3)	12(7.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6(14.3)	36(32.1)	49(43.8)	11(9.8)	10.377*** (.000)
	한시적노동	49	17(34.7)	22(44.9)	8(16.3)	2(4.1)	
	비전형노동	6	0(.0)	1(16.7)	4(66.7)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2(20.4)	55(35.0)	59(37.6)	11(7.0)	5.598* (.019)
	시간제노동	9	1(11.1)	6(66.7)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3(23.0)	41(41.0)	30(30.0)	6(6.0)	0.599 (.663)
	충청권	100	26(26.0)	35(35.0)	28(28.0)	11(11.0)	
	경상권	100	26(26.0)	34(34.0)	34(34.0)	6(6.0)	
	전라권	100	19(19.0)	38(38.0)	35(35.0)	8(8.0)	
	강원/제주권	100	17(17.0)	38(38.0)	39(39.0)	6(6.0)	

*P<.05, **P<.01, ***P<.001

바. 18세 미만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고용을 금지한다

‘18세 미만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고용을 금지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4.4%(매우: 29.0% + 알고 있는 편: 45.4%)로 ‘모른다’는 응답 25.6%(전혀: 4.4% + 모르는 편: 21.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74.4%) 및 20대(74.4%) 응답이 74%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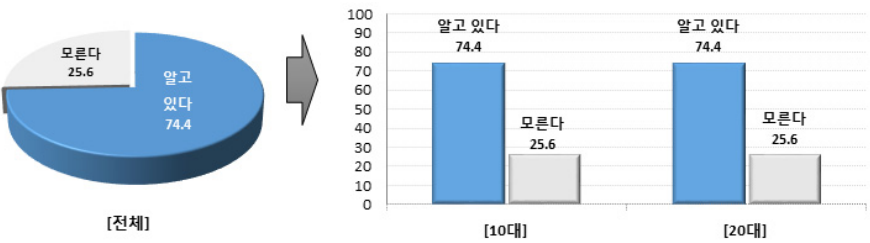


그림 III-22. 18세 미만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고용을 금지한다

표 III-44 18세 미만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고용을 금지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45(29.0)	227(45.4)	106(21.2)	22(4.4)	-
10대	250	86(34.4)	100(40.0)	50(20.0)	14(5.6)	5.579*
20대	250	59(23.6)	127(50.8)	56(22.4)	8(3.2)	(.019)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78.4%),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79.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5 18세 미만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고용을 금지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45(29.0)	227(45.4)	106(21.2)	22(4.4)	-
성별	남자	250	70(28.0)	106(42.4)	61(24.4)	13(5.2)	3.002 (.084)
	여자	250	75(30.0)	121(48.4)	45(18.0)	9(3.6)	
학력별	고졸	313	105(33.5)	133(42.5)	61(19.5)	14(4.5)	2.745 (.065)
	대졸	179	39(21.8)	90(50.3)	43(24.0)	7(3.9)	
	대학원이상	8	1(12.5)	4(50.0)	2(25.0)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59(35.5)	58(34.9)	41(24.7)	8(4.8)	1.256 (.286)
	비정규직 취업	167	47(28.1)	86(51.5)	29(17.4)	5(3.0)	
	정규직 취업	167	39(23.4)	83(49.7)	36(21.6)	9(5.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4(30.4)	57(50.9)	19(17.0)	2(1.8)	.762 (.468)
	한시적노동	49	12(24.5)	25(51.0)	9(18.4)	3(6.1)	
	비전형노동	6	1(16.7)	4(66.7)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56(35.7)	56(35.7)	37(23.6)	8(5.1)	.231 (.631)
	시간제노동	9	3(33.3)	2(22.2)	4(44.4)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3(23.0)	44(44.0)	28(28.0)	5(5.0)	1.665 (.157)
	충청권	100	28(28.0)	50(50.0)	18(18.0)	4(4.0)	
	경상권	100	33(33.0)	46(46.0)	17(17.0)	4(4.0)	
	전라권	100	35(35.0)	45(45.0)	14(14.0)	6(6.0)	
	강원/제주권	100	26(26.0)	42(42.0)	29(29.0)	3(3.0)	

*P<.05, **P<.01, ***P<.001

사.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3.4%(매우: 26.0% + 알고 있는 편: 47.4%)로 ‘모른다’는 응답 26.6%(전혀: 5.2% + 모르는 편: 2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74.0%로 20대(72.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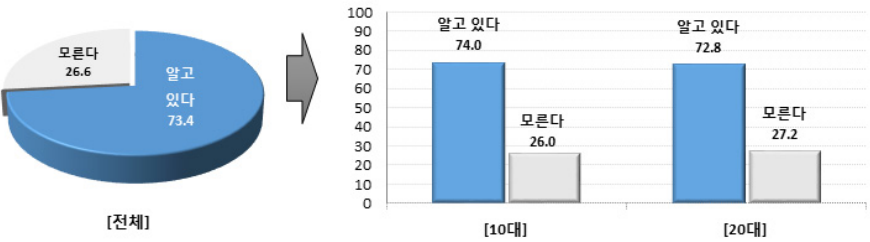


그림 Ⅲ-23.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표 Ⅲ-46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30(26.0)	237(47.4)	107(21.4)	26(5.2)	-
10대	250	82(32.8)	103(41.2)	51(20.4)	14(5.6)	2.501
20대	250	48(19.2)	134(53.6)	56(22.4)	12(4.8)	(.114)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7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30(26.0)	237(47.4)	107(21.4)	26(5.2)	-
성별	남자	250	65(26.0)	119(47.6)	48(19.2)	18(7.2)	1.137 (.287)
	여자	250	65(26.0)	118(47.2)	59(23.6)	8(3.2)	
학력별	고졸	313	93(29.7)	141(45.0)	64(20.4)	15(4.8)	1.858 (.157)
	대졸	179	36(20.1)	91(50.8)	41(22.9)	11(6.1)	
	대학원이상	8	1(12.5)	5(62.5)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53(31.9)	62(37.3)	41(24.7)	10(6.0)	.125 (.883)
	비정규직 취업	167	39(23.4)	89(53.3)	32(19.2)	7(4.2)	
	정규직 취업	167	38(22.8)	86(51.5)	34(20.4)	9(5.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4(21.4)	63(56.3)	21(18.8)	4(3.6)	.233 (.792)
	한시적노동	49	14(28.6)	21(42.9)	11(22.4)	3(6.1)	
	비전형노동	6	1(16.7)	5(83.3)	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50(31.8)	58(36.9)	39(24.8)	10(6.4)	.426 (.515)
	시간제노동	9	3(33.3)	4(44.4)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0(20.0)	55(55.0)	22(22.0)	3(3.0)	.361 (.836)
	충청권	100	31(31.0)	45(45.0)	17(17.0)	7(7.0)	
	경상권	100	24(24.0)	47(47.0)	25(25.0)	4(4.0)	
	전라권	100	29(29.0)	47(47.0)	18(18.0)	6(6.0)	
	강원/제주권	100	26(26.0)	43(43.0)	25(25.0)	6(6.0)	

*P<.05, **P<.01, ***P<.001

아.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8.2%(매우:
22.2% + 알고 있는 편: 46.0%)로 ‘모른다’는 응답 31.8%(전혀: 5.2% + 모르는
편: 2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67.6%) 및 20대(68.8%) 응답이 67%대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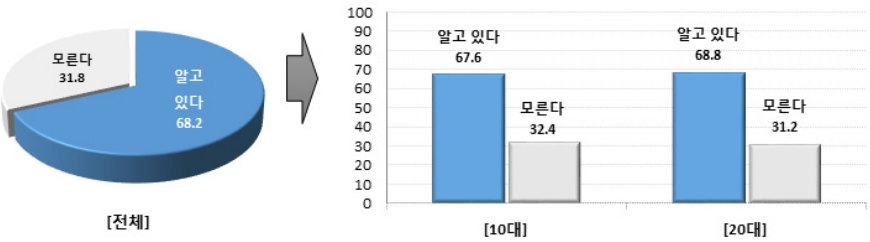


그림 Ⅲ-24.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표 Ⅲ-48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11(22.2)	230(46.0)	133(26.6)	26(5.2)	-
10대	250	55(22.0)	114(45.6)	64(25.6)	17(6.8)	1.414
20대	250	56(22.4)	116(46.4)	69(27.6)	9(3.6)	(.235)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가 정규직 취업 (73.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49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11(22.2)	230(46.0)	133(26.6)	26(5.2)	-
성별	남자	250	53(21.2)	120(48.0)	63(25.2)	14(5.6)	.260 (.610)
	여자	250	58(23.2)	110(44.0)	70(28.0)	12(4.8)	
학력별	고졸	313	69(22.0)	142(45.4)	83(26.5)	19(6.1)	.567 (.568)
	대졸	179	40(22.3)	83(46.4)	49(27.4)	7(3.9)	
	대학원이상	8	2(25.0)	5(62.5)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8(22.9)	71(42.8)	44(26.5)	13(7.8)	1.444 (.237)
	비정규직 취업	167	31(18.6)	78(46.7)	53(31.7)	5(3.0)	
	정규직 취업	167	42(25.1)	81(48.5)	36(21.6)	8(4.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7(15.2)	53(47.3)	38(33.9)	4(3.6)	1.385 (.253)
	한시적노동	49	13(26.5)	22(44.9)	13(26.5)	1(2.0)	
	비전형노동	6	1(16.7)	3(50.0)	2(33.3)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6(22.9)	68(43.3)	41(26.1)	12(7.6)	.394 (.531)
	시간제노동	9	2(22.2)	3(33.3)	3(33.3)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9(19.0)	55(55.0)	22(22.0)	4(4.0)	.342 (.850)
	충청권	100	25(25.0)	42(42.0)	26(26.0)	7(7.0)	
	경상권	100	21(21.0)	48(48.0)	28(28.0)	3(3.0)	
	전라권	100	25(25.0)	45(45.0)	23(23.0)	7(7.0)	
	강원/제주권	100	21(21.0)	40(40.0)	34(34.0)	5(5.0)	

*P<.05, **P<.01, ***P<.001

자. 감독 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감독 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7.6%(매우: 24.8% + 알고 있는 편: 42.8%)로 ‘모른다’는 응답 32.4%(전혀: 5.8% + 모르는 편: 2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0.0%로 10대(65.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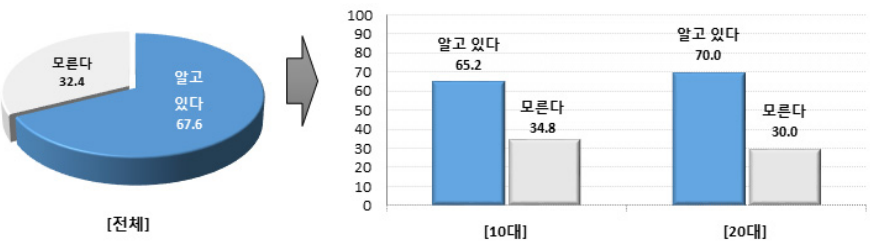


그림 III-25. 감독 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표 III-50 감독 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24(24.8)	214(42.8)	133(26.6)	29(5.8)	-
10대	250	64(25.6)	99(39.6)	67(26.8)	20(8.0)	6.933**
20대	250	60(24.0)	115(46.0)	66(26.4)	9(3.6)	(.009)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1 감독 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24(24.8)	214(42.8)	133(26.6)	29(5.8)	-
성별	남자	250	66(26.4)	101(40.4)	69(27.6)	14(5.6)	.494 (.482)
	여자	250	58(23.2)	113(45.2)	64(25.6)	15(6.0)	
학력별	고졸	313	81(25.9)	129(41.2)	80(25.6)	23(7.3)	.134 (.875)
	대졸	179	41(22.9)	81(45.3)	51(28.5)	6(3.4)	
	대학원이상	8	2(25.0)	4(50.0)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9(23.5)	65(39.2)	46(27.7)	16(9.6)	1.741 (.176)
	비정규직 취업	167	43(25.7)	73(43.7)	45(26.9)	6(3.6)	
	정규직 취업	167	42(25.1)	76(45.5)	42(25.1)	7(4.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6(23.2)	52(46.4)	30(26.8)	4(3.6)	.580 (.561)
	한시적노동	49	16(32.7)	19(38.8)	12(24.5)	2(4.1)	
	비전형노동	6	1(16.7)	2(33.3)	3(5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6(22.9)	63(40.1)	42(26.8)	16(10.2)	.023 (.880)
	시간제노동	9	3(33.3)	2(22.2)	4(44.4)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5(25.0)	45(45.0)	25(25.0)	5(5.0)	.441 (.779)
	충청권	100	27(27.0)	40(40.0)	26(26.0)	7(7.0)	
	경상권	100	25(25.0)	48(48.0)	22(22.0)	5(5.0)	
	전라권	100	24(24.0)	44(44.0)	25(25.0)	7(7.0)	
	강원/제주권	100	23(23.0)	37(37.0)	35(35.0)	5(5.0)	

*P<.05, **P<.01, ***P<.001

(5) 청소년 관련법령의 ‘청소년 근로’ 관련 보호 조항에 대한 이해

가.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및 필요 시책을 마련한다

‘청소년기본법인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및 필요 시책을 마련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0.8% (매우: 16.6% + 알고 있는 편: 44.2%)로 ‘모른다’는 응답 39.2%(전혀: 5.6% + 모르는 편: 3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6.8%로 20대(54.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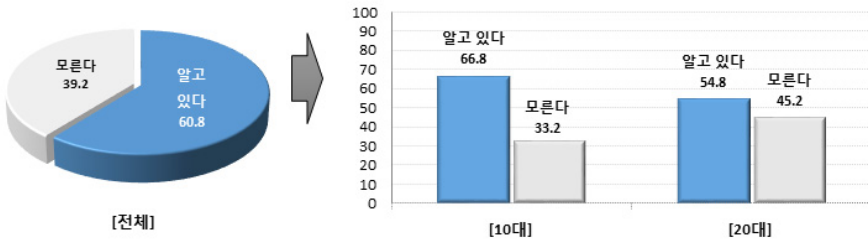


그림 Ⅲ-26.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및 필요 시책을 마련한다

표 Ⅲ-52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및 필요 시책을 마련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83(16.6)	221(44.2)	168(33.6)	28(5.6)	-
10대	250	52(20.8)	115(46.0)	71(28.4)	12(4.8)	.643
20대	250	31(12.4)	106(42.4)	97(38.8)	16(6.4)	(.423)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3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및 필요 시책을 마련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83(16.6)	221(44.2)	168(33.6)	28(5.6)	-
성별	남자	250	43(17.2)	111(44.4)	80(32.0)	16(6.4)	.221 (.638)
	여자	250	40(16.0)	110(44.0)	88(35.2)	12(4.8)	
학력별	고졸	313	55(17.6)	143(45.7)	96(30.7)	19(6.1)	.841 (.432)
	대졸	179	27(15.1)	73(40.8)	70(39.1)	9(5.0)	
	대학원이상	8	1(12.5)	5(62.5)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8(16.9)	76(45.8)	53(31.9)	9(5.4)	.331 (.718)
	비정규직 취업	167	24(14.4)	75(44.9)	58(34.7)	10(6.0)	
	정규직 취업	167	31(18.6)	70(41.9)	57(34.1)	9(5.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4(12.5)	54(48.2)	39(34.8)	5(4.5)	.158 (.854)
	한시적노동	49	9(18.4)	19(38.8)	17(34.7)	4(8.2)	
	비전형노동	6	1(16.7)	2(33.3)	2(33.3)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6(16.6)	73(46.5)	49(31.2)	9(5.7)	.040 (.842)
	시간제노동	9	2(22.2)	3(33.3)	4(44.4)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2(12.0)	48(48.0)	37(37.0)	3(3.0)	.472 (.756)
	충청권	100	20(20.0)	45(45.0)	28(28.0)	7(7.0)	
	경상권	100	12(12.0)	50(50.0)	29(29.0)	9(9.0)	
	전라권	100	18(18.0)	40(40.0)	36(36.0)	6(6.0)	
	강원/제주권	100	21(21.0)	38(38.0)	38(38.0)	3(3.0)	

*P<.05, **P<.01, ***P<.001

나.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시 신고를 의무화 한다

‘청소년기본법인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시 신고를 의무화 한다’의 인지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5.8%(매우: 20.0% + 알고 있는 편: 45.8%)로 ‘모른다’는 응답 34.2%(전혀: 5.0% + 모르는 편: 29.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9.6%로 20대(62.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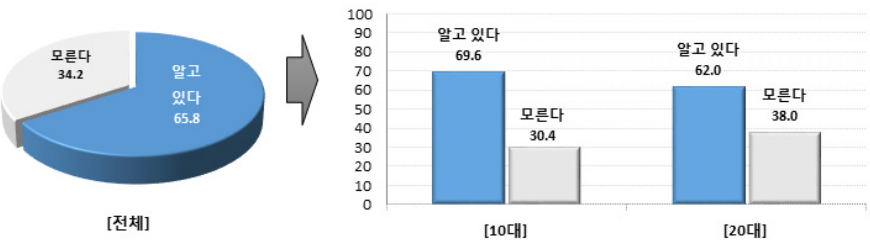


그림 III-27.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시 신고를 의무화 한다

표 III-54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시 신고를 의무화 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00(20.0)	229(45.8)	146(29.2)	25(5.0)	-
10대	250	55(22.0)	119(47.6)	64(25.6)	12(4.8)	1.281
20대	250	45(18.0)	110(44.0)	82(32.8)	13(5.2)	(.258)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5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시 신고를 의무화 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00(20.0)	229(45.8)	146(29.2)	25(5.0)	-
성별	남자	250	53(21.2)	119(47.6)	66(26.4)	12(4.8)	1.084 (.298)
	여자	250	47(18.8)	110(44.0)	80(32.0)	13(5.2)	
학력별	고졸	313	69(22.0)	144(46.0)	86(27.5)	14(4.5)	1.818 (.164)
	대졸	179	31(17.3)	81(45.3)	56(31.3)	11(6.1)	
	대학원이상	8	0(.0)	4(50.0)	4(50.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4(20.5)	76(45.8)	47(28.3)	9(5.4)	.663 (.516)
	비정규직 취업	167	29(17.4)	75(44.9)	56(33.5)	7(4.2)	
	정규직 취업	167	37(22.2)	78(46.7)	43(25.7)	9(5.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0(17.9)	51(45.5)	36(32.1)	5(4.5)	.327 (.722)
	한시적노동	49	9(18.4)	21(42.9)	17(34.7)	2(4.1)	
	비전형노동	6	0(.0)	3(50.0)	3(5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3(21.0)	73(46.5)	42(26.8)	9(5.7)	.043 (.836)
	시간제노동	9	1(11.1)	3(33.3)	5(55.6)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0(20.0)	52(52.0)	26(26.0)	2(2.0)	1.047 (.382)
	충청권	100	25(25.0)	44(44.0)	24(24.0)	7(7.0)	
	경상권	100	19(19.0)	43(43.0)	32(32.0)	6(6.0)	
	전라권	100	21(21.0)	35(35.0)	37(37.0)	7(7.0)	
	강원/제주권	100	15(15.0)	55(55.0)	27(27.0)	3(3.0)	

*P<.05, **P<.01, ***P<.001

다.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를 금지한다

‘청소년기본법인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신고인의 인적 사항,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를 금지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58.8%(매우: 15.4% + 알고 있는 편: 43.4%)로 ‘모른다’는 응답 41.2%(전혀: 6.4% + 모르는 편: 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0.0%로 20대(57.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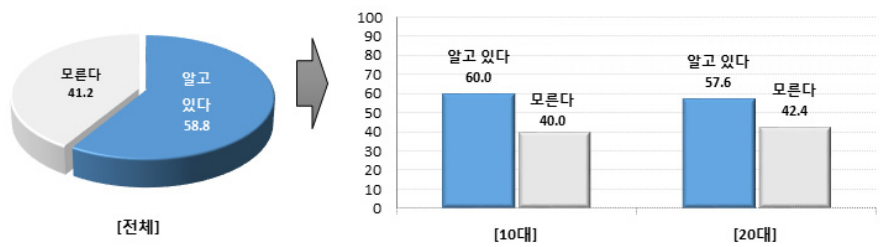


그림 Ⅲ-28.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를 금지한다

표 Ⅲ-56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를 금지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77(15.4)	217(43.4)	174(34.8)	32(6.4)	-
10대	250	43(17.2)	107(42.8)	83(33.2)	17(6.8)	.471
20대	250	34(13.6)	110(44.0)	91(36.4)	15(6.0)	(.493)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7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를 금지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77(15.4)	217(43.4)	174(34.8)	32(6.4)	-
성별	남자	250	40(16.0)	108(43.2)	82(32.8)	20(8.0)	1.279 (.259)
	여자	250	37(14.8)	109(43.6)	92(36.8)	12(4.8)	
학력별	고졸	313	52(16.6)	140(44.7)	101(32.3)	20(6.4)	1.338 (.263)
	대졸	179	23(12.8)	73(40.8)	72(40.2)	11(6.1)	
	대학원이상	8	2(25.0)	4(50.0)	1(12.5)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6(15.7)	72(43.4)	54(32.5)	14(8.4)	.065 (.937)
	비정규직 취업	167	23(13.8)	75(44.9)	61(36.5)	8(4.8)	
	정규직 취업	167	28(16.8)	70(41.9)	59(35.3)	10(6.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5(13.4)	53(47.3)	40(35.7)	4(3.6)	.247 (.781)
	한시적노동	49	7(14.3)	20(40.8)	18(36.7)	4(8.2)	
	비전형노동	6	1(16.7)	2(33.3)	3(5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5(15.9)	67(42.7)	52(33.1)	13(8.3)	.095 (.758)
	시간제노동	9	1(11.1)	5(55.6)	2(22.2)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3(13.0)	45(45.0)	39(39.0)	3(3.0)	.124 (.974)
	충청권	100	18(18.0)	42(42.0)	34(34.0)	6(6.0)	
	경상권	100	14(14.0)	45(45.0)	32(32.0)	9(9.0)	
	전라권	100	16(16.0)	43(43.0)	33(33.0)	8(8.0)	
	강원/제주권	100	16(16.0)	42(42.0)	36(36.0)	6(6.0)	

*P<.05, **P<.01, ***P<.001

라.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한 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 근로기준법에
정한 청소년노동자 권리 교육 및 상담을 한다

‘청소년기본법인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한 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
근로기준법에 정한 청소년노동자 권리 교육 및 상담을 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4%(매우: 13.2% + 알고 있는 편: 43.2%)로 ‘모른
다’는 응답 43.6%(전혀: 8.4% + 모르는 편: 3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56.8%) 및 20대(56.0%) 응답이 56%대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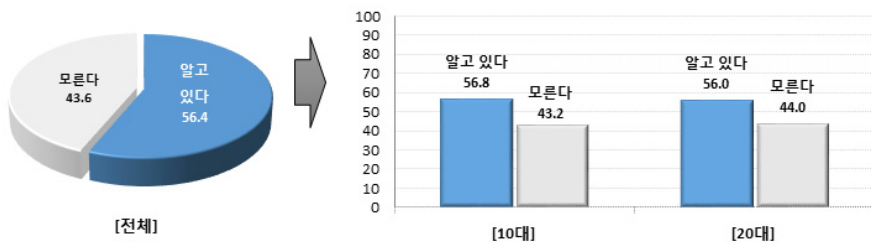


그림 Ⅲ-29.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한 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 근로기준법에 정한
청소년노동자 권리 교육 및 상담을 한다

표 Ⅲ-58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한 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 근로기준법에 정한
청소년노동자 권리 교육 및 상담을 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66(13.2)	216(43.2)	176(35.2)	42(8.4)	-
10대	250	36(14.4)	106(42.4)	85(34.0)	23(9.2)	.921
20대	250	30(12.0)	110(44.0)	91(36.4)	19(7.6)	(.338)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9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한 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 근로기준법에 정한 청소년노동자 권리 교육 및 상담을 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66(13.2)	216(43.2)	176(35.2)	42(8.4)	-
성별	남자	250	34(13.6)	107(42.8)	89(35.6)	20(8.0)	.003 (.957)
	여자	250	32(12.8)	109(43.6)	87(34.8)	22(8.8)	
학력별	고졸	313	45(14.4)	131(41.9)	109(34.8)	28(8.9)	.016 (.984)
	대졸	179	20(11.2)	81(45.3)	65(36.3)	13(7.3)	
	대학원이상	8	1(12.5)	4(50.0)	2(25.0)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0(12.0)	67(40.4)	66(39.8)	13(7.8)	.395 (.674)
	비정규직 취업	167	20(12.0)	79(47.3)	54(32.3)	14(8.4)	
	정규직 취업	167	26(15.6)	70(41.9)	56(33.5)	15(9.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5(13.4)	48(42.9)	39(34.8)	10(8.9)	.723 (.487)
	한시적노동	49	5(10.2)	27(55.1)	15(30.6)	2(4.1)	
	비전형노동	6	0(0)	4(66.7)	0(0)	2(33.3)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18(11.5)	65(41.4)	61(38.9)	13(8.3)	.117 (.733)
	시간제노동	9	2(22.2)	2(22.2)	5(55.6)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7(7.0)	50(50.0)	38(38.0)	5(5.0)	.949 (.435)
	충청권	100	22(22.0)	37(37.0)	30(30.0)	11(11.0)	
	경상권	100	14(14.0)	41(41.0)	38(38.0)	7(7.0)	
	전라권	100	13(13.0)	47(47.0)	33(33.0)	7(7.0)	
	강원/제주권	100	10(10.0)	41(41.0)	37(37.0)	12(12.0)	

*P<.05, **P<.01, ***P<.001

마.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고용을 금지한다

‘청소년보호법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고용을 금지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81.4%(매우: 36.4% + 알고 있는 편: 45.0%)로 ‘모른다’는 응답 18.6%(전혀: 3.2% + 모르는 편: 15.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82.4%) 및 20대(80.4%) 응답이 80%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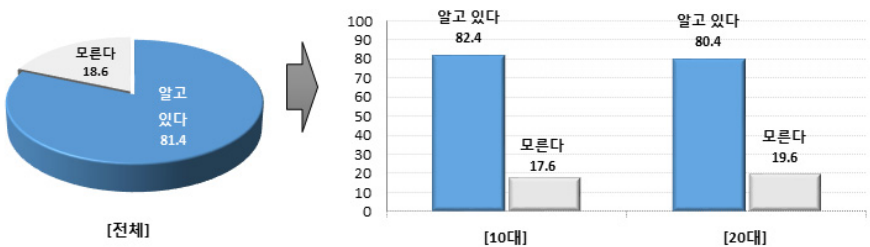


그림 III -30.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고용을 금지한다

표 III -60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고용을 금지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82(36.4)	225(45.0)	77(15.4)	16(3.2)	-
10대	250	90(36.0)	116(46.4)	37(14.8)	7(2.8)	.417
20대	250	92(36.8)	109(43.6)	40(16.0)	9(3.6)	(.519)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84.4%)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 -61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고용을 금지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82(36.4)	225(45.0)	77(15.4)	16(3.2)	-
성별	남자	250	84(33.6)	112(44.8)	45(18.0)	9(3.6)	.015 (.902)
	여자	250	98(39.2)	113(45.2)	32(12.8)	7(2.8)	
학력별	고졸	313	111(35.5)	147(47.0)	46(14.7)	9(2.9)	.140 (.869)
	대졸	179	69(38.5)	74(41.3)	29(16.2)	7(3.9)	
	대학원이상	8	2(25.0)	4(50.0)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61(36.7)	75(45.2)	25(15.1)	5(3.0)	1.077 (.341)
	비정규직 취업	167	64(38.3)	74(44.3)	28(16.8)	1(.6)	
	정규직 취업	167	57(34.1)	76(45.5)	24(14.4)	10(6.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1(36.6)	52(46.4)	18(16.1)	1(.9)	.430 (.651)
	한시적노동	49	21(42.9)	20(40.8)	8(16.3)	0(.0)	
	비전형노동	6	2(33.3)	2(33.3)	2(33.3)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60(38.2)	70(44.6)	22(14.0)	5(3.2)	.462 (.498)
	시간제노동	9	1(11.1)	5(55.6)	3(33.3)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5(35.0)	50(50.0)	12(12.0)	3(3.0)	.148 (.964)
	충청권	100	35(35.0)	44(44.0)	17(17.0)	4(4.0)	
	경상권	100	33(33.0)	53(53.0)	11(11.0)	3(3.0)	
	전라권	100	39(39.0)	42(42.0)	16(16.0)	3(3.0)	
	강원/제주권	100	40(40.0)	36(36.0)	21(21.0)	3(3.0)	

*P<.05, **P<.01, ***P<.001

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한다

‘청소년보호법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8.8%(매우: 34.8% + 알고 있는 편: 44.0%)로 ‘모른다’는 응답 21.2%(전혀: 3.8% + 모르는 편: 17.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0.4%로 10대(77.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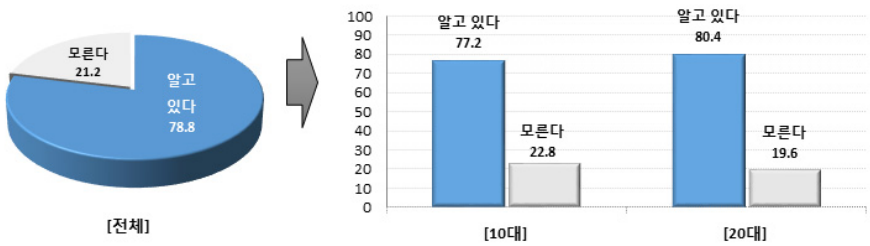


그림 III-31.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한다

표 III-6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74(34.8)	220(44.0)	87(17.4)	19(3.8)	-
10대	250	89(35.6)	104(41.6)	44(17.6)	13(5.2)	1.641
20대	250	85(34.0)	116(46.4)	43(17.2)	6(2.4)	(.201)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83.2%),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87.4%)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상태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3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74(34.8)	220(44.0)	87(17.4)	19(3.8)	-
성별	남자	250	86(34.4)	100(40.0)	55(22.0)	9(3.6)	1.143 (.286)
	여자	250	88(35.2)	120(48.0)	32(12.8)	10(4.0)	
학력별	고졸	313	108(34.5)	137(43.8)	54(17.3)	14(4.5)	.140 (.870)
	대졸	179	63(35.2)	80(44.7)	31(17.3)	5(2.8)	
	대학원이상	8	3(37.5)	3(37.5)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51(30.7)	70(42.2)	37(22.3)	8(4.8)	4.780** (.009)
	비정규직 취업	167	66(39.5)	80(47.9)	18(10.8)	3(1.8)	
	정규직 취업	167	57(34.1)	70(41.9)	32(19.2)	8(4.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5(40.2)	52(46.4)	14(12.5)	1(0.9)	.049 (.952)
	한시적노동	49	19(38.8)	25(51.0)	3(6.1)	2(4.1)	
	비전형노동	6	2(33.3)	3(50.0)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8(30.6)	68(43.3)	33(21.0)	8(5.1)	.744 (.390)
	시간제노동	9	3(33.3)	2(22.2)	4(44.4)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9(29.0)	50(50.0)	20(20.0)	1(1.0)	.407 (.804)
	충청권	100	37(37.0)	44(44.0)	15(15.0)	4(4.0)	
	경상권	100	37(37.0)	42(42.0)	17(17.0)	4(4.0)	
	전라권	100	34(34.0)	41(41.0)	18(18.0)	7(7.0)	
	강원/제주권	100	37(37.0)	43(43.0)	17(17.0)	3(3.0)	

*P<.05, **P<.01, ***P<.001

(6) ‘기타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 조항에 대한 이해

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기간제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5.6%(매우: 18.6% + 알고 있는 편: 47.0%)로 ‘모른다’는 응답 34.4%(전혀: 5.0% + 모르는 편: 29.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65.6%) 및 20대(65.6%) 응답이 65%대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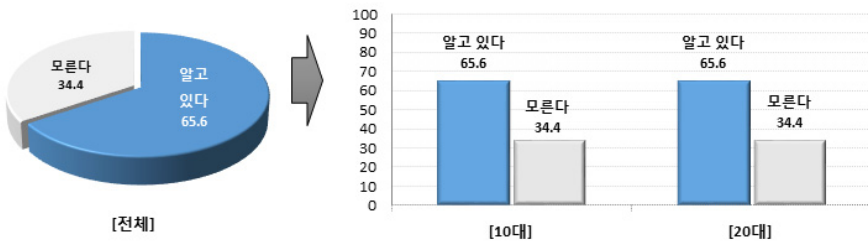


그림 Ⅲ-32.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표 Ⅲ-64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93(18.6)	235(47.0)	147(29.4)	25(5.0)	-
10대	250	50(20.0)	114(45.6)	71(28.4)	15(6.0)	1.170
20대	250	43(17.2)	121(48.4)	76(30.4)	10(4.0)	(.280)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65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93(18.6)	235(47.0)	147(29.4)	25(5.0)	-
성별	남자	250	59(23.6)	101(40.4)	81(32.4)	9(3.6)	2.130 (.145)
	여자	250	34(13.6)	134(53.6)	66(26.4)	16(6.4)	
학력별	고졸	313	59(18.8)	141(45.0)	97(31.0)	16(5.1)	.376 (.687)
	대졸	179	32(17.9)	90(50.3)	48(26.8)	9(5.0)	
	대학원이상	8	2(25.0)	4(50.0)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3(19.9)	65(39.2)	56(33.7)	12(7.2)	1.215 (.297)
	비정규직 취업	167	30(18.0)	86(51.5)	47(28.1)	4(2.4)	
	정규직 취업	167	30(18.0)	84(50.3)	44(26.3)	9(5.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6(14.3)	60(53.6)	33(29.5)	3(2.7)	1.087 (.340)
	한시적노동	49	13(26.5)	23(46.9)	12(24.5)	1(2.0)	
	비전형노동	6	1(16.7)	3(50.0)	2(33.3)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8(17.8)	63(40.1)	54(34.4)	12(7.6)	.010 (.922)
	시간제노동	9	5(55.6)	2(22.2)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3(13.0)	57(57.0)	29(29.0)	1(1.0)	.464 (.763)
	충청권	100	24(24.0)	45(45.0)	23(23.0)	8(8.0)	
	경상권	100	18(18.0)	50(50.0)	28(28.0)	4(4.0)	
	전라권	100	19(19.0)	42(42.0)	31(31.0)	8(8.0)	
	강원/제주권	100	19(19.0)	41(41.0)	36(36.0)	4(4.0)	

*P<.05, **P<.01, ***P<.001

나.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감액 가능하고, 단순업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인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감액 가능하고, 단순업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는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8%(매우: 16.6% + 알고 있는 편: 40.2%)로 ‘모른다’는 응답 43.2%(전혀: 7.0% + 모르는 편: 3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9.2%로 10대(54.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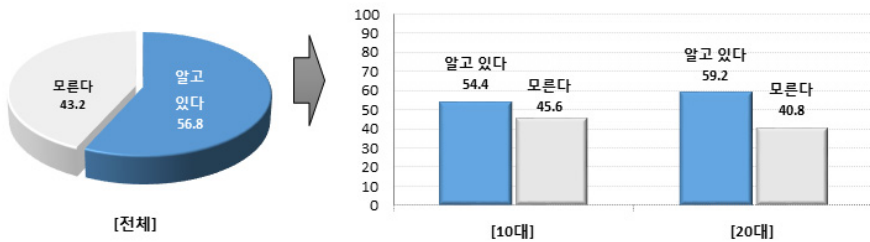


그림 Ⅲ-33.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감액 가능하고, 단순업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는다

표 Ⅲ-66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감액 가능하고, 단순업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는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83(16.6)	201(40.2)	181(36.2)	35(7.0)	-
10대	250	36(14.4)	100(40.0)	93(37.2)	21(8.4)	.173
20대	250	47(18.8)	101(40.4)	88(35.2)	14(5.6)	(.678)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64.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상태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7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감액 가능하고, 단순업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는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83(16.6)	201(40.2)	181(36.2)	35(7.0)	-
성별	남자	250	52(20.8)	96(38.4)	85(34.0)	17(6.8)	1.407 (.236)
	여자	250	31(12.4)	105(42.0)	96(38.4)	18(7.2)	
학력별	고졸	313	43(13.7)	131(41.9)	116(37.1)	23(7.3)	1.589 (.205)
	대졸	179	38(21.2)	66(36.9)	63(35.2)	12(6.7)	
	대학원이상	8	2(25.0)	4(50.0)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15(9.0)	63(38.0)	72(43.4)	16(9.6)	8.533*** (.000)
	비정규직 취업	167	35(21.0)	73(43.7)	55(32.9)	4(2.4)	
	정규직 취업	167	33(19.8)	65(38.9)	54(32.3)	15(9.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4(21.4)	51(45.5)	34(30.4)	3(2.7)	.607 (.546)
	한시적노동	49	11(22.4)	19(38.8)	18(36.7)	1(2.0)	
	비전형노동	6	0(.0)	3(50.0)	3(5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14(8.9)	58(36.9)	70(44.6)	15(9.6)	.011 (.918)
	시간제노동	9	1(11.1)	5(55.6)	2(22.2)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0(20.0)	39(39.0)	38(38.0)	3(3.0)	.995 (.410)
	충청권	100	19(19.0)	39(39.0)	35(35.0)	7(7.0)	
	경상권	100	16(16.0)	45(45.0)	32(32.0)	7(7.0)	
	전라권	100	16(16.0)	37(37.0)	39(39.0)	8(8.0)	
	강원/제주권	100	12(12.0)	41(41.0)	37(37.0)	10(10.0)	

*P<.05, **P<.01, ***P<.001

다.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

‘최저임금법인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9.6%(매우: 39.2% + 알고 있는 편: 40.4%)로 ‘모른다’는 응답 20.4%(전혀: 2.6% + 모르는 편: 17.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3.2%로 10대(7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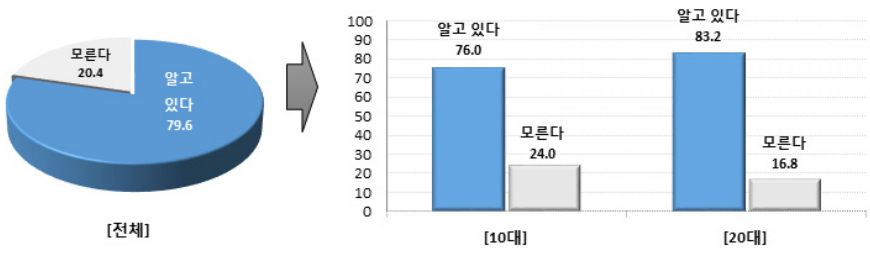


그림 Ⅲ-34.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

표 Ⅲ-68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96(39.2)	202(40.4)	89(17.8)	13(2.6)	-
10대	250	95(38.0)	95(38.0)	54(21.6)	6(2.4)	.589
20대	250	101(40.4)	107(42.8)	35(14.0)	7(2.8)	(.443)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83.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한시적노동(95.9%)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69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96(39.2)	202(40.4)	89(17.8)	13(2.6)	-
성별	남자	250	91(36.4)	106(42.4)	48(19.2)	5(2.0)	1.258 (.263)
	여자	250	105(42.0)	96(38.4)	41(16.4)	8(3.2)	
학력별	고졸	313	114(36.4)	127(40.6)	66(21.1)	6(1.9)	2.388 (.093)
	대졸	179	77(43.0)	72(40.2)	23(12.8)	7(3.9)	
	대학원이상	8	5(62.5)	3(37.5)	0(.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67(40.4)	60(36.1)	35(21.1)	4(2.4)	.576 (.562)
	비정규직 취업	167	66(39.5)	74(44.3)	24(14.4)	3(1.8)	
	정규직 취업	167	63(37.7)	68(40.7)	30(18.0)	6(3.6)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5(40.2)	45(40.2)	20(17.9)	2(1.8)	2.457 (.089)
	한시적노동	49	20(40.8)	27(55.1)	1(2.0)	1(2.0)	
	비전형노동	6	1(16.7)	2(33.3)	3(5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64(40.8)	57(36.3)	32(20.4)	4(2.5)	.023 (.881)
	시간제노동	9	3(33.3)	3(33.3)	3(33.3)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40(40.0)	44(44.0)	15(15.0)	1(1.0)	.502 (.734)
	충청권	100	41(41.0)	43(43.0)	12(12.0)	4(4.0)	
	경상권	100	39(39.0)	38(38.0)	21(21.0)	2(2.0)	
	전라권	100	41(41.0)	35(35.0)	21(21.0)	3(3.0)	
	강원/제주권	100	35(35.0)	42(42.0)	20(20.0)	3(3.0)	

*P<.05, **P<.01, ***P<.001

라.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인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2%(매우: 20.4% + 알고 있는 편: 45.8%)로 ‘모른다’는
응답 33.8%(전혀: 6.0% + 모르는 편: 27.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9.2%로 10대(63.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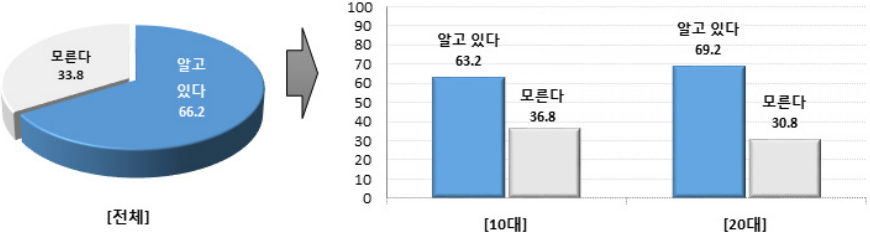


그림 Ⅲ-35.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표 Ⅲ-70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02(20.4)	229(45.8)	139(27.8)	30(6.0)	-
10대	250	49(19.6)	109(43.6)	72(28.8)	20(8.0)	4.989*
20대	250	53(21.2)	120(48.0)	67(26.8)	10(4.0)	(.026)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한시적노동(79.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02(20.4)	229(45.8)	139(27.8)	30(6.0)	-
성별	남자	250	48(19.2)	116(46.4)	69(27.6)	17(6.8)	.135 (.714)
	여자	250	54(21.6)	113(45.2)	70(28.0)	13(5.2)	
학력별	고졸	313	60(19.2)	139(44.4)	95(30.4)	19(6.1)	.939 (.392)
	대졸	179	41(22.9)	85(47.5)	42(23.5)	11(6.1)	
	대학원이상	8	1(12.5)	5(62.5)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5(21.1)	65(39.2)	53(31.9)	13(7.8)	.969 (.380)
	비정규직 취업	167	29(17.4)	88(52.7)	42(25.1)	8(4.8)	
	정규직 취업	167	38(22.8)	76(45.5)	44(26.3)	9(5.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7(15.2)	58(51.8)	31(27.7)	6(5.4)	3.207* (.043)
	한시적노동	49	12(24.5)	27(55.1)	9(18.4)	1(2.0)	
	비전형노동	6	0(.0)	3(50.0)	2(33.3)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2(20.4)	62(39.5)	50(31.8)	13(8.3)	.222 (.638)
	시간제노동	9	3(33.3)	3(33.3)	3(33.3)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5(15.0)	55(55.0)	27(27.0)	3(3.0)	.739 (.566)
	충청권	100	26(26.0)	45(45.0)	22(22.0)	7(7.0)	
	경상권	100	18(18.0)	50(50.0)	30(30.0)	2(2.0)	
	전라권	100	20(20.0)	44(44.0)	26(26.0)	10(10.0)	
	강원/제주권	100	23(23.0)	35(35.0)	34(34.0)	8(8.0)	

*P<.05, **P<.01, ***P<.001

마.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한다
 ‘직업안정법인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한다’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4.0% (매우: 21.4% + 알고 있는 편: 42.6%)로 ‘모른다’는 응답 36.0%(전혀: 6.8% + 모르는 편: 29.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68.0%로 20대(6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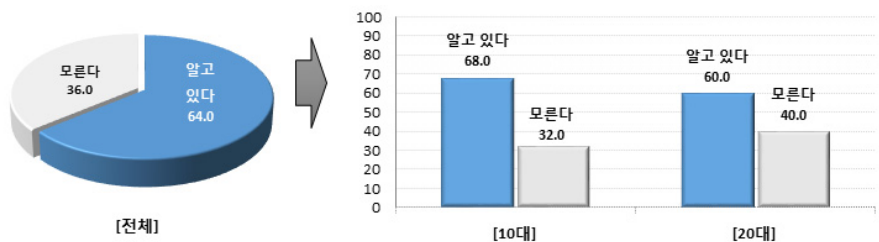


그림 III-36.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한다

표 III-72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한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07(21.4)	213(42.6)	146(29.2)	34(6.8)	-
10대	250	62(24.8)	108(43.2)	63(25.2)	17(6.8)	.189
20대	250	45(18.0)	105(42.0)	83(33.2)	17(6.8)	(.664)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67.5%)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73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한다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107(21.4)	213(42.6)	146(29.2)	34(6.8)	-
성별	남자	250	56(22.4)	111(44.4)	70(28.0)	13(5.2)	2.868 (.091)
	여자	250	51(20.4)	102(40.8)	76(30.4)	21(8.4)	
학력별	고졸	313	75(24.0)	136(43.5)	83(26.5)	19(6.1)	2.814 (.061)
	대졸	179	30(16.8)	74(41.3)	60(33.5)	15(8.4)	
	대학원이상	8	2(25.0)	3(37.5)	3(37.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9(23.5)	66(39.8)	50(30.1)	11(6.6)	.438 (.646)
	비정규직 취업	167	31(18.6)	82(49.1)	47(28.1)	7(4.2)	
	정규직 취업	167	37(22.2)	65(38.9)	49(29.3)	16(9.6)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1(18.8)	55(49.1)	30(26.8)	6(5.4)	.017 (.983)
	한시적노동	49	10(20.4)	22(44.9)	16(32.7)	1(2.0)	
	비전형노동	6	0(0)	5(83.3)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5(22.3)	65(41.4)	46(29.3)	11(7.0)	1.100 (.296)
	시간제노동	9	4(44.4)	1(11.1)	4(44.4)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5(15.0)	52(52.0)	29(29.0)	4(4.0)	2.052 (.086)
	충청권	100	25(25.0)	40(40.0)	22(22.0)	13(13.0)	
	경상권	100	26(26.0)	44(44.0)	27(27.0)	3(3.0)	
	전라권	100	28(28.0)	34(34.0)	33(33.0)	5(5.0)	
	강원/제주권	100	13(13.0)	43(43.0)	35(35.0)	9(9.0)	

*P<.05, **P<.01, ***P<.001

2) 근로 경험과 관련한 인식 및 실제

(1) 노동문제에 관한 인식

가.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혹 있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자주 있다’(35.0%), ‘전혀 없다’(22.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간혹 있다 응답이 10대(44.8%) 및 20대(41.2%) 응답이 40%대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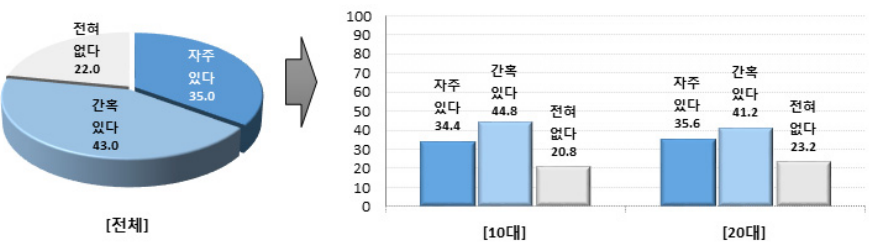


그림 III-37.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 III-74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75(35.0)	215(43.0)	110(22.0)	-
10대	250	86(34.4)	112(44.8)	52(20.8)	.587
20대	250	89(35.6)	103(41.2)	58(23.2)	(.444)

*P<.05, **P<.01, ***P<.001

자주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39.2%)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75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75(35.0)	215(43.0)	110(22.0)	-
성별	남자	250	77(30.8)	108(43.2)	65(26.0)	.667 (.415)
	여자	250	98(39.2)	107(42.8)	45(18.0)	
학력별	고졸	313	106(33.9)	141(45.0)	66(21.1)	.138 (.871)
	대졸	179	67(37.4)	70(39.1)	42(23.5)	
	대학원이상	8	2(25.0)	4(50.0)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61(36.7)	74(44.6)	31(18.7)	.600 (.549)
	비정규직 취업	167	55(32.9)	76(45.5)	36(21.6)	
	정규직 취업	167	59(35.3)	65(38.9)	43(25.7)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4(30.4)	52(46.4)	26(23.2)	.679 (.509)
	한시적노동	49	19(38.8)	20(40.8)	10(20.4)	
	비전형노동	6	2(33.3)	4(6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56(35.7)	72(45.9)	29(18.5)	1.180 (.279)
	시간제노동	9	5(55.6)	2(22.2)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8(28.0)	47(47.0)	25(25.0)	.711 (.585)
	충청권	100	32(32.0)	47(47.0)	21(21.0)	
	경상권	100	38(38.0)	39(39.0)	23(23.0)	
	전라권	100	39(39.0)	40(40.0)	21(21.0)	
	강원/제주권	100	38(38.0)	42(42.0)	20(20.0)	

*P<.05, **P<.01, ***P<.001

나.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혹 있다’(38.2%), ‘자주 있다’(38.0%), ‘전혀 없다’(23.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는 자주 있다 응답이 40.0%, 20대는 간혹 있다 응답이 39.2%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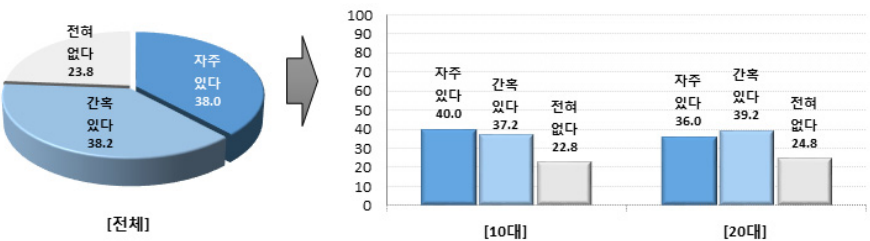


그림 Ⅲ-38.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표 Ⅲ-76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90(38.0)	191(38.2)	119(23.8)	-
10대	250	100(40.0)	93(37.2)	57(22.8)	.382
20대	250	90(36.0)	98(39.2)	62(24.8)	(.537)

*P<.05, **P<.01, ***P<.001

자주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45.2%)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7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90(38.0)	191(38.2)	119(23.8)	-
성별	남자	250	77(30.8)	105(42.0)	68(27.2)	5.136** (.024)
	여자	250	113(45.2)	86(34.4)	51(20.4)	
학력별	고졸	313	126(40.3)	113(36.1)	74(23.6)	.559 (.572)
	대졸	179	60(33.5)	76(42.5)	43(24.0)	
	대학원이상	8	4(50.0)	2(25.0)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70(42.2)	61(36.7)	35(21.1)	1.023 (.360)
	비정규직 취업	167	56(33.5)	71(42.5)	40(24.0)	
	정규직 취업	167	64(38.3)	59(35.3)	44(26.3)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5(31.3)	50(44.6)	27(24.1)	.300 (.741)
	한시적노동	49	20(40.8)	17(34.7)	12(24.5)	
	비전형노동	6	1(16.7)	4(66.7)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67(42.7)	57(36.3)	33(21.0)	.334 (.564)
	시간제노동	9	3(33.3)	4(44.4)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6(36.0)	39(39.0)	25(25.0)	.086 (.987)
	충청권	100	39(39.0)	37(37.0)	24(24.0)	
	경상권	100	41(41.0)	33(33.0)	26(26.0)	
	전라권	100	36(36.0)	45(45.0)	19(19.0)	
	강원/제주권	100	38(38.0)	37(37.0)	25(25.0)	

*P<.05, **P<.01, ***P<.001

다.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주 있다’ 및 ‘간혹 있다’는 응답이 각 36.6%, 36.0%로 높았으며, ‘전혀 없다’(27.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는 간혹 있다 응답이 38.0%, 20대는 자주 있다 응답이 38.0%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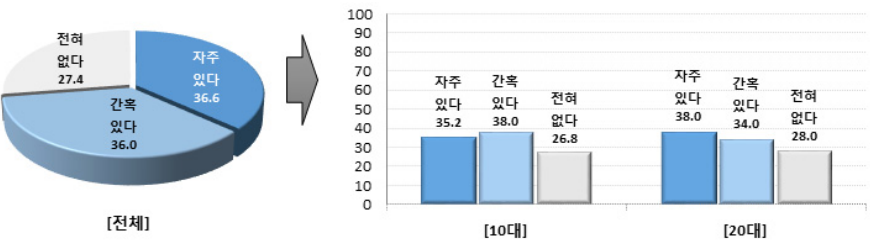


그림 III-39.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표 III-78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83(36.6)	180(36.0)	137(27.4)	-
10대	250	88(35.2)	95(38.0)	67(26.8)	1.006
20대	250	95(38.0)	85(34.0)	70(28.0)	(.316)

*P<.05, **P<.01, ***P<.001

자주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42.8%), 경상권(47.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9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83(36.6)	180(36.0)	137(27.4)	-
성별	남자	250	76(30.4)	95(38.0)	79(31.6)	2.683 (.102)
	여자	250	107(42.8)	85(34.0)	58(23.2)	
학력별	고졸	313	116(37.1)	114(36.4)	83(26.5)	.139 (.870)
	대졸	179	64(35.8)	63(35.2)	52(29.1)	
	대학원이상	8	3(37.5)	3(37.5)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63(38.0)	70(42.2)	33(19.9)	1.587 (.206)
	비정규직 취업	167	64(38.3)	49(29.3)	54(32.3)	
	정규직 취업	167	56(33.5)	61(36.5)	50(29.9)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1(36.6)	33(29.5)	38(33.9)	1.278 (.281)
	한시적노동	49	23(46.9)	12(24.5)	14(28.6)	
	비전형노동	6	0(.0)	4(66.7)	2(33.3)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60(38.2)	66(42.0)	31(19.7)	.049 (.824)
	시간제노동	9	3(33.3)	4(44.4)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5(25.0)	43(43.0)	32(32.0)	2.563* (.038)
	충청권	100	36(36.0)	34(34.0)	30(30.0)	
	경상권	100	47(47.0)	29(29.0)	24(24.0)	
	전라권	100	41(41.0)	39(39.0)	20(20.0)	
	강원/제주권	100	34(34.0)	35(35.0)	31(31.0)	

*P<.05, **P<.01, ***P<.001

라.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주 있다’(39.4%), ‘간혹 있다’(37.6%), ‘전혀 없다’(23.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는 간혹 있다 응답이 40.4%, 20대는 자주 있다 응답이 42.4%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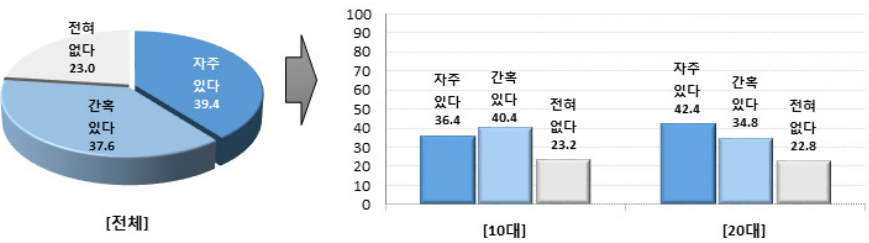


그림 III-40.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표 III-80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97(39.4)	188(37.6)	115(23.0)	-
10대	250	91(36.4)	101(40.4)	58(23.2)	1.889
20대	250	106(42.4)	87(34.8)	57(22.8)	(.170)

*P<.05, **P<.01, ***P<.001

자주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45.6%), 경상권(47.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81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97(39.4)	188(37.6)	115(23.0)	-
성별	남자	250	83(33.2)	99(39.6)	68(27.2)	1.392 (.239)
	여자	250	114(45.6)	89(35.6)	47(18.8)	
학력별	고졸	313	118(37.7)	121(38.7)	74(23.6)	.671 (.512)
	대졸	179	77(43.0)	63(35.2)	39(21.8)	
	대학원이상	8	2(25.0)	4(50.0)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68(41.0)	63(38.0)	35(21.1)	.273 (.761)
	비정규직 취업	167	60(35.9)	73(43.7)	34(20.4)	
	정규직 취업	167	69(41.3)	52(31.1)	46(27.5)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7(33.0)	51(45.5)	24(21.4)	.520 (.596)
	한시적노동	49	22(44.9)	17(34.7)	10(20.4)	
	비전형노동	6	1(16.7)	5(83.3)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63(40.1)	61(38.9)	33(21.0)	.465 (.496)
	시간제노동	9	5(55.6)	2(22.2)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4(34.0)	40(40.0)	26(26.0)	1.482 (.207)
	충청권	100	34(34.0)	39(39.0)	27(27.0)	
	경상권	100	47(47.0)	36(36.0)	17(17.0)	
	전라권	100	38(38.0)	42(42.0)	20(20.0)	
	강원/제주권	100	44(44.0)	31(31.0)	25(25.0)	

*P<.05, **P<.01, ***P<.001

마.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혹 있다’(39.8%), ‘자주 있다’(38.6%), ‘전혀 없다’(21.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는 간혹 있다 응답이 44.0%, 20대는 자주 있다 응답이 44.0%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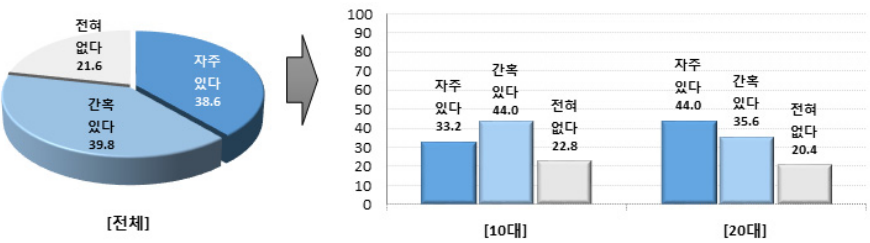


그림 Ⅲ-41.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표 Ⅲ-82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93(38.6)	199(39.8)	108(21.6)	-
10대	250	83(33.2)	110(44.0)	57(22.8)	4.497* (.034)
20대	250	110(44.0)	89(35.6)	51(20.4)	

*P<.05, **P<.01, ***P<.001

자주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46.0%), 대졸(44.1%)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83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93(38.6)	199(39.8)	108(21.6)	-
성별	남자	250	78(31.2)	105(42.0)	67(26.8)	1.920 (.166)
	여자	250	115(46.0)	94(37.6)	41(16.4)	
학력별	고졸	313	111(35.5)	130(41.5)	72(23.0)	1.612 (.200)
	대졸	179	79(44.1)	66(36.9)	34(19.0)	
	대학원이상	8	3(37.5)	3(37.5)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58(34.9)	70(42.2)	38(22.9)	1.118 (.328)
	비정규직 취업	167	69(41.3)	69(41.3)	29(17.4)	
	정규직 취업	167	66(39.5)	60(35.9)	41(24.6)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2(37.5)	51(45.5)	19(17.0)	.373 (.689)
	한시적노동	49	25(51.0)	14(28.6)	10(20.4)	
	비전형노동	6	2(33.3)	4(6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55(35.0)	67(42.7)	35(22.3)	.139 (.710)
	시간제노동	9	3(33.3)	3(33.3)	3(33.3)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4(34.0)	43(43.0)	23(23.0)	.765 (.549)
	충청권	100	37(37.0)	40(40.0)	23(23.0)	
	경상권	100	44(44.0)	38(38.0)	18(18.0)	
	전라권	100	40(40.0)	42(42.0)	18(18.0)	
	강원/제주권	100	38(38.0)	36(36.0)	26(26.0)	

*P<.05, **P<.01, ***P<.001

바.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간혹 있다’(46.2%)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전혀 없다’(29.2%), ‘자주 있다’(24.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및 20대 모두 간혹 있다 응답이 각 48.8%, 43.6%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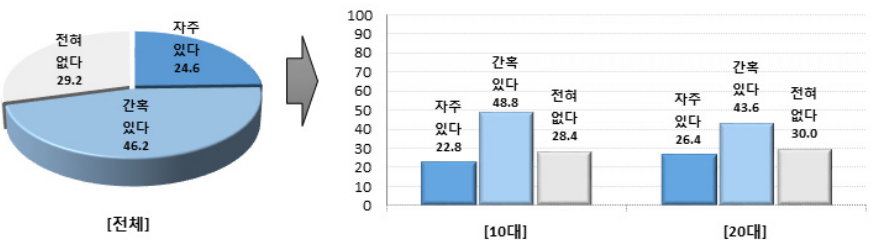


그림 III -42.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표 III -84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23(24.6)	231(46.2)	146(29.2)	-
10대	250	57(22.8)	122(48.8)	71(28.4)	.987
20대	250	66(26.4)	109(43.6)	75(30.0)	(.321)

*P<.05, **P<.01, ***P<.001

자주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32.0%), 대출(29.1%),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한시적노동(32.7%), 경상권(31.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85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23(24.6)	231(46.2)	146(29.2)	-
성별	남자	250	43(17.2)	118(47.2)	89(35.6)	.000
	여자	250	80(32.0)	113(45.2)	57(22.8)	(.997)
학력별	고졸	313	70(22.4)	151(48.2)	92(29.4)	.925
	대졸	179	52(29.1)	76(42.5)	51(28.5)	(.397)
	대학원이상	8	1(12.5)	4(50.0)	3(37.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9(23.5)	86(51.8)	41(24.7)	.291
	비정규직 취업	167	40(24.0)	75(44.9)	52(31.1)	(.748)
	정규직 취업	167	44(26.3)	70(41.9)	53(31.7)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3(20.5)	53(47.3)	36(32.1)	.605
	한시적노동	49	16(32.7)	18(36.7)	15(30.6)	(.548)
	비전형노동	6	1(16.7)	4(66.7)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7(23.6)	82(52.2)	38(24.2)	.430
	시간제노동	9	2(22.2)	4(44.4)	3(33.3)	(.513)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3(23.0)	49(49.0)	28(28.0)	.525
	충청권	100	23(23.0)	45(45.0)	32(32.0)	(.717)
	경상권	100	31(31.0)	41(41.0)	28(28.0)	
	전라권	100	25(25.0)	48(48.0)	27(27.0)	
	강원/제주권	100	21(21.0)	48(48.0)	31(31.0)	

*P<.05, **P<.01, ***P<.001

사.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간혹 있다’(51.6%)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전혀 없다’(30.8%), ‘자주 있다’(17.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및 20대 모두 간혹 있다 응답이 각 50.8%, 52.4%로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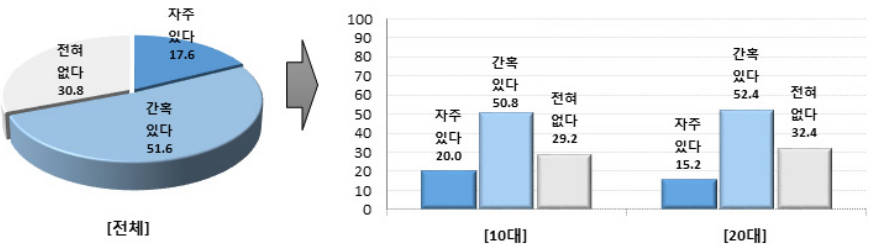


그림 III-43.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

표 III-86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88(17.6)	258(51.6)	154(30.8)	-
10대	250	50(20.0)	127(50.8)	73(29.2)	.027
20대	250	38(15.2)	131(52.4)	81(32.4)	(.869)

*P<.05, **P<.01, ***P<.001

자주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가 미취업/구직중(22.3%)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87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88(17.6)	258(51.6)	154(30.8)	-
성별	남자	250	47(18.8)	119(47.6)	84(33.6)	4.157* (.042)
	여자	250	41(16.4)	139(55.6)	70(28.0)	
학력별	고졸	313	58(18.5)	160(51.1)	95(30.4)	.250 (.779)
	대졸	179	29(16.2)	94(52.5)	56(31.3)	
	대학원이상	8	1(12.5)	4(50.0)	3(37.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7(22.3)	86(51.8)	43(25.9)	2.925 (.055)
	비정규직 취업	167	30(18.0)	83(49.7)	54(32.3)	
	정규직 취업	167	21(12.6)	89(53.3)	57(34.1)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7(15.2)	56(50.0)	39(34.8)	.983 (.376)
	한시적노동	49	12(24.5)	23(46.9)	14(28.6)	
	비전형노동	6	1(16.7)	4(66.7)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3(21.0)	84(53.5)	40(25.5)	3.494 (.063)
	시간제노동	9	4(44.4)	2(22.2)	3(33.3)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4(14.0)	56(56.0)	30(30.0)	.956 (.431)
	충청권	100	23(23.0)	48(48.0)	29(29.0)	
	경상권	100	21(21.0)	51(51.0)	28(28.0)	
	전라권	100	17(17.0)	51(51.0)	32(32.0)	
	강원/제주권	100	13(13.0)	52(52.0)	35(35.0)	

*P<.05, **P<.01, ***P<.001

아.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주 있다’(40.2%), ‘간혹 있다’(34.6%), ‘전혀 없다’(25.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는 간혹 있다 응답이 38.0%, 20대는 자주 있다 응답이 44.8%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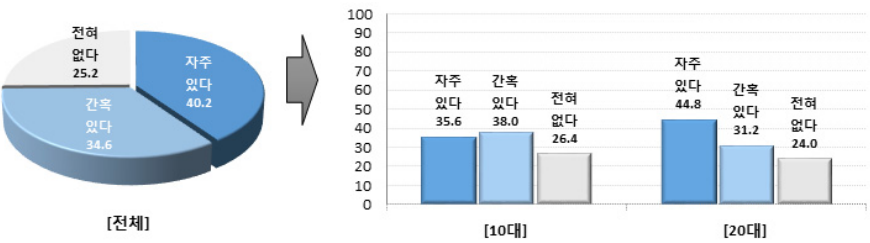


그림 III-44.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표 III-88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01(40.2)	173(34.6)	126(25.2)	-
10대	250	89(35.6)	95(38.0)	66(26.4)	2.965
20대	250	112(44.8)	78(31.2)	60(24.0)	(.086)

*P<.05, **P<.01, ***P<.001

자주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45.6%), 대졸(46.9%), 과거 취업형태(현재 미취업)가 시간제노동(77.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89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01(40.2)	173(34.6)	126(25.2)	-
성별	남자	250	87(34.8)	88(35.2)	75(30.0)	.283 (.595)
	여자	250	114(45.6)	85(34.0)	51(20.4)	
학력별	고졸	313	115(36.7)	115(36.7)	83(26.5)	1.864 (.156)
	대졸	179	84(46.9)	54(30.2)	41(22.9)	
	대학원이상	8	2(25.0)	4(50.0)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66(39.8)	62(37.3)	38(22.9)	.354 (.702)
	비정규직 취업	167	71(42.5)	54(32.3)	42(25.1)	
	정규직 취업	167	64(38.3)	57(34.1)	46(27.5)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7(42.0)	34(30.4)	31(27.7)	.294 (.746)
	한시적노동	49	22(44.9)	16(32.7)	11(22.4)	
	비전형노동	6	2(33.3)	4(6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59(37.6)	62(39.5)	36(22.9)	.120 (.730)
	시간제노동	9	7(77.8)	0(.0)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7(37.0)	37(37.0)	26(26.0)	.670 (.613)
	충청권	100	35(35.0)	36(36.0)	29(29.0)	
	경상권	100	45(45.0)	31(31.0)	24(24.0)	
	전라권	100	43(43.0)	35(35.0)	22(22.0)	
	강원/제주권	100	41(41.0)	34(34.0)	25(25.0)	

*P<.05, **P<.01, ***P<.001

자.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주 있다’(38.2%), ‘간혹 있다’(36.2%), ‘전혀 없다’(25.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는 간혹 있다 응답이 37.2%, 20대는 자주 있다 응답이 40.0%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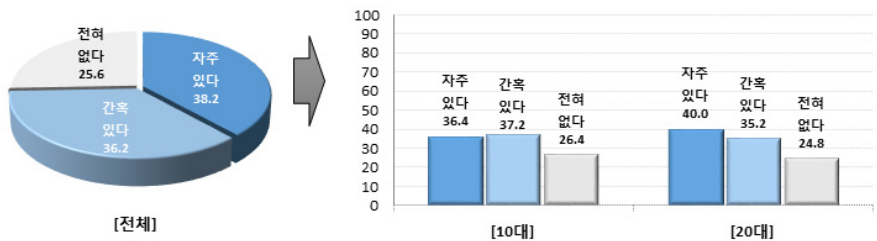


그림 Ⅲ-45.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표 Ⅲ-90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91(38.2)	181(36.2)	128(25.6)	-
10대	250	91(36.4)	93(37.2)	66(26.4)	.379
20대	250	100(40.0)	88(35.2)	62(24.8)	(.538)

*P<.05, **P<.01, ***P<.001

자주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44.0%)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91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91(38.2)	181(36.2)	128(25.6)	-
성별	남자	250	81(32.4)	94(37.6)	75(30.0)	1.514 (.219)
	여자	250	110(44.0)	87(34.8)	53(21.2)	
학력별	고졸	313	113(36.1)	116(37.1)	84(26.8)	.968 (.381)
	대졸	179	76(42.5)	61(34.1)	42(23.5)	
	대학원이상	8	2(25.0)	4(50.0)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62(37.3)	61(36.7)	43(25.9)	.266 (.767)
	비정규직 취업	167	69(41.3)	56(33.5)	42(25.1)	
	정규직 취업	167	60(35.9)	64(38.3)	43(25.7)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5(40.2)	38(33.9)	29(25.9)	.098 (.906)
	한시적노동	49	22(44.9)	15(30.6)	12(24.5)	
	비전형노동	6	2(33.3)	3(50.0)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58(36.9)	59(37.6)	40(25.5)	.860 (.355)
	시간제노동	9	4(44.4)	2(22.2)	3(33.3)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5(35.0)	39(39.0)	26(26.0)	.340 (.851)
	충청권	100	38(38.0)	38(38.0)	24(24.0)	
	경상권	100	44(44.0)	32(32.0)	24(24.0)	
	전라권	100	35(35.0)	41(41.0)	24(24.0)	
	강원/제주권	100	39(39.0)	31(31.0)	30(30.0)	

*P<.05, **P<.01, ***P<.001

차.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해준 경우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해준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혹 있다’(41.6%), ‘자주 있다’(30.2%), ‘전혀 없다’(28.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및 20대 모두 간혹 있다 응답이 각 41.6%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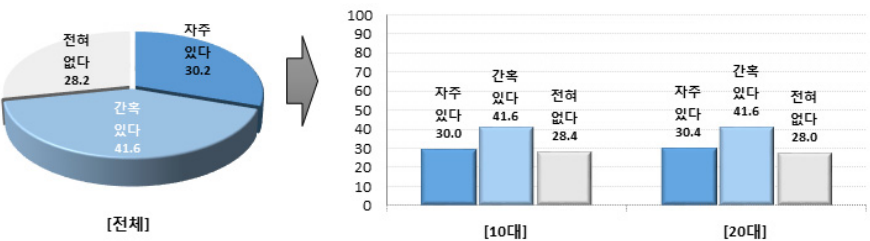


그림 Ⅲ-46.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해준 경우

표 Ⅲ-92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해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51(30.2)	208(41.6)	141(28.2)	-
10대	250	75(30.0)	104(41.6)	71(28.4)	.005
20대	250	76(30.4)	104(41.6)	70(28.0)	(.945)

*P<.05, **P<.01, ***P<.001

자주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34.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한시적노동(44.9%)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93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해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51(30.2)	208(41.6)	141(28.2)	-
성별	남자	250	66(26.4)	101(40.4)	83(33.2)	.094 (.760)
	여자	250	85(34.0)	107(42.8)	58(23.2)	
학력별	고졸	313	96(30.7)	128(40.9)	89(28.4)	.006 (.994)
	대졸	179	53(29.6)	76(42.5)	50(27.9)	
	대학원이상	8	2(25.0)	4(50.0)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52(31.3)	67(40.4)	47(28.3)	.024 (.976)
	비정규직 취업	167	49(29.3)	72(43.1)	46(27.5)	
	정규직 취업	167	50(29.9)	69(41.3)	48(28.7)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7(24.1)	51(45.5)	34(30.4)	2.694 (.071)
	한시적노동	49	22(44.9)	16(32.7)	11(22.4)	
	비전형노동	6	0(.0)	5(83.3)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7(29.9)	66(42.0)	44(28.0)	2.845 (.094)
	시간제노동	9	5(55.6)	1(11.1)	3(33.3)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7(27.0)	42(42.0)	31(31.0)	.383 (.821)
	충청권	100	32(32.0)	38(38.0)	30(30.0)	
	경상권	100	34(34.0)	41(41.0)	25(25.0)	
	전라권	100	26(26.0)	48(48.0)	26(26.0)	
	강원/제주권	100	32(32.0)	39(39.0)	29(29.0)	

*P<.05, **P<.01, ***P<.001

카.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우리 사회에서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혹 있다’(40.6%), ‘전혀 없다’(31.6%), ‘자주 있다’(27.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및 20대 모두 간혹 있다 응답이 각 40.0%, 41.2%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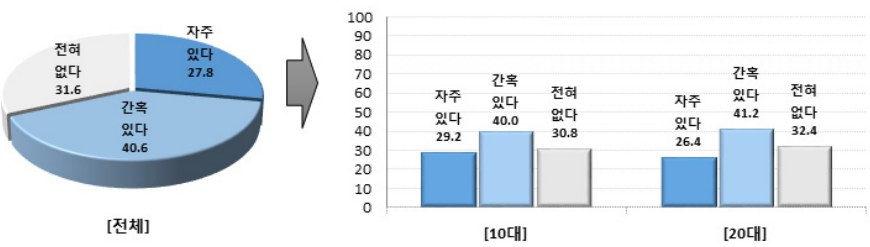


그림 Ⅲ-47.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표 Ⅲ-94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39(27.8)	203(40.6)	158(31.6)	—
10대	250	73(29.2)	100(40.0)	77(30.8)	.005
20대	250	66(26.4)	103(41.2)	81(32.4)	(.944)

*P<.05, **P<.01, ***P<.001

자주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33.6%), 현재 취업상태가 미취업/구직중(33.1%),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한시적노동(32.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95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39(27.8)	203(40.6)	158(31.6)	-
성별	남자	250	55(22.0)	98(39.2)	97(38.8)	.864
	여자	250	84(33.6)	105(42.0)	61(24.4)	(.353)
학력별	고졸	313	89(28.4)	128(40.9)	96(30.7)	.198
	대졸	179	49(27.4)	70(39.1)	60(33.5)	(.821)
	대학원이상	8	1(12.5)	5(62.5)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55(33.1)	68(41.0)	43(25.9)	2.564
	비정규직 취업	167	39(23.4)	74(44.3)	54(32.3)	(.078)
	정규직 취업	167	45(26.9)	61(36.5)	61(36.5)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2(19.6)	52(46.4)	38(33.9)	1.076
	한시적노동	49	16(32.7)	19(38.8)	14(28.6)	(.343)
	비전형노동	6	1(16.7)	3(50.0)	2(33.3)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51(32.5)	66(42.0)	40(25.5)	1.412
	시간제노동	9	4(44.4)	2(22.2)	3(33.3)	(.236)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2(22.0)	42(42.0)	36(36.0)	.972 (.423)
	충청권	100	28(28.0)	43(43.0)	29(29.0)	
	경상권	100	33(33.0)	39(39.0)	28(28.0)	
	전라권	100	27(27.0)	46(46.0)	27(27.0)	
	강원/제주권	100	29(29.0)	33(33.0)	38(38.0)	

*P<.05, **P<.01, ***P<.001

타.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간혹 있다’(40.8%), ‘자주 있다’(30.0%), ‘전혀 없다’(29.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및 20대 모두 간혹 있다 응답이 각 41.2%, 40.4%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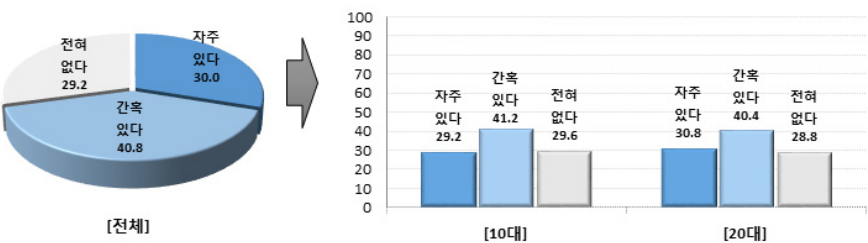


그림 Ⅲ-48.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표 Ⅲ-96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50(30.0)	204(40.8)	146(29.2)	-
10대	250	73(29.2)	103(41.2)	74(29.6)	.104
20대	250	77(30.8)	101(40.4)	72(28.8)	(.747)

*P<.05, **P<.01, ***P<.001

자주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34.8%), 경상권(38.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 -97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50(30.0)	204(40.8)	146(29.2)	-
성별	남자	250	63(25.2)	102(40.8)	85(34.0)	.008 (.931)
	여자	250	87(34.8)	102(40.8)	61(24.4)	
학력별	고졸	313	91(29.1)	129(41.2)	93(29.7)	.206 (.814)
	대졸	179	56(31.3)	72(40.2)	51(28.5)	
	대학원이상	8	3(37.5)	3(37.5)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51(30.7)	67(40.4)	48(28.9)	1.135 (.322)
	비정규직 취업	167	55(32.9)	68(40.7)	44(26.3)	
	정규직 취업	167	44(26.3)	69(41.3)	54(32.3)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3(29.5)	49(43.8)	30(26.8)	.438 (.646)
	한시적노동	49	20(40.8)	16(32.7)	13(26.5)	
	비전형노동	6	2(33.3)	3(50.0)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7(29.9)	64(40.8)	46(29.3)	.336 (.563)
	시간제노동	9	4(44.4)	3(33.3)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6(26.0)	41(41.0)	33(33.0)	1.049 (.381)
	충청권	100	26(26.0)	45(45.0)	29(29.0)	
	경상권	100	38(38.0)	37(37.0)	25(25.0)	
	전라권	100	31(31.0)	42(42.0)	27(27.0)	
	강원/제주권	100	29(29.0)	39(39.0)	32(32.0)	

*P<.05, **P<.01, ***P<.001

(2) 노동문제 관련 실제 경험

가.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27.1%, ‘없다’는 응답이 72.9%로, 10명 중 3명가량이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26.0%) 및 20대(27.5%) 응답이 26%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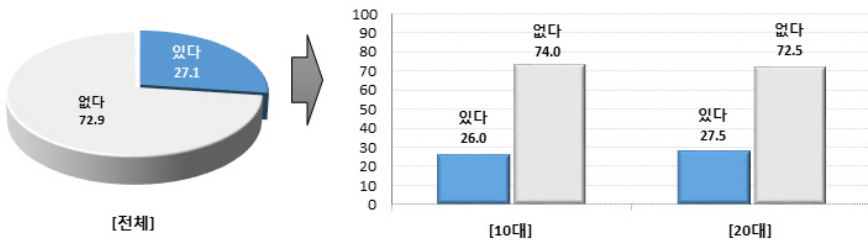


그림 III-49.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 III-98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93(27.1)	250(72.9)	-
10대	96	25(26.0)	71(74.0)	.078
20대	247	68(27.5)	179(72.5)	(.781)

*P<.05, **P<.01, ***P<.001

경험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31.7%), 전라권(36.9%)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99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93(27.1)	250(72.9)	-
성별	남자	166	47(28.3)	119(71.7)	.234 (.628)
	여자	177	46(26.0)	131(74.0)	
학력별	고졸	163	45(27.6)	118(72.4)	.050 (.975)
	대졸	172	46(26.7)	126(73.3)	
	대학원이상	8	2(25.0)	6(7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9	2(22.2)	7(77.8)	3.521 (.172)
	비정규직 취업	167	53(31.7)	114(68.3)	
	정규직 취업	167	38(22.8)	129(77.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7(33.0)	75(67.0)	1.624 (.444)
	한시적노동	49	13(26.5)	36(73.5)	
	비전형노동	6	3(50.0)	3(5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0	-	-	-
	시간제노동	9	2(22.2)	7(77.8)	
거주 지역별	수도권	65	15(23.1)	50(76.9)	4.458 (.348)
	충청권	71	19(26.8)	52(73.2)	
	경상권	75	17(22.7)	58(77.3)	
	전라권	65	24(36.9)	41(63.1)	
	강원/제주권	67	18(26.9)	49(73.1)	

*P<.05, **P<.01, ***P<.001

나.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23.6%, ‘없다’는 응답이 76.4%로, 10명 중 2명가량이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5.9%로 10대(17.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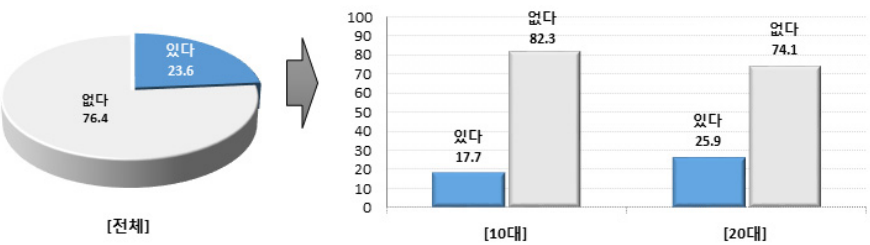


그림 III-50.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표 III-100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81(23.6)	262(76.4)	-
10대	96	17(17.7)	79(82.3)	2.579
20대	247	64(25.9)	183(74.1)	(.108)

*P<.05, **P<.01, ***P<.001

경험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101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81(23.6)	262(76.4)	-
성별	남자	166	44(26.5)	122(73.5)	1.490 (.222)
	여자	177	37(20.9)	140(79.1)	
학력별	고졸	163	35(21.5)	128(78.5)	1.453 (.484)
	대졸	172	43(25.0)	129(75.0)	
	대학원이상	8	3(37.5)	5(6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9	3(33.3)	6(66.7)	.749 (.687)
	비정규직 취업	167	41(24.6)	126(75.4)	
	정규직 취업	167	37(22.2)	130(77.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8(25.0)	84(75.0)	2.564 (.277)
	한시적노동	49	10(20.4)	39(79.6)	
	비전형노동	6	3(50.0)	3(5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0	-	-	-
	시간제노동	9	3(33.3)	6(66.7)	
거주 지역별	수도권	65	15(23.1)	50(76.9)	2.933 (.569)
	충청권	71	17(23.9)	54(76.1)	
	경상권	75	14(18.7)	61(81.3)	
	전라권	65	20(30.8)	45(69.2)	
	강원/제주권	67	15(22.4)	52(77.6)	

*P<.05, **P<.01, ***P<.0011

다.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30.6%, ‘없다’는 응답이 69.4%로, 10명 중 3명가량이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4.0%로 10대(21.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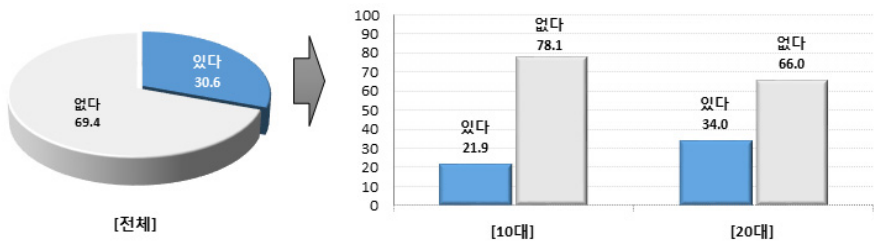


그림 Ⅲ-51.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표 Ⅲ-102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105(30.6)	238(69.4)	—
10대	96	21(21.9)	75(78.1)	4.791*
20대	247	84(34.0)	163(66.0)	(.029)

*P<.05, **P<.01, ***P<.001

경험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전라권(40.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03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105(30.6)	238(69.4)	-
성별	남자	166	47(28.3)	119(71.7)	.800 (.371)
	여자	177	58(32.8)	119(67.2)	
학력별	고졸	163	52(31.9)	111(68.1)	.321 (.852)
	대졸	172	51(29.7)	121(70.3)	
	대학원이상	8	2(25.0)	6(7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9	4(44.4)	5(55.6)	2.538 (.281)
	비정규직 취업	167	56(33.5)	111(66.5)	
	정규직 취업	167	45(26.9)	122(73.1)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1(36.6)	71(63.4)	1.553 (.460)
	한시적노동	49	13(26.5)	36(73.5)	
	비전형노동	6	2(33.3)	4(6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0	-	-	-
	시간제노동	9	4(44.4)	5(55.6)	
거주 지역별	수도권	65	14(21.5)	51(78.5)	6.924 (.410)
	충청권	71	25(35.2)	46(64.8)	
	경상권	75	19(25.3)	56(74.7)	
	전라권	65	26(40.0)	39(60.0)	
	강원/제주권	67	21(31.3)	46(68.7)	

*P<.05, **P<.01, ***P<.0011

라.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35.3%, ‘없다’는 응답이 64.7%로, 10명 중 4명가량이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7%로 10대(29.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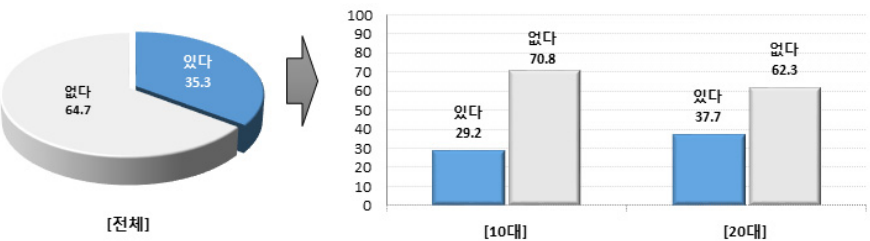


그림 III-52.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표 III-104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121(35.3)	222(64.7)	-
10대	96	28(29.2)	68(70.8)	2.180
20대	247	93(37.7)	154(62.3)	(.140)

*P<.05, **P<.01, ***P<.001

경험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43.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상태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5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121(35.3)	222(64.7)	-
성별	남자	166	57(34.3)	109(65.7)	.124 (.724)
	여자	177	64(36.2)	113(63.8)	
학력별	고졸	163	61(37.4)	102(62.6)	.690 (.708)
	대졸	172	57(33.1)	115(66.9)	
	대학원이상	8	3(37.5)	5(6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9	2(22.2)	7(77.8)	10.249** (.006)
	비정규직 취업	167	73(43.7)	94(56.3)	
	정규직 취업	167	46(27.5)	121(72.5)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9(43.8)	63(56.3)	1.452 (.484)
	한시적노동	49	20(40.8)	29(59.2)	
	비전형노동	6	4(66.7)	2(33.3)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0	-	-	-
	시간제노동	9	2(22.2)	7(77.8)	
거주 지역별	수도권	65	16(24.6)	49(75.4)	5.224 (.265)
	충청권	71	27(38.0)	44(62.0)	
	경상권	75	26(34.7)	49(65.3)	
	전라권	65	28(43.1)	37(56.9)	
	강원/제주권	67	24(35.8)	43(64.2)	

*P<.05, **P<.01, ***P<.001

마.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45.8%, ‘없다’는 응답이 54.2%로, 10명 중 5명가량이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7.8%로 10대(40.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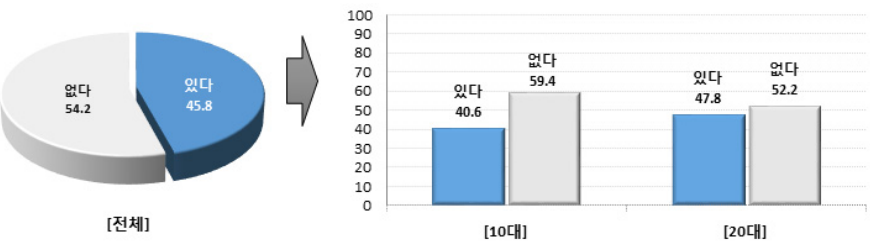


그림 III-53.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표 III-106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157(45.8)	186(54.2)	-
10대	96	39(40.6)	57(59.4)	1.423
20대	247	118(47.8)	129(52.2)	(.233)

*P<.05, **P<.01, ***P<.001

경험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52.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상태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7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157(45.8)	186(54.2)	-
성별	남자	166	69(41.6)	97(58.4)	2.293 (.130)
	여자	177	88(49.7)	89(50.3)	
학력별	고졸	163	74(45.4)	89(54.6)	.268 (.875)
	대졸	172	80(46.5)	92(53.5)	
	대학원이상	8	3(37.5)	5(6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9	1(11.1)	8(88.9)	9.299* (.010)
	비정규직 취업	167	88(52.7)	79(47.3)	
	정규직 취업	167	68(40.7)	99(59.3)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61(54.5)	51(45.5)	1.262 (.532)
	한시적노동	49	23(46.9)	26(53.1)	
	비전형노동	6	4(66.7)	2(33.3)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0	-	-	-
	시간제노동	9	1(11.1)	8(88.9)	
거주 지역별	수도권	65	26(40.0)	39(60.0)	2.857 (.582)
	충청권	71	35(49.3)	36(50.7)	
	경상권	75	38(50.7)	37(49.3)	
	전라권	65	31(47.7)	34(52.3)	
	강원/제주권	67	27(40.3)	40(59.7)	

*P<.05, **P<.01, ***P<.001

바.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20.7%, ‘없다’는 응답이 79.3%로, 10명 중 2명가량이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21.9%) 및 20대(20.2%) 응답이 20%대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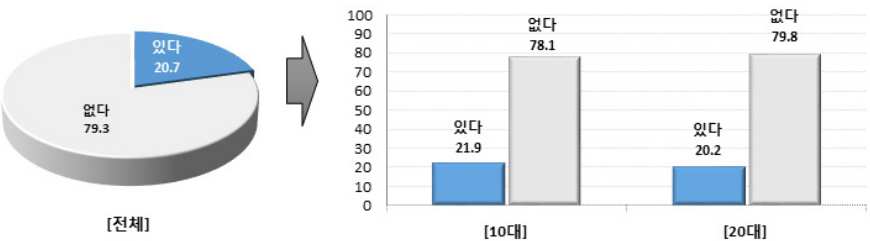


그림 III -54.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표 III -108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71(20.7)	272(79.3)	-
10대	96	21(21.9)	75(78.1)	.112
20대	247	50(20.2)	197(79.8)	(.738)

*P<.05, **P<.01, ***P<.001

경험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09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71(20.7)	272(79.3)	-
성별	남자	166	35(21.1)	131(78.9)	.029 (.865)
	여자	177	36(20.3)	141(79.7)	
학력별	고졸	163	36(22.1)	127(77.9)	.610 (.737)
	대졸	172	34(19.8)	138(80.2)	
	대학원이상	8	1(12.5)	7(87.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9	1(11.1)	8(88.9)	2.342 (.310)
	비정규직 취업	167	40(24.0)	127(76.0)	
	정규직 취업	167	30(18.0)	137(82.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1(27.7)	81(72.3)	3.657 (.161)
	한시적노동	49	7(14.3)	42(85.7)	
	비전형노동	6	2(33.3)	4(6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0	-	-	-
	시간제노동	9	1(11.1)	8(88.9)	
거주 지역별	수도권	65	13(20.0)	52(80.0)	1.780 (.776)
	충청권	71	13(18.3)	58(81.7)	
	경상권	75	16(21.3)	59(78.7)	
	전라권	65	17(26.2)	48(73.8)	
	강원/제주권	67	12(17.9)	55(82.1)	

*P<.05, **P<.01, ***P<.001

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44.0%, ‘없다’는 응답이 56.0%로, 10명 중 4명가량이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7.0%로 10대(36.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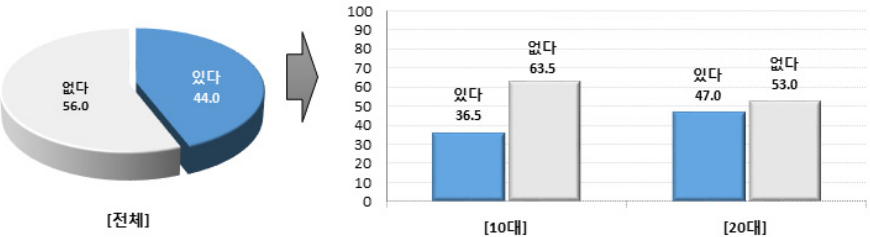


그림 Ⅲ-55.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표 Ⅲ-110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151(44.0)	192(56.0)	-
10대	96	35(36.5)	61(63.5)	3.096
20대	247	116(47.0)	131(53.0)	(.078)

*P<.05, **P<.01, ***P<.001

경험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11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151(44.0)	192(56.0)	-
성별	남자	166	74(44.6)	92(55.4)	.040 (.841)
	여자	177	77(43.5)	100(56.5)	
학력별	고졸	163	69(42.3)	94(57.7)	.581 (.748)
	대졸	172	79(45.9)	93(54.1)	
	대학원이상	8	3(37.5)	5(6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9	3(33.3)	6(66.7)	2.810 (.245)
	비정규직 취업	167	81(48.5)	86(51.5)	
	정규직 취업	167	67(40.1)	100(59.9)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56(50.0)	56(50.0)	1.518 (.468)
	한시적노동	49	21(42.9)	28(57.1)	
	비전형노동	6	4(66.7)	2(33.3)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0	-	-	-
	시간제노동	9	3(33.3)	6(66.7)	
거주 지역별	수도권	65	32(49.2)	33(50.8)	2.879 (.578)
	충청권	71	31(43.7)	40(56.3)	
	경상권	75	31(41.3)	44(58.7)	
	전라권	65	32(49.2)	33(50.8)	
	강원/제주권	67	25(37.3)	42(62.7)	

*P<.05, **P<.01, ***P<.001

아.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36.4%, ‘없다’는 응답이 63.6%로, 10명 중 4명가량이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2%로 10대(34.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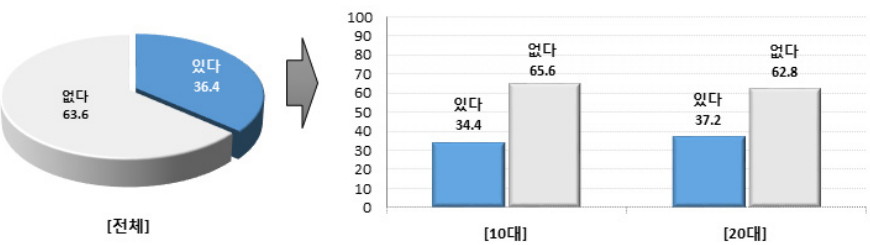


그림 Ⅲ-56.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표 Ⅲ-112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125(36.4)	218(63.6)	—
10대	96	33(34.4)	63(65.6)	.246
20대	247	92(37.2)	155(62.8)	(.620)

*P<.05, **P<.01, ***P<.001

경험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45.5%),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비전형노동(83.3%)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상태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3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125(36.4)	218(63.6)	-
성별	남자	166	62(37.3)	104(62.7)	.114 (.736)
	여자	177	63(35.6)	114(64.4)	
학력별	고졸	163	67(41.1)	96(58.9)	3.014 (.222)
	대졸	172	55(32.0)	117(68.0)	
	대학원이상	8	3(37.5)	5(6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9	2(22.2)	7(77.8)	11.678** (.003)
	비정규직 취업	167	76(45.5)	91(54.5)	
	정규직 취업	167	47(28.1)	120(71.9)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51(45.5)	61(54.5)	3.897 (.143)
	한시적노동	49	20(40.8)	29(59.2)	
	비전형노동	6	5(83.3)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0	-	-	-
	시간제노동	9	2(22.2)	7(77.8)	
거주 지역별	수도권	65	23(35.4)	42(64.6)	1.182 (.881)
	충청권	71	29(40.8)	42(59.2)	
	경상권	75	25(33.3)	50(66.7)	
	전라권	65	25(38.5)	40(61.5)	
	강원/제주권	67	23(34.3)	44(65.7)	

*P<.05, **P<.01, ***P<.001

자.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해준 경우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해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17.8%, ‘없다’는 응답이 82.2%로, 10명 중 2명가량이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9.8%로 20대(17.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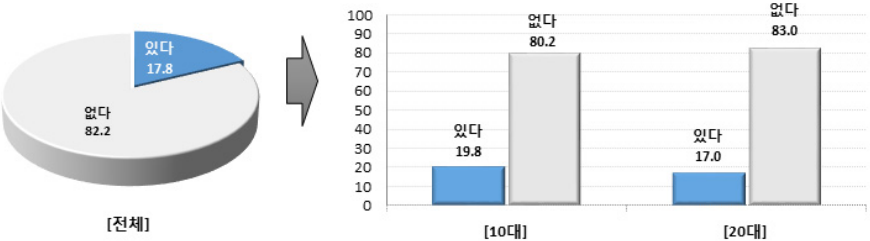


그림 Ⅲ-57. 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해준 경우

표 Ⅲ-114 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해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61(17.8)	282(82.2)	-
10대	96	19(19.8)	77(80.2)	.367
20대	247	42(17.0)	205(83.0)	(.544)

*P<.05, **P<.01, ***P<.001

경험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22.7%),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21.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5 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해준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61(17.8)	282(82.2)	-
성별	남자	166	33(19.9)	133(80.1)	.966 (.326)
	여자	177	28(15.8)	149(84.2)	
학력별	고졸	163	37(22.7)	126(77.3)	6.150* (.046)
	대졸	172	24(14.0)	148(86.0)	
	대학원이상	8	0(.0)	8(10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9	1(11.1)	8(88.9)	3.230 (.199)
	비정규직 취업	167	36(21.6)	131(78.4)	
	정규직 취업	167	24(14.4)	143(85.6)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2(19.6)	90(80.4)	.984 (.611)
	한시적노동	49	12(24.5)	37(75.5)	
	비전형노동	6	2(33.3)	4(6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0	-	-	-
	시간제노동	9	1(11.1)	8(88.9)	
거주 지역별	수도권	65	13(20.0)	52(80.0)	1.599 (.809)
	충청권	71	11(15.5)	60(84.5)	
	경상권	75	11(14.7)	64(85.3)	
	전라권	65	14(21.5)	51(78.5)	
	강원/제주권	67	12(17.9)	55(82.1)	

*P<.05, **P<.01, ***P<.001

차.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20.4%, ‘없다’는 응답이 79.6%로, 10명 중 2명가량이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21.9%로 20대(19.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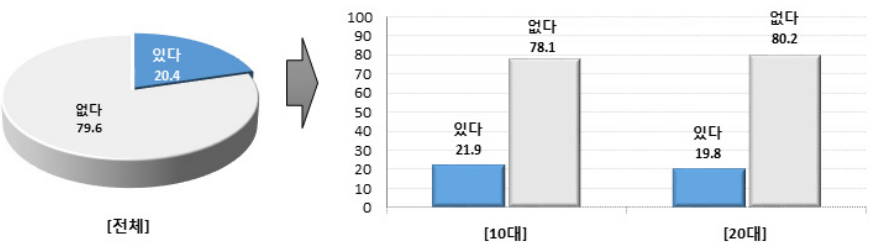


그림 III-58.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표 III-116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70(20.4)	273(79.6)	-
10대	96	21(21.9)	75(78.1)	.177
20대	247	49(19.8)	198(80.2)	(.674)

*P<.05, **P<.01, ***P<.001

경험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17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70(20.4)	273(79.6)	-
성별	남자	166	35(21.1)	131(78.9)	.091 (.763)
	여자	177	35(19.8)	142(80.2)	
학력별	고졸	163	34(20.9)	129(79.1)	1.617 (.445)
	대졸	172	33(19.2)	139(80.8)	
	대학원이상	8	3(37.5)	5(6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9	2(22.2)	7(77.8)	1.198 (.549)
	비정규직 취업	167	38(22.8)	129(77.2)	
	정규직 취업	167	30(18.0)	137(82.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7(24.1)	85(75.9)	.397 (.820)
	한시적노동	49	10(20.4)	39(79.6)	
	비전형노동	6	1(16.7)	5(83.3)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0	-	-	-
	시간제노동	9	2(22.2)	7(77.8)	
거주 지역별	수도권	65	14(21.5)	51(78.5)	5.702 (.223)
	충청권	71	16(22.5)	55(77.5)	
	경상권	75	16(21.3)	59(78.7)	
	전라권	65	17(26.2)	48(73.8)	
	강원/제주권	67	7(10.4)	60(89.6)	

*P<.05, **P<.01, ***P<.001

카.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22.4%, ‘없다’는 응답이 77.6%로, 10명 중 2명가량이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26.0%로 20대(21.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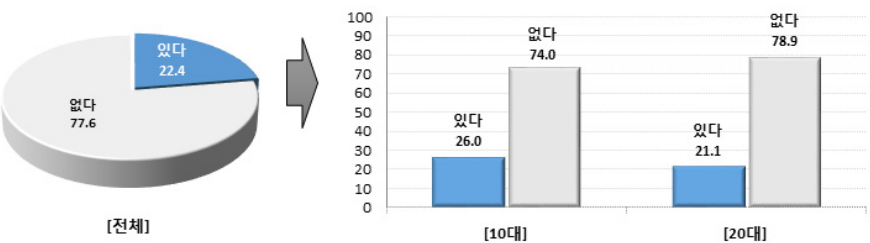


그림 Ⅲ-59.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표 Ⅲ-118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77(22.4)	266(77.6)	-
10대	96	25(26.0)	71(74.0)	.988
20대	247	52(21.1)	195(78.9)	(.320)

*P<.05, **P<.01, ***P<.001

경험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29.3%), 전라권(36.9%)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상태, 거주지역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9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343	77(22.4)	266(77.6)	-
성별	남자	166	40(24.1)	126(75.9)	.501 (.479)
	여자	177	37(20.9)	140(79.1)	
학력별	고졸	163	39(23.9)	124(76.1)	.462 (.794)
	대졸	172	36(20.9)	136(79.1)	
	대학원이상	8	2(25.0)	6(7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9	1(11.1)	8(88.9)	9.006* (.011)
	비정규직 취업	167	49(29.3)	118(70.7)	
	정규직 취업	167	27(16.2)	140(83.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7(33.0)	75(67.0)	2.325 (.313)
	한시적노동	49	11(22.4)	38(77.6)	
	비전형노동	6	1(16.7)	5(83.3)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0	0(.0)	0(.0)	-
	시간제노동	9	1(11.1)	8(88.9)	
거주 지역별	수도권	65	14(21.5)	51(78.5)	10.719* (.030)
	충청권	71	15(21.1)	56(78.9)	
	경상권	75	14(18.7)	61(81.3)	
	전라권	65	24(36.9)	41(63.1)	
	강원/제주권	67	10(14.9)	57(85.1)	

*P<.05, **P<.01, ***P<.001

(3) 노동권 관련 교육·정보 경험

가. 학교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노동권 관련하여 학교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조금 있다’(54.8%)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전혀 없다’(28.8%), ‘많이 있다’(16.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및 20대 모두 조금 있다 응답이 각 54.8%, 54.8%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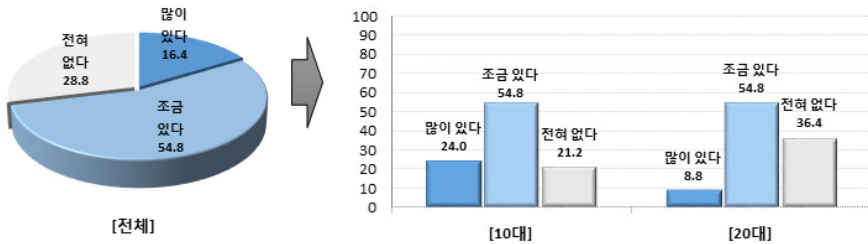


그림 III-60. 학교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표 III-120 학교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500	82(16.4)	274(54.8)	144(28.8)	-
10대	250	60(24.0)	137(54.8)	53(21.2)	2.750
20대	250	22(8.8)	137(54.8)	91(36.4)	(.098)

*P<.05, **P<.01, ***P<.001

많이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20.4%), 현재 취업상태가 미취업/구직중(25.9%)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별, 현재 취업상태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1 학교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82(16.4)	274(54.8)	144(28.8)	-
성별	남자	250	45(18.0)	134(53.6)	71(28.4)	.056 (.831)
	여자	250	37(14.8)	140(56.0)	73(29.2)	
학력별	고졸	313	64(20.4)	179(57.2)	70(22.4)	10.955*** (.000)
	대졸	179	18(10.1)	89(49.7)	72(40.2)	
	대학원이상	8	0(.0)	6(75.0)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3(25.9)	90(54.2)	33(19.9)	10.224*** (.000)
	비정규직 취업	167	23(13.8)	89(53.3)	55(32.9)	
	정규직 취업	167	16(9.6)	95(56.9)	56(33.5)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4(12.5)	62(55.4)	36(32.1)	.011 (.989)
	한시적노동	49	7(14.3)	26(53.1)	16(32.7)	
	비전형노동	6	2(33.3)	1(16.7)	3(5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2(26.8)	86(54.8)	29(18.5)	.440 (.508)
	시간제노동	9	1(11.1)	4(44.4)	4(44.4)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3(13.0)	67(67.0)	20(20.0)	1.140 (.337)
	충청권	100	14(14.0)	58(58.0)	28(28.0)	
	경상권	100	15(15.0)	47(47.0)	38(38.0)	
	전라권	100	20(20.0)	55(55.0)	25(25.0)	
	강원/제주권	100	20(20.0)	47(47.0)	33(33.0)	

*P<.05, **P<.01, ***P<.001

나. 학교 이외의 곳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노동권 관련하여 학교 이외의 곳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전혀 없다’(51.2%)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조금 있다’(38.4%), ‘많이 있다’(10.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및 20대 모두 전혀 없다 응답이 각 51.6%, 50.8%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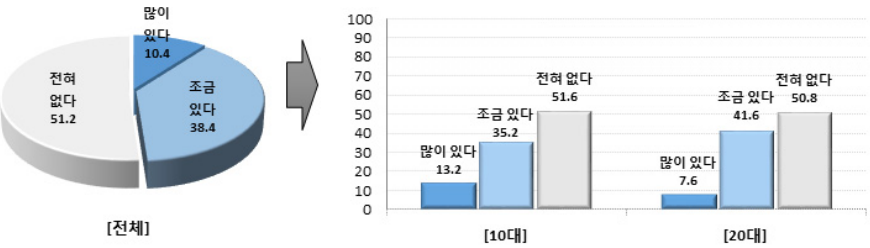


그림 III-61. 학교 이외의 곳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표 III-122 학교 이외의 곳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χ^2 (유의도)
전체	500	52(10.4)	192(38.4)	256(51.2)	-
10대	250	33(13.2)	88(35.2)	129(51.6)	5.323*
20대	250	19(7.6)	104(41.6)	127(50.8)	(.021)

*P<.05, **P<.01, ***P<.001

많이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한시적노동(14.3%), 층청권(17.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23 학교 이외의 곳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52(10.4)	192(38.4)	256(51.2)	-
성별	남자	250	30(12.0)	105(42.0)	115(46.0)	.377 (.539)
	여자	250	22(8.8)	87(34.8)	141(56.4)	
학력별	고졸	313	37(11.8)	118(37.7)	158(50.5)	.774 (.462)
	대졸	179	15(8.4)	68(38.0)	96(53.6)	
	대학원이상	8	0(.0)	6(75.0)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1(12.7)	56(33.7)	89(53.6)	.120 (.887)
	비정규직 취업	167	14(8.4)	74(44.3)	79(47.3)	
	정규직 취업	167	17(10.2)	62(37.1)	88(52.7)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7(6.3)	49(43.8)	56(50.0)	2.168 (.118)
	한시적노동	49	7(14.3)	23(46.9)	19(38.8)	
	비전형노동	6	0(.0)	2(33.3)	4(6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1(13.4)	52(33.1)	84(53.5)	1.967 (.163)
	시간제노동	9	0(.0)	4(44.4)	5(55.6)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7(7.0)	46(46.0)	47(47.0)	1.149 (.333)
	충청권	100	17(17.0)	35(35.0)	48(48.0)	
	경상권	100	9(9.0)	37(37.0)	54(54.0)	
	전라권	100	12(12.0)	38(38.0)	50(50.0)	
	강원/제주권	100	7(7.0)	36(36.0)	57(57.0)	

*P<.05, **P<.01, ***P<.001

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 노동권 관련 정보 접한 경험

노동권 관련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 노동권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조금 있다’(54.8%)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전혀 없다’(25.6%), ‘많이 있다’(19.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및 20대 모두 조금 있다 응답이 각 51.6%, 58.0%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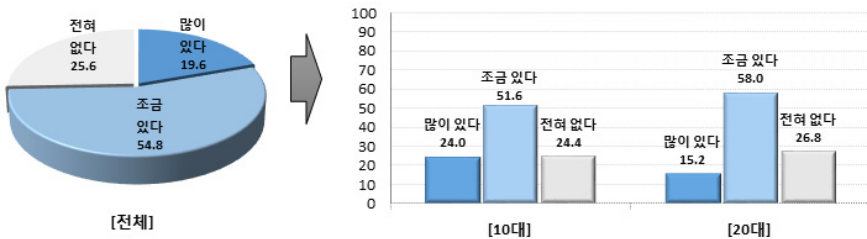


그림 III-62.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 노동권 관련 정보 접한 경험

표 III-124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 노동권 관련 정보 접한 경험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500	98(19.6)	274(54.8)	128(25.6)	-
10대	250	60(24.0)	129(51.6)	61(24.4)	.087
20대	250	38(15.2)	145(58.0)	67(26.8)	(.769)

*P<.05, **P<.01, ***P<.001

많이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고졸 22.0%), 현재 취업상태가 미취업/구직중(24.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5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 노동권 관련 정보 접한 경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98(19.6)	274(54.8)	128(25.6)	-
성별	남자	250	49(19.6)	128(51.2)	73(29.2)	5.604* (.018)
	여자	250	49(19.6)	146(58.4)	55(22.0)	
학력별	고졸	313	69(22.0)	163(52.1)	81(25.9)	.522 (.594)
	대졸	179	28(15.6)	105(58.7)	46(25.7)	
	대학원이상	8	1(12.5)	6(75.0)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1(24.7)	85(51.2)	40(24.1)	2.693 (.069)
	비정규직 취업	167	32(19.2)	98(58.7)	37(22.2)	
	정규직 취업	167	25(15.0)	91(54.5)	51(30.5)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8(16.1)	69(61.6)	25(22.3)	.767 (.466)
	한시적노동	49	13(26.5)	26(53.1)	10(20.4)	
	비전형노동	6	1(16.7)	3(50.0)	2(33.3)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9(24.8)	80(51.0)	38(24.2)	.083 (.774)
	시간제노동	9	2(22.2)	5(55.6)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7(17.0)	54(54.0)	29(29.0)	1.114 (.349)
	충청권	100	25(25.0)	51(51.0)	24(24.0)	
	경상권	100	14(14.0)	57(57.0)	29(29.0)	
	전라권	100	17(17.0)	63(63.0)	20(20.0)	
	강원/제주권	100	25(25.0)	49(49.0)	26(26.0)	

*P<.05, **P<.01, ***P<.001

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경험

노동권 관련하여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조금 있다’(43.6%), ‘전혀 없다’(40.2%), ‘많이 있다’(16.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는 전혀 없다 응답이 41.6%, 20대는 조금 있다 응답이 46.4%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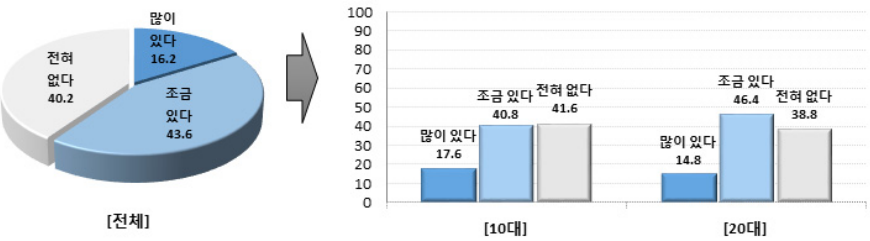


그림 III-63.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경험

표 III-126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경험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χ^2 (유의도)
전체	500	81(16.2)	218(43.6)	201(40.2)	-
10대	250	44(17.6)	102(40.8)	104(41.6)	1.701
20대	250	37(14.8)	116(46.4)	97(38.8)	(.193)

*P<.05, **P<.01, ***P<.001

많이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한시적노동(26.5%), 충청권(23.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7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본 경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81(16.2)	218(43.6)	201(40.2)	-
성별	남자	250	44(17.6)	103(41.2)	103(41.2)	1.274 (.260)
	여자	250	37(14.8)	115(46.0)	98(39.2)	
학력별	고졸	313	52(16.6)	131(41.9)	130(41.5)	.075 (.928)
	대졸	179	29(16.2)	81(45.3)	69(38.5)	
	대학원이상	8	0(.0)	6(75.0)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0(18.1)	61(36.7)	75(45.2)	.310 (.734)
	비정규직 취업	167	27(16.2)	78(46.7)	62(37.1)	
	정규직 취업	167	24(14.4)	79(47.3)	64(38.3)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4(12.5)	52(46.4)	46(41.1)	3.461* (.034)
	한시적노동	49	13(26.5)	23(46.9)	13(26.5)	
	비전형노동	6	0(.0)	3(50.0)	3(5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9(18.5)	57(36.3)	71(45.2)	.330 (.567)
	시간제노동	9	1(11.1)	4(44.4)	4(44.4)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4(14.0)	50(50.0)	36(36.0)	.520 (.721)
	충청권	100	23(23.0)	38(38.0)	39(39.0)	
	경상권	100	15(15.0)	43(43.0)	42(42.0)	
	전라권	100	14(14.0)	43(43.0)	43(43.0)	
	강원/제주권	100	15(15.0)	44(44.0)	41(41.0)	

*P<.05, **P<.01, ***P<.001

마.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노동권 관련하여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전혀 없다’(55.8%)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조금 있다’(31.6%), ‘많이 있다’(12.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및 20대 모두 전혀 없다 응답이 각 54.8%, 56.8%로 과반 이상이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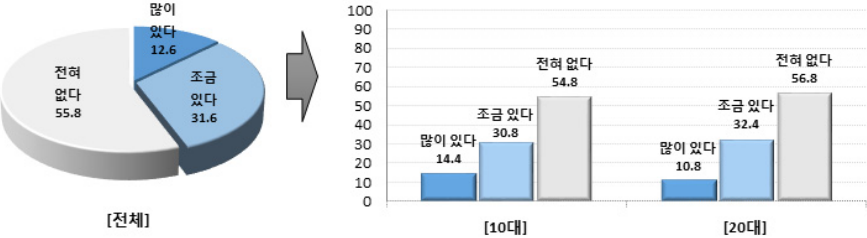


그림 Ⅲ-64.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표 Ⅲ-128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X ² (유의도)
전체	500	63(12.6)	158(31.6)	279(55.8)	-
10대	250	36(14.4)	77(30.8)	137(54.8)	2.071
20대	250	27(10.8)	81(32.4)	142(56.8)	(.151)

*P<.05, **P<.01, ***P<.001

많이 있다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15.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한시적노동(16.3%)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9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63(12.6)	158(31.6)	279(55.8)	-
성별	남자	250	35(14.0)	85(34.0)	130(52.0)	1.127 (.289)
	여자	250	28(11.2)	73(29.2)	149(59.6)	
학력별	고졸	313	47(15.0)	100(31.9)	166(53.0)	3.590* (.028)
	대졸	179	15(8.4)	53(29.6)	111(62.0)	
	대학원이상	8	1(12.5)	5(62.5)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2(13.3)	44(26.5)	100(60.2)	.405 (.667)
	비정규직 취업	167	17(10.2)	62(37.1)	88(52.7)	
	정규직 취업	167	24(14.4)	52(31.1)	91(54.5)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9(8.0)	43(38.4)	60(53.6)	1.031 (.359)
	한시적노동	49	8(16.3)	17(34.7)	24(49.0)	
	비전형노동	6	0(.0)	2(33.3)	4(6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0(12.7)	43(27.4)	94(59.9)	.926 (.337)
	시간제노동	9	2(22.2)	1(11.1)	6(66.7)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7(7.0)	38(38.0)	55(55.0)	1.423 (.225)
	충청권	100	17(17.0)	29(29.0)	54(54.0)	
	경상권	100	10(10.0)	26(26.0)	64(64.0)	
	전라권	100	17(17.0)	33(33.0)	50(50.0)	
	강원/제주권	100	12(12.0)	32(32.0)	56(56.0)	

*P<.05, **P<.01, ***P<.001

(4) 노동관련 피해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인식

노동관련 피해상황에서 대처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노동부나 노동관서에 도움 요청’ 응답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음’ 및 ‘그냥 무시하고 넘어감’ 응답은 각각 8.0%, 4.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는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28.8%) 응답에서, 20대는 고용노동부나 노동관서에 도움 요청(47.2%) 응답에서 높게 응답하였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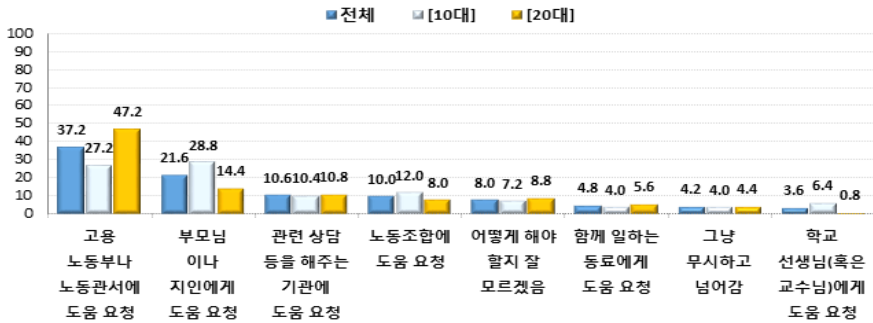


그림 III-65.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표 III-130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구분	사례 수 [명]	고용노동부/노동관서에 도움 요청	부모님이나 지인 도움 요청	관련 상담 등을 해주는 기관에 도움 요청	노동조합에 도움 요청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음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도움 요청	그냥 무시하고 넘어감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 요청	X ² (유의도)
전체	500	188(37.2)	108(21.6)	53(10.6)	50(10.0)	40(8.0)	24(4.8)	21(4.2)	18(3.6)	-
10대	250	68(27.2)	72(28.8)	26(10.4)	30(12.0)	18(7.2)	10(4.0)	10(4.0)	16(6.4)	39.463***
20대	250	118(47.2)	36(14.4)	27(10.8)	20(8.0)	22(8.8)	14(5.6)	11(4.4)	2(0.8)	(.000)

*P<.05, **P<.01, ***P<.001

고용노동부나 노동관서에 도움 요청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41.2%), 현재 취업상태가 정규직 취업(43.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1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고용 노동부 /노동 관서에 도움 요청	부모님 이나 지인 도움 요청	관련 상담 등을 해주는 기관에 도움 요청	노동 조합에 도움 요청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 겠음	함께 일하는 동료 에게 도움 요청	그냥 무시 하고 넘어감	학교 선생님 에게 도움 요청	X ² (유의 도)
전체		(500)	37.2	21.6	10.6	10.0	8.0	4.8	4.2	3.6	-
성별	남자	(250)	33.2	20.4	9.2	14.0	7.6	5.2	5.2	5.2	16.421*
	여자	(250)	41.2	22.8	12.0	6.0	8.4	4.4	3.2	2.0	(.022)
학력별	고졸	(313)	33.9	24.6	8.9	10.2	8.0	4.5	4.8	5.1	16.806
	대졸	(179)	41.9	16.8	13.4	9.5	8.4	5.6	3.4	1.1	(.267)
	대학원이상	(8)	62.5	12.5	12.5	12.5	0.0	0.0	0.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9.5	27.1	12.7	13.3	5.4	3.0	3.6	5.4	19.524
	비정규직 취업	(167)	38.3	21.6	10.2	7.8	9.6	5.4	4.8	2.4	(.146)
	정규직 취업	(167)	43.7	16.2	9.0	9.0	9.0	6.0	4.2	3.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6.6	25.0	10.7	6.3	8.0	6.3	5.4	1.8	21.345
	한시적노동	(49)	46.9	16.3	6.1	10.2	10.2	4.1	4.1	2.0	(.093)
	비전형노동	(6)	0.0	0.0	33.3	16.7	33.3	0.0	0.0	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8.7	27.4	12.7	12.7	5.7	3.2	3.8	5.7	3.060
	시간제노동	(9)	44.4	22.2	11.1	22.2	0.0	0.0	0.0	0.0	(.879)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41.0	23.0	8.0	8.0	9.0	6.0	3.0	2.0	29.539 (.386)
	충청권	(100)	38.0	26.0	11.0	10.0	6.0	0.0	3.0	6.0	
	경상권	(100)	37.0	14.0	14.0	6.0	11.0	10.0	4.0	4.0	
	전라권	(100)	31.0	22.0	10.0	15.0	8.0	5.0	6.0	3.0	
	강원/제주권	(100)	39.0	23.0	10.0	11.0	6.0	3.0	5.0	3.0	

*P<.05, **P<.01, ***P<.001

3)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도움정도

(1) 중앙부처의 정책에 대한 이해

가. 여성가족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여성가족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66.6%(전혀: 24.2% + 별로: 42.4%)로 ‘알고 있다’는 응답 33.4%(매우: 7.0% + 대체로: 26.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8.8%로 20대(28.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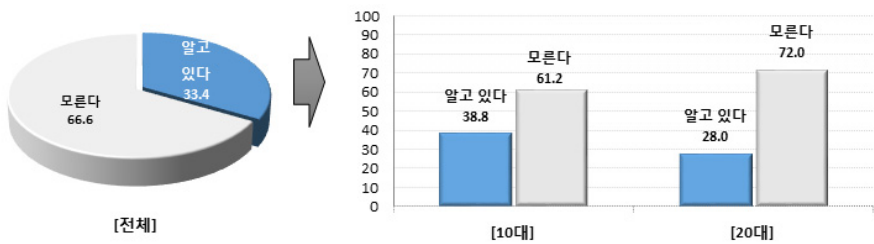


그림 III-66. 여성가족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표 III-132 여성가족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35(7.0)	132(26.4)	212(42.4)	121(24.2)	-
10대	250	22(8.8)	75(30.0)	96(38.4)	57(22.8)	8.769**
20대	250	13(5.2)	57(22.8)	116(46.4)	64(25.6)	(.003)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36.1%)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3 여성가족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35(7.0)	132(26.4)	212(42.4)	121(24.2)	-
성별	남자	250	23(9.2)	55(22.0)	89(35.6)	83(33.2)	8.564** (.004)
	여자	250	12(4.8)	77(30.8)	123(49.2)	38(15.2)	
학력별	고졸	313	25(8.0)	88(28.1)	128(40.9)	72(23.0)	1.325 (.267)
	대졸	179	10(5.6)	41(22.9)	81(45.3)	47(26.3)	
	대학원이상	8	0(0)	3(37.5)	3(37.5)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15(9.0)	48(28.9)	64(38.6)	39(23.5)	.899 (.407)
	비정규직 취업	167	9(5.4)	43(25.7)	77(46.1)	38(22.8)	
	정규직 취업	167	11(6.6)	41(24.6)	71(42.5)	44(26.3)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6(5.4)	27(24.1)	58(51.8)	21(18.8)	.170 (.844)
	한시적노동	49	2(4.1)	16(32.7)	16(32.7)	15(30.6)	
	비전형노동	6	1(16.7)	0(0)	3(50.0)	2(33.3)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14(8.9)	44(28.0)	62(39.5)	37(23.6)	.251 (.617)
	시간제노동	9	1(11.1)	4(44.4)	2(22.2)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3.0)	32(32.0)	49(49.0)	16(16.0)	.869 (.483)
	충청권	100	11(11.0)	23(23.0)	39(39.0)	27(27.0)	
	경상권	100	5(5.0)	21(21.0)	45(45.0)	29(29.0)	
	전라권	100	10(10.0)	28(28.0)	35(35.0)	27(27.0)	
	강원/제주권	100	6(6.0)	28(28.0)	44(44.0)	22(22.0)	

*P<.05, **P<.01, ***P<.001

나. 고용노동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고용노동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50.6%(매우: 11.4% + 대체로: 39.2%), ‘모른다’는 응답이 49.4%(전혀: 10.8% + 별로: 38.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6.0%로 20대(45.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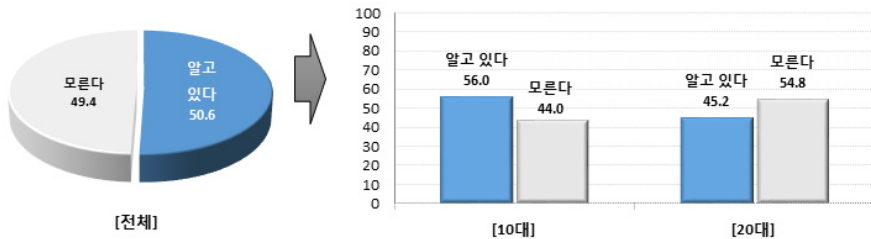


그림 Ⅲ-67. 고용노동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표 Ⅲ-134 고용노동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57(11.4)	196(39.2)	193(38.6)	54(10.8)	-
10대	250	39(15.6)	101(40.4)	85(34.0)	25(10.0)	2.783
20대	250	18(7.2)	95(38.0)	108(43.2)	29(11.6)	(.096)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58.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5 고용노동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57(11.4)	196(39.2)	193(38.6)	54(10.8)	-
성별	남자	250	30(12.0)	96(38.4)	88(35.2)	36(14.4)	5.270* (.022)
	여자	250	27(10.8)	100(40.0)	105(42.0)	18(7.2)	
학력별	고졸	313	42(13.4)	120(38.3)	116(37.1)	35(11.2)	.518 (.596)
	대졸	179	14(7.8)	73(40.8)	75(41.9)	17(9.5)	
	대학원이상	8	1(12.5)	3(37.5)	2(25.0)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5(15.1)	67(40.4)	55(33.1)	19(11.4)	2.149 (.118)
	비정규직 취업	167	16(9.6)	72(43.1)	65(38.9)	14(8.4)	
	정규직 취업	167	16(9.6)	57(34.1)	73(43.7)	21(12.6)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0(8.9)	51(45.5)	46(41.1)	5(4.5)	.762 (.469)
	한시적노동	49	5(10.2)	20(40.8)	16(32.7)	8(16.3)	
	비전형노동	6	1(16.7)	1(16.7)	3(50.0)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3(14.6)	65(41.4)	51(32.5)	18(11.5)	.334 (.564)
	시간제노동	9	2(22.2)	2(22.2)	4(44.4)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8(8.0)	50(50.0)	36(36.0)	6(6.0)	1.061 (.375)
	충청권	100	15(15.0)	39(39.0)	34(34.0)	12(12.0)	
	경상권	100	12(12.0)	31(31.0)	44(44.0)	13(13.0)	
	전라권	100	16(16.0)	34(34.0)	39(39.0)	11(11.0)	
	강원/제주권	100	6(6.0)	42(42.0)	40(40.0)	12(12.0)	

*P<.05, **P<.01, ***P<.001

다. 교육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교육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58.0%(전혀: 15.6% + 별로: 42.4%)로 ‘알고 있다’는 응답 42.0%(매우: 9.2% + 대체로: 3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0.0%로 20대(34.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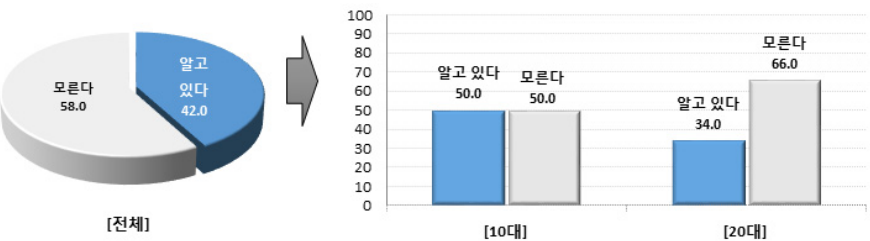


그림 III-68. 교육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표 III-136 교육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46(9.2)	164(32.8)	212(42.4)	78(15.6)	-
10대	250	33(13.2)	92(36.8)	90(36.0)	35(14.0)	11.358**
20대	250	13(5.2)	72(28.8)	122(48.8)	43(17.2)	(.001)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학년이 낮을수록(고졸 45.7%, 전라권(5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상태에 따라 5% 수준에서, 거주지역 별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7 교육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 시행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46(9.2)	164(32.8)	212(42.4)	78(15.6)	-
성별	남자	250	26(10.4)	80(32.0)	98(39.2)	46(18.4)	3.874 (.050)
	여자	250	20(8.0)	84(33.6)	114(45.6)	32(12.8)	
학력별	고졸	313	35(11.2)	108(34.5)	124(39.6)	46(14.7)	2.856 (.058)
	대졸	179	11(6.1)	54(30.2)	84(46.9)	30(16.8)	
	대학원이상	8	0(.0)	2(25.0)	4(50.0)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3(13.9)	54(32.5)	64(38.6)	25(15.1)	3.097* (.046)
	비정규직 취업	167	15(9.0)	56(33.5)	75(44.9)	21(12.6)	
	정규직 취업	167	8(4.8)	54(32.3)	73(43.7)	32(19.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2(10.7)	38(33.9)	51(45.5)	11(9.8)	1.414 (.246)
	한시적노동	49	3(6.1)	15(30.6)	21(42.9)	10(20.4)	
	비전형노동	6	0(.0)	3(50.0)	3(5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1(13.4)	51(32.5)	62(39.5)	23(14.6)	1.065 (.304)
	시간제노동	9	2(22.2)	3(33.3)	2(22.2)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0(10.0)	36(36.0)	46(46.0)	8(8.0)	3.492** (.008)
	충청권	100	10(10.0)	35(35.0)	40(40.0)	15(15.0)	
	경상권	100	5(5.0)	30(30.0)	45(45.0)	20(20.0)	
	전라권	100	15(15.0)	35(35.0)	37(37.0)	13(13.0)	
	강원/제주권	100	6(6.0)	28(28.0)	44(44.0)	22(22.0)	

*P<.05, **P<.01, ***P<.001

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69.4%(전혀: 25.2% + 별로: 44.2%)로 ‘알고 있다’는 응답 30.6%(매우: 5.8% + 대체로: 2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1.6%로 20대(29.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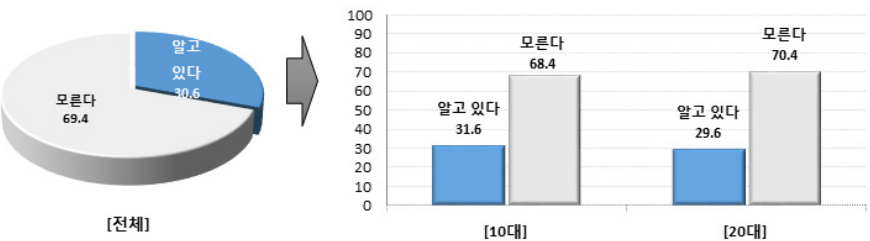


그림 III-69.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표 III-138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29(5.8)	124(24.8)	221(44.2)	126(25.2)	-
10대	250	16(6.4)	63(25.2)	116(46.4)	55(22.0)	.000
20대	250	13(5.2)	61(24.4)	105(42.0)	71(28.4)	(.987)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35.2%)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39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29(5.8)	124(24.8)	221(44.2)	126(25.2)	-
성별	남자	250	14(5.6)	51(20.4)	101(40.4)	84(33.6)	.018 (.892)
	여자	250	15(6.0)	73(29.2)	120(48.0)	42(16.8)	
학력별	고졸	313	20(6.4)	77(24.6)	144(46.0)	72(23.0)	.610 (.544)
	대졸	179	9(5.0)	44(24.6)	74(41.3)	52(29.1)	
	대학원이상	8	0(.0)	3(37.5)	3(37.5)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11(6.6)	36(21.7)	79(47.6)	40(24.1)	.010 (.990)
	비정규직 취업	167	7(4.2)	47(28.1)	72(43.1)	41(24.6)	
	정규직 취업	167	11(6.6)	41(24.6)	70(41.9)	45(26.9)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3.6)	31(27.7)	51(45.5)	26(23.2)	.210 (.811)
	한시적노동	49	2(4.1)	15(30.6)	18(36.7)	14(28.6)	
	비전형노동	6	1(16.7)	1(16.7)	3(50.0)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9(5.7)	35(22.3)	75(47.8)	38(24.2)	2.003 (.159)
	시간제노동	9	2(22.2)	1(11.1)	4(44.4)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7(7.0)	29(29.0)	46(46.0)	18(18.0)	.869 (.482)
	충청권	100	7(7.0)	24(24.0)	39(39.0)	30(30.0)	
	경상권	100	5(5.0)	25(25.0)	40(40.0)	30(30.0)	
	전라권	100	3(3.0)	27(27.0)	45(45.0)	25(25.0)	
	강원/제주권	100	7(7.0)	19(19.0)	51(51.0)	23(23.0)	

*P<.05, **P<.01, ***P<.001

마.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58.6%(전혀: 20.2% + 별로: 38.4%)로 ‘알고 있다’는 응답 41.4%(매우: 8.6% + 대체로: 3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45.6%로 20대(37.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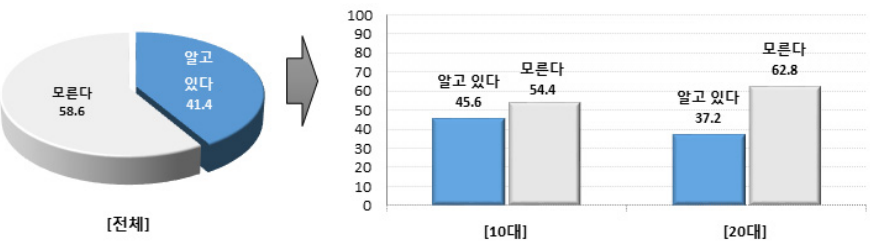


그림 Ⅲ-70.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표 Ⅲ-140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43(8.6)	164(32.8)	192(38.4)	101(20.2)	-
10대	250	33(13.2)	81(32.4)	84(33.6)	52(20.8)	16.021***
20대	250	10(4.0)	83(33.2)	108(43.2)	49(19.6)	(.000)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45.6%), 충청권(52.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1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43(8.6)	164(32.8)	192(38.4)	101(20.2)	-
성별	남자	250	27(10.8)	87(34.8)	83(33.2)	53(21.2)	7.742** (.006)
	여자	250	16(6.4)	77(30.8)	109(43.6)	48(19.2)	
학력별	고졸	313	35(11.2)	103(32.9)	114(36.4)	61(19.5)	2.079 (.126)
	대졸	179	8(4.5)	56(31.3)	77(43.0)	38(21.2)	
	대학원이상	8	0(.0)	5(62.5)	1(12.5)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25(15.1)	47(28.3)	54(32.5)	40(24.1)	1.424 (.242)
	비정규직 취업	167	10(6.0)	64(38.3)	67(40.1)	26(15.6)	
	정규직 취업	167	8(4.8)	53(31.7)	71(42.5)	35(21.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7(6.3)	43(38.4)	48(42.9)	14(12.5)	.361 (.698)
	한시적노동	49	3(6.1)	18(36.7)	17(34.7)	11(22.4)	
	비전형노동	6	0(.0)	3(50.0)	2(33.3)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23(14.6)	43(27.4)	53(33.8)	38(24.2)	.026 (.872)
	시간제노동	9	2(22.2)	4(44.4)	1(11.1)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4(4.0)	38(38.0)	43(43.0)	15(15.0)	1.084 (.364)
	충청권	100	11(11.0)	41(41.0)	26(26.0)	22(22.0)	
	경상권	100	7(7.0)	24(24.0)	48(48.0)	21(21.0)	
	전라권	100	12(12.0)	31(31.0)	37(37.0)	20(20.0)	
	강원/제주권	100	9(9.0)	30(30.0)	38(38.0)	23(23.0)	

*P<.05, **P<.01, ***P<.001

바. 교육부/교육청이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시행

교육부/교육청이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시행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54.4%(전혀: 15.2% + 별로: 39.2%)로 ‘알고 있다’는 응답 45.6%(매우: 13.6% + 대체로: 3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1.2%로 20대(4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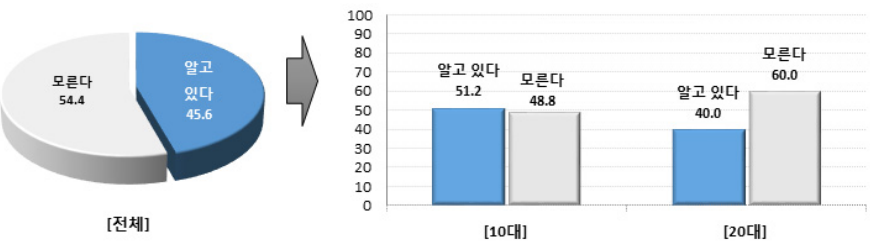


그림 III-71. 교육부/교육청이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시행

표 III-142 교육부/교육청이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시행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68(13.6)	160(32.0)	196(39.2)	76(15.2)	-
10대	250	43(17.2)	85(34.0)	92(36.8)	30(12.0)	1.082
20대	250	25(10.0)	75(30.0)	104(41.6)	46(18.4)	(.299)

*P<.05, **P<.01, ***P<.001

긍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43 교육부/교육청이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시행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잘 알고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F (유의도)
전체		500	68(13.6)	160(32.0)	196(39.2)	76(15.2)	-
성별	남자	250	36(14.4)	83(33.2)	90(36.0)	41(16.4)	1.345 (.247)
	여자	250	32(12.8)	77(30.8)	106(42.4)	35(14.0)	
학력별	고졸	313	46(14.7)	104(33.2)	120(38.3)	43(13.7)	1.575 (.208)
	대졸	179	20(11.2)	54(30.2)	73(40.8)	32(17.9)	
	대학원이상	8	2(25.0)	2(25.0)	3(37.5)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0(18.1)	49(29.5)	65(39.2)	22(13.3)	2.212 (.111)
	비정규직 취업	167	21(12.6)	59(35.3)	65(38.9)	22(13.2)	
	정규직 취업	167	17(10.2)	52(31.1)	66(39.5)	32(19.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14(12.5)	39(34.8)	47(42.0)	12(10.7)	.117 (.890)
	한시적노동	49	7(14.3)	16(32.7)	18(36.7)	8(16.3)	
	비전형노동	6	0(.0)	4(66.7)	0(.0)	2(33.3)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0(19.1)	45(28.7)	62(39.5)	20(12.7)	.671 (.414)
	시간제노동	9	0(.0)	4(44.4)	3(33.3)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3(13.0)	36(36.0)	39(39.0)	12(12.0)	.489 (.743)
	충청권	100	12(12.0)	35(35.0)	40(40.0)	13(13.0)	
	경상권	100	15(15.0)	26(26.0)	43(43.0)	16(16.0)	
	전라권	100	18(18.0)	33(33.0)	29(29.0)	20(20.0)	
	강원/제주권	100	10(10.0)	30(30.0)	45(45.0)	15(15.0)	

*P<.05, **P<.01, ***P<.001

(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역할에 대한 인지와 도움정도

가.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의 인지도 조사 결과, ‘알고 있다’ 응답이 33.4%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는 ‘도움 된다’는 응답이 78.0%로 인지도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는 조사한 결과, 10대(39.6%)가 20대(27.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10대(82.4%)가 20대(73.6%)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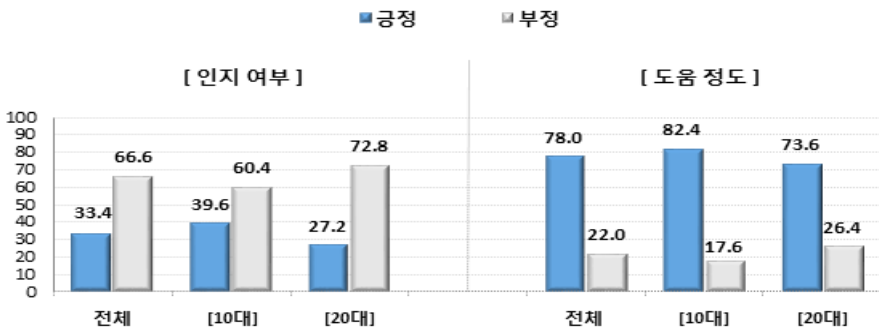


그림 III-72.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표 III-144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구분		사례수 [명]	긍정 (인지, 도움)	부정 (비인지, 비도움)	X ² / F (유의도)
인지 여부	전체	500	167(33.4)	333(66.6)	-
	10대	250	99(39.6)	151(60.4)	8.640** (.003)
	20대	250	68(27.2)	182(72.8)	
도움 정도	전체	500	390(78.0)	110(22.0)	-
	10대	250	206(82.4)	44(17.6)	3.100 (.079)
	20대	250	184(73.6)	66(26.4)	

*P<.05, **P<.01, ***P<.001

인지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37.7%),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40.1%)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별, 현재 취업상태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5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인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모른다	X ² (유의도)
인 지 여 부	전체	500	167(33.4)	333(66.6)	-
	성별	남자	85(34.0)	165(66.0)	.081 (.776)
		여자	82(32.8)	168(67.2)	
	학력별	고졸	118(37.7)	195(62.3)	9.083* (.011)
		대졸	45(25.1)	134(74.9)	
		대학원이상	4(50.0)	4(5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55(33.1)	111(66.9)	6.522* (.038)
		비정규직 취업	67(40.1)	100(59.9)	
		정규직 취업	45(26.9)	122(73.1)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44(39.3)	68(60.7)	.286 (.867)
		한시적노동	20(40.8)	29(59.2)	
		비전형노동	3(50.0)	3(5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52(33.1)	105(66.9)	.000 (.990)
		시간제노동	3(33.3)	6(66.7)	
	거주 지역별	수도권	40(40.0)	60(60.0)	4.729 (.316)
		충청권	29(29.0)	71(71.0)	
		경상권	33(33.0)	67(67.0)	
		전라권	37(37.0)	63(63.0)	
		강원/제주권	28(28.0)	72(72.0)	

*P<.05, **P<.01, ***P<.001

도움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83.2%)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별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6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도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도 움이 될 것 같다	대체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별로 도 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전혀 도 움이 될 것 같지 않다	F (유의도)
도 움 정 도	전체		500	113(22.6)	277(55.4)	87(17.4)	23(4.6)	-
	성별	남자	250	53(21.2)	129(51.6)	49(19.6)	19(7.6)	12.818*** (.000)
		여자	250	60(24.0)	148(59.2)	38(15.2)	4(1.6)	
	학력별	고졸	313	76(24.3)	171(54.6)	55(17.6)	11(3.5)	1.045 (.352)
		대졸	179	35(19.6)	101(56.4)	32(17.9)	11(6.1)	
		대학원이상	8	2(25.0)	5(62.5)	0(0.0)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5(27.1)	88(53.0)	23(13.9)	10(6.0)	.576 (.563)
		비정규직 취업	167	34(20.4)	94(56.3)	33(19.8)	6(3.6)	
		정규직 취업	167	34(20.4)	95(56.9)	31(18.6)	7(4.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1(18.8)	65(58.0)	24(21.4)	2(1.8)	1.025 (.361)
		한시적노동	49	10(20.4)	27(55.1)	8(16.3)	4(8.2)	
		비전형노동	6	3(50.0)	2(33.3)	1(16.7)	0(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5(28.7)	82(52.2)	22(14.0)	8(5.1)	.984 (.323)
		시간제노동	9	0(0.0)	6(66.7)	1(11.1)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8(18.0)	64(64.0)	16(16.0)	2(2.0)	2.100 (.080)
		충청권	100	32(32.0)	49(49.0)	17(17.0)	2(2.0)	
		경상권	100	21(21.0)	59(59.0)	14(14.0)	6(6.0)	
		전라권	100	27(27.0)	49(49.0)	17(17.0)	7(7.0)	
		강원/제주권	100	15(15.0)	56(56.0)	23(23.0)	6(6.0)	

*P<.05, **P<.01, ***P<.001

나.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원의 인지도 조사 결과, ‘알고 있다’ 응답이 24.4%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는 ‘도움 된다’는 응답이 75.6%로 인지도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는 조사한 결과,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는 조사한 결과, 10대(30.4%)가 20대(18.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10대(80.8%)가 20대(70.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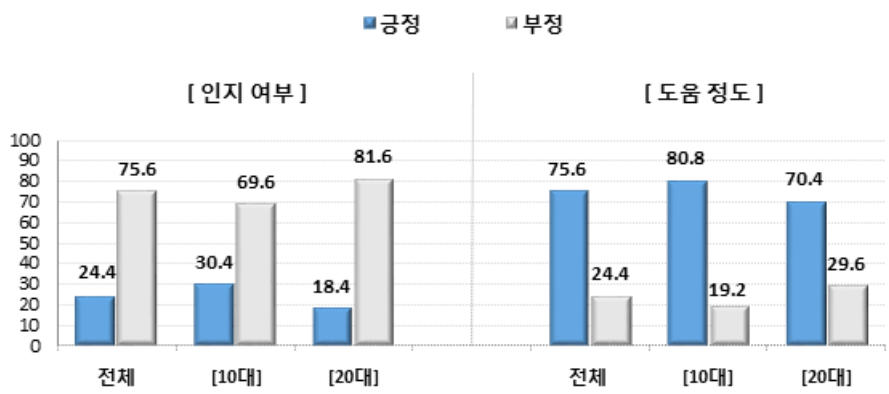


그림 Ⅲ-73.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원

표 Ⅲ-147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원

구분		사례수 [명]	긍정 (인지, 도움)	부정 (비인지, 비도움)	X ² / F (유의도)
인지 여부	전체	500	122(24.4)	378(75.6)	-
	10대	250	76(30.4)	174(69.6)	9.758** (.002)
	20대	250	46(18.4)	204(81.6)	
도움 정도	전체	500	378(75.6)	122(24.4)	-
	10대	250	202(80.8)	48(19.2)	4.864* (.028)
	20대	250	176(70.4)	74(29.6)	

*P<.05, **P<.01, ***P<.001

인지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28.4%), 고졸(27.2%) 및 대학원이상(50.0%), 현재 취업상태가 미취업/구직중(30.1%)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력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8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원(인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모른다	X ² (유의도)
인 지 여 부	전체	500	122(24.4)	378(75.6)	-
	성별	남자	250	71(28.4)	4.337* (.037)
		여자	250	51(20.4)	
	학력별	고졸	313	85(27.2)	7.583* (.023)
		대졸	179	33(18.4)	
		대학원이상	8	4(5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50(30.1)	5.447 (.066)
		비정규직 취업	167	40(24.0)	
		정규직 취업	167	32(19.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6(23.2)	2.329 (.312)
		한시적노동	49	11(22.4)	
		비전형노동	6	3(5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9(31.2)	1.634 (.201)
		시간제노동	9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9(29.0)	1.908 (.753)
		충청권	100	23(23.0)	
		경상권	100	24(24.0)	
		전라권	100	25(25.0)	
		강원/제주권	100	21(21.0)	

*P<.05, **P<.01, ***P<.001

도움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82.8%), 고졸(78.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0.1% 수준에서, 학력별, 과거 취업형태(현재 미취업)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9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원(도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도 움이 될 것 같다	대체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별로 도 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전혀 도 움이 될 것 같지 않다	F (유의도)	
도 움 정 도	전체		500	111(22.2)	267(53.4)	95(19.0)	27(5.4)	-	
	성별	남자	250	50(20.0)	121(48.4)	55(22.0)	24(9.6)	25.572*** (.000)	
		여자	250	61(24.4)	146(58.4)	40(16.0)	3(1.2)		
	학력별	고졸	313	82(26.2)	164(52.4)	51(16.3)	16(5.1)	3.631* (.027)	
		대졸	179	28(15.6)	97(54.2)	44(24.6)	10(5.6)		
		대학원이상	8	1(12.5)	6(75.0)	0(.0)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1(24.7)	91(54.8)	23(13.9)	11(6.6)	.690 (.502)	
		비정규직 취업	167	30(18.0)	93(55.7)	37(22.2)	7(4.2)		
		정규직 취업	167	40(24.0)	83(49.7)	35(21.0)	9(5.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2(19.6)	60(53.6)	26(23.2)	4(3.6)	.764 (.467)	
		한시적노동	49	6(12.2)	30(61.2)	10(20.4)	3(6.1)		
		비전형노동	6	2(33.3)	3(50.0)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8(24.2)	88(56.1)	22(14.0)	9(5.7)	4.954* (.027)	
		시간제노동	9	3(33.3)	3(33.3)	1(11.1)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8(18.0)	63(63.0)	17(17.0)	2(2.0)	.412 (.800)
			충청권	100	24(24.0)	55(55.0)	15(15.0)	6(6.0)	
		경상권	100	19(19.0)	55(55.0)	20(20.0)	6(6.0)		
		전라권	100	27(27.0)	46(46.0)	21(21.0)	6(6.0)		
		강원/제주권	100	23(23.0)	48(48.0)	22(22.0)	7(7.0)		

*P<.05, **P<.01, ***P<.001

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의 인지도 조사 결과, ‘알고 있다’ 응답이 25.2%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는 ‘도움 된다’는 응답이 76.6%로 인지도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는 조사한 결과, 10대(31.2%)가 20대(19.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10대(80.8%)가 20대(72.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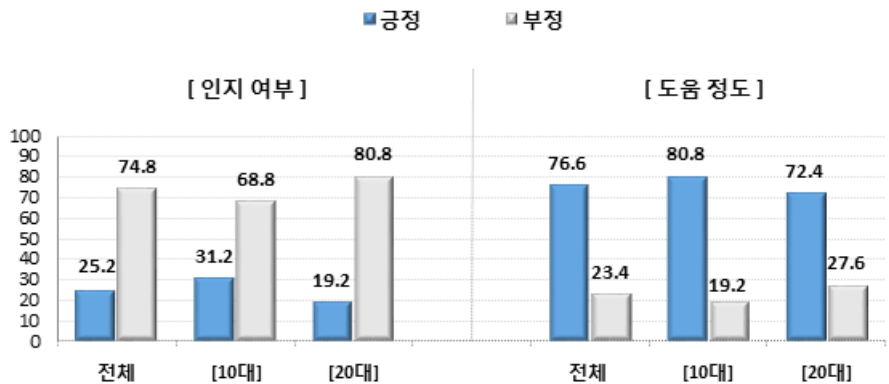


그림 Ⅲ-74.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

표 Ⅲ-150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

구분		사례수 [명]	긍정 (인지, 도움)	부정 (비인지, 비도움)	X ² / F (유의도)
인지 여부	전체	500	126(25.2)	374(74.8)	-
	10대	250	78(31.2)	172(68.8)	9.549** (.002)
	20대	250	48(19.2)	202(80.8)	
도움 정도	전체	500	383(76.6)	117(23.4)	-
	10대	250	202(80.8)	48(19.2)	7.669** (.006)
	20대	250	181(72.4)	69(27.6)	

*P<.05, **P<.01, ***P<.001

인지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28.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1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인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모른다	X ² (유의도)
인 지 여 부	전체		500	126(25.2)	374(74.8)	-
	성별	남자	250	63(25.2)	187(74.8)	.000 (1.000)
		여자	250	63(25.2)	187(74.8)	
	학력별	고졸	313	90(28.8)	223(71.2)	7.084* (.029)
		대졸	179	33(18.4)	146(81.6)	
		대학원이상	8	3(37.5)	5(6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7(28.3)	119(71.7)	2.056 (.358)
		비정규직 취업	167	43(25.7)	124(74.3)	
		정규직 취업	167	36(21.6)	131(78.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8(25.0)	84(75.0)	.229 (.892)
		한시적노동	49	13(26.5)	36(73.5)	
		비전형노동	6	2(33.3)	4(6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5(28.7)	112(71.3)	.174 (.677)
		시간제노동	9	2(22.2)	7(77.8)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6(26.0)	74(74.0)	1.634 (.803)
		충청권	100	28(28.0)	72(72.0)	
		경상권	100	27(27.0)	73(73.0)	
		전라권	100	24(24.0)	76(76.0)	
		강원/제주권	100	21(21.0)	79(79.0)	

*P<.05, **P<.01, ***P<.001

도움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84.0%), 고졸(80.1%), 과거 취업형태(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79.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0.1% 수준에서, 학력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2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도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도 움이 될 것 같다	대체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별로 도 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전혀 도 움이 될 것 같지 않다	F (유의도)
도 움 정 도	전체		500	110(22.0)	273(54.6)	88(17.6)	29(5.8)	-
	성별	남자	250	44(17.6)	129(51.6)	53(21.2)	24(9.6)	16.276*** (.000)
		여자	250	66(26.4)	144(57.6)	35(14.0)	5(2.0)	
	학력별	고졸	313	74(23.6)	177(56.5)	47(15.0)	15(4.8)	3.250* (.040)
		대졸	179	32(17.9)	94(52.5)	40(22.3)	13(7.3)	
		대학원이상	8	4(50.0)	2(25.0)	1(12.5)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6(21.7)	94(56.6)	26(15.7)	10(6.0)	.180 (.835)
		비정규직 취업	167	35(21.0)	89(53.3)	34(20.4)	9(5.4)	
		정규직 취업	167	39(23.4)	90(53.9)	28(16.8)	10(6.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7(24.1)	58(51.8)	23(20.5)	4(3.6)	1.505 (.225)
		한시적노동	49	7(14.3)	27(55.1)	10(20.4)	5(10.2)	
		비전형노동	6	1(16.7)	4(66.7)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5(22.3)	90(57.3)	23(14.6)	9(5.7)	1.111 (.293)
		시간제노동	9	1(11.1)	4(44.4)	3(33.3)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9(19.0)	63(63.0)	13(13.0)	5(5.0)
충청권			100	26(26.0)	55(55.0)	18(18.0)	1(1.0)	
경상권			100	14(14.0)	62(62.0)	17(17.0)	7(7.0)	
전라권			100	25(25.0)	48(48.0)	19(19.0)	8(8.0)	
강원/제주권			100	26(26.0)	45(45.0)	21(21.0)	8(8.0)	

*P<.05, **P<.01, ***P<.001

(3)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역할에 대한 인지와 도움정도

가.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의 인지도 조사 결과, ‘알고 있다’ 응답이 36.8%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는 ‘도움 된다’는 응답이 81.4%로 인지도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는 조사한 결과, 10대(41.2%)가 20대(3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20대(82.4%)가 10대(80.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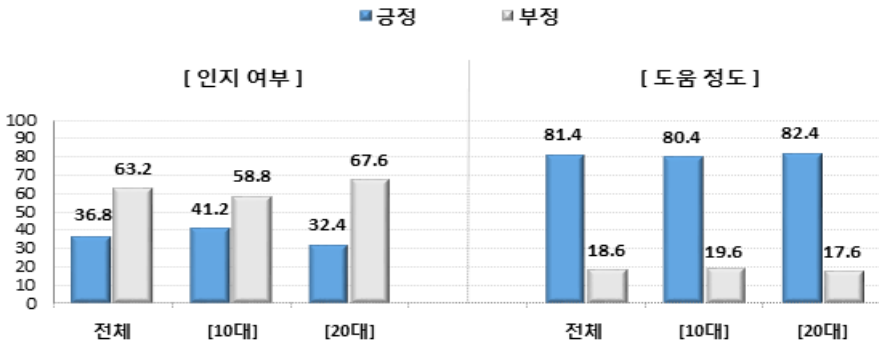


그림 III-75.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표 III-153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구분		사례수 [명]	긍정 (인지, 도움)	부정 (비인지, 비도움)	X ² / F (유의도)
인지 여부	전체	500	184(36.8)	316(63.2)	-
	10대	250	103(41.2)	147(58.8)	4.162*
	20대	250	81(32.4)	169(67.6)	(.041)
도움 정도	전체	500	407(81.4)	93(18.6)	-
	10대	250	201(80.4)	49(19.6)	1.855
	20대	250	206(82.4)	44(17.6)	(.147)

*P<.05, **P<.01, ***P<.001

인지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자(40.4%), 고졸(40.6%)에
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54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인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모른다	X ² (유의도)
인 지 여 부	전체	500	184(36.8)	316(63.2)	-
	성별	남자	250	101(40.4)	2.786
		여자	250	83(33.2)	(.095)
	학력별	고졸	313	127(40.6)	5.305
		대졸	179	54(30.2)	(.070)
		대학원이상	8	3(37.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62(37.3)	1.886
		비정규직 취업	167	67(40.1)	(.389)
		정규직 취업	167	55(32.9)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1(36.6)	1.767
		한시적노동	49	23(46.9)	(.413)
		비전형노동	6	3(5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59(37.6)	.066
		시간제노동	9	3(33.3)	(.798)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42(42.0)	3.646
		충청권	100	31(31.0)	(.456)
		경상권	100	39(39.0)	
		전라권	100	39(39.0)	
		강원/제주권	100	33(33.0)	
				67(67.0)	

*P<.05, **P<.01, ***P<.001

도움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87.6%), 수도권(88.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55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도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도 움이 될 것 같다	대체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별로 도 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전혀 도 움이 될 것 같지 않다	F (유의도)
도 움 정 도	전체		500	135(27.0)	272(54.4)	75(15.0)	18(3.6)	-
	성별	남자	250	59(23.6)	129(51.6)	47(18.8)	15(6.0)	2.748 (.098)
		여자	250	76(30.4)	143(57.2)	28(11.2)	3(1.2)	
	학력별	고졸	313	95(30.4)	160(51.1)	48(15.3)	10(3.2)	1.237 (.291)
		대졸	179	38(21.2)	107(59.8)	26(14.5)	8(4.5)	
		대학원이상	8	2(25.0)	5(62.5)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7(28.3)	82(49.4)	31(18.7)	6(3.6)	.168 (.845)
		비정규직 취업	167	44(26.3)	94(56.3)	22(13.2)	7(4.2)	
		정규직 취업	167	44(26.3)	96(57.5)	22(13.2)	5(3.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9(25.9)	66(58.9)	14(12.5)	3(2.7)	.910 (.405)
		한시적노동	49	14(28.6)	26(53.1)	5(10.2)	4(8.2)	
		비전형노동	6	1(16.7)	2(33.3)	3(5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6(29.3)	77(49.0)	29(18.5)	5(3.2)	.335 (.563)
		시간제노동	9	1(11.1)	5(55.6)	2(22.2)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6(26.0)	62(62.0)	9(9.0)	3(3.0)	.428 (.788)
		충청권	100	27(27.0)	52(52.0)	16(16.0)	5(5.0)	
경상권		100	28(28.0)	55(55.0)	14(14.0)	3(3.0)		
전라권		100	27(27.0)	50(50.0)	18(18.0)	5(5.0)		
강원/제주권		100	27(27.0)	53(53.0)	18(18.0)	2(2.0)		

*P<.05, **P<.01, ***P<.001

나. 청소년 대상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

청소년 대상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의 인지도 조사 결과, ‘알고 있다’ 응답이 27.8%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는 ‘도움 된다’는 응답이 72.6%로 인지도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는 조사한 결과, 10대(31.6%)가 20대(24.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10대(73.2%)가 20대(72.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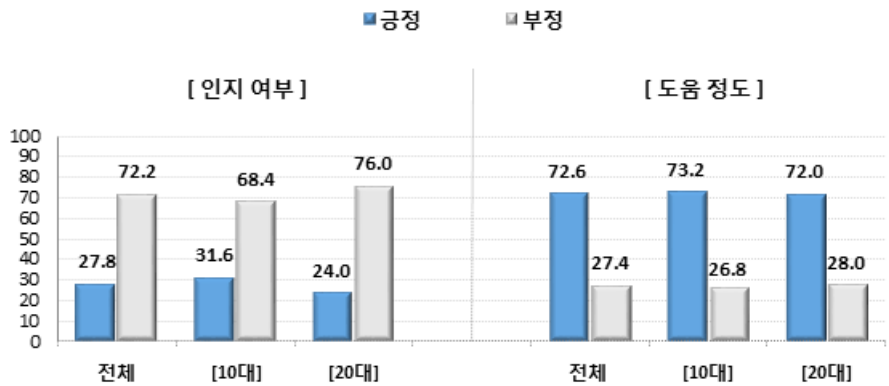


그림 III-76. 청소년 대상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

표 III-156 청소년 대상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

구분		사례수 [명]	긍정 (인지, 도움)	부정 (비인지, 비도움)	X ² / F (유의도)
인지 여부	전체	500	139(27.8)	361(72.2)	-
	10대	250	79(31.6)	171(68.4)	3.597
	20대	250	60(24.0)	190(76.0)	(.058)
도움 정도	전체	500	363(72.6)	137(27.4)	-
	10대	250	183(73.2)	67(26.8)	1.155
	20대	250	180(72.0)	70(28.0)	(.283)

*P<.05, **P<.01, ***P<.001

인지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34.7%)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취업상태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7 청소년 대상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인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모른다	X ² (유의도)
인 지 여 부	전체	500	139(27.8)	361(72.2)	-
	성별	남자	250	76(30.4)	1.684
		여자	250	63(25.2)	(.194)
	학력별	고졸	313	94(30.0)	2.829
		대졸	179	42(23.5)	(.243)
		대학원이상	8	3(37.5)	5(6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9(29.5)	10.449**
		비정규직 취업	167	58(34.7)	(.005)
		정규직 취업	167	32(19.2)	135(80.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8(33.9)	.124
		한시적노동	49	18(36.7)	(.940)
		비전형노동	6	2(33.3)	4(6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8(30.6)	1.550
		시간제노동	9	1(11.1)	(.213)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1(31.0)	69(69.0)
		충청권	100	21(21.0)	79(79.0)
		경상권	100	29(29.0)	71(71.0)
		전라권	100	30(30.0)	70(70.0)
		강원/제주권	100	28(28.0)	72(72.0)

*P<.05, **P<.01, ***P<.001

도움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78.4%),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73.9%)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8 청소년 대상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도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도 움이 될 것 같다	대체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별로 도 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전혀 도 움이 될 것 같지 않다	F (유의도)	
도 움 정 도	전체		500	98(19.6)	265(53.0)	115(23.0)	22(4.4)	-	
	성별	남자	250	41(16.4)	126(50.4)	67(26.8)	16(6.4)	12.803*** (.000)	
		여자	250	57(22.8)	139(55.6)	48(19.2)	6(2.4)		
	학력별	고졸	313	65(20.8)	167(53.4)	72(23.0)	9(2.9)	1.287 (.277)	
		대졸	179	32(17.9)	93(52.0)	42(23.5)	12(6.7)		
		대학원이상	8	1(12.5)	5(62.5)	1(12.5)	1(1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32(19.3)	88(53.0)	41(24.7)	5(3.0)	.012 (.988)	
		비정규직 취업	167	30(18.0)	94(56.3)	35(21.0)	8(4.8)		
		정규직 취업	167	36(21.6)	83(49.7)	39(23.4)	9(5.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0(17.9)	64(57.1)	23(20.5)	5(4.5)	.602 (.549)	
		한시적노동	49	7(14.3)	29(59.2)	10(20.4)	3(6.1)		
		비전형노동	6	3(50.0)	1(16.7)	2(33.3)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32(20.4)	84(53.5)	38(24.2)	3(1.9)	1.023 (.313)	
		시간제노동	9	0(0)	4(44.4)	3(33.3)	2(22.2)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19(19.0)	57(57.0)	19(19.0)	5(5.0)	.367 (.832)
			충청권	100	22(22.0)	55(55.0)	19(19.0)	4(4.0)	
경상권			100	18(18.0)	54(54.0)	23(23.0)	5(5.0)		
전라권			100	16(16.0)	56(56.0)	25(25.0)	3(3.0)		
강원/제주권			100	23(23.0)	43(43.0)	29(29.0)	5(5.0)		

*P<.05, **P<.01, ***P<.001

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인지도 조사 결과, ‘알고 있다’ 응답이 38.6%로 나타났으며, 도움 정도는 ‘도움 된다’는 응답이 79.0%로 인지도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는 조사한 결과, 10대(46.4%)가 20대(3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10대(80.0%)가 20대(78.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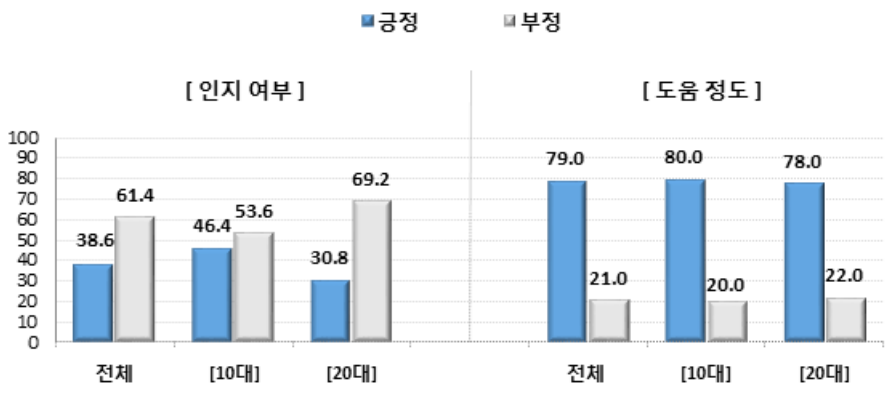


그림 III-77.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 III-159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구분		사례수 [명]	긍정 (인지, 도움)	부정 (비인지, 비도움)	X ² / F (유의도)
인지 여부	전체	500	193(38.6)	307(61.4)	-
	10대	250	116(46.4)	134(53.6)	12.835*** (.000)
	20대	250	77(30.8)	173(69.2)	
도움 정도	전체	500	395(79.0)	105(21.0)	-
	10대	250	200(80.0)	50(20.0)	.551 (.458)
	20대	250	195(78.0)	55(22.0)	

*P<.05, **P<.01, ***P<.001

인지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고졸(43.1%), 현재 취업상태가 미취업/구직중(45.2%)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0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인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모른다	X ² (유의도)
인 지 여 부	전체	500	193(38.6)	307(61.4)	-
	성별	남자	96(38.4)	154(61.6)	.008 (.927)
		여자	97(38.8)	153(61.2)	
	학력별	고졸	135(43.1)	178(56.9)	7.398* (.025)
		대졸	55(30.7)	124(69.3)	
		대학원이상	3(37.5)	5(62.5)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75(45.2)	91(54.8)	5.804 (.055)
		비정규직 취업	64(38.3)	103(61.7)	
		정규직 취업	54(32.3)	113(67.7)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42(37.5)	70(62.5)	.224 (.894)
		한시적노동	20(40.8)	29(59.2)	
		비전형노동	2(33.3)	4(6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72(45.9)	85(54.1)	.539 (.463)
		시간제노동	3(33.3)	6(66.7)	
	거주 지역별	수도권	43(43.0)	57(57.0)	1.738 (.784)
		충청권	36(36.0)	64(64.0)	
		경상권	40(40.0)	60(60.0)	
		전라권	39(39.0)	61(61.0)	
		강원/제주권	35(35.0)	65(65.0)	

*P<.05, **P<.01, ***P<.001

도움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84.8%), 과거 취업형태(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80.9%), 수도권(86.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61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도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도 움이 될 것 같다	대체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별로 도 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전혀 도 움이 될 것 같지 않다	F (유의도)
도 움 정 도	전체	500	143(28.6)	252(50.4)	83(16.6)	22(4.4)	-
	성별	남자	250	63(25.2)	120(48.0)	49(19.6)	3.814
		여자	250	80(32.0)	132(52.8)	34(13.6)	(.051)
	학력별	고졸	313	94(30.0)	160(51.1)	46(14.7)	.983
		대졸	179	45(25.1)	91(50.8)	35(19.6)	(.375)
		대학원이상	8	4(50.0)	1(12.5)	2(25.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9(29.5)	81(48.8)	27(16.3)	.355
		비정규직 취업	167	42(25.1)	91(54.5)	26(15.6)	(.702)
		정규직 취업	167	52(31.1)	80(47.9)	30(18.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9(25.9)	62(55.4)	18(16.1)	.933
		한시적노동	49	11(22.4)	26(53.1)	7(14.3)	(.396)
		비전형노동	6	2(33.3)	3(50.0)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8(30.6)	79(50.3)	23(14.6)	.826
		시간제노동	9	1(11.1)	2(22.2)	4(44.4)	(.365)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0(30.0)	56(56.0)	11(11.0)	1.054 (.379)
		충청권	100	35(35.0)	44(44.0)	15(15.0)	
		경상권	100	26(26.0)	58(58.0)	11(11.0)	
		전라권	100	23(23.0)	51(51.0)	22(22.0)	
		강원/제주권	100	29(29.0)	43(43.0)	24(24.0)	

*P<.05, **P<.01, ***P<.001

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제공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제공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2.0%(매우: 33.8% + 대체로: 48.2%)로 ‘불필요’ 응답 18.0%(전혀: 2.8% + 별로: 1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88.0%로 20대(7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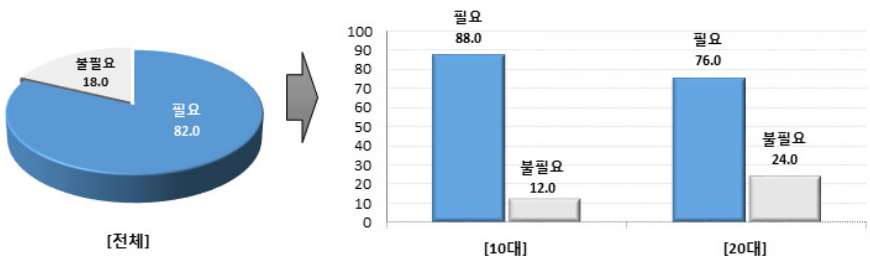


그림 III-78.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제공

표 III-16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제공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69(33.8)	241(48.2)	76(15.2)	14(2.8)	-
10대	250	115(46.0)	105(42.0)	24(9.6)	6(2.4)	7.158**
20대	250	54(21.6)	136(54.4)	52(20.8)	8(3.2)	(.008)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고졸 86.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별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제공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69(33.8)	241(48.2)	76(15.2)	14(2.8)	-
성별	남자	250	88(35.2)	113(45.2)	38(15.2)	11(4.4)	2.804 (.095)
	여자	250	81(32.4)	128(51.2)	38(15.2)	3(1.2)	
학력별	고졸	313	133(42.5)	138(44.1)	35(11.2)	7(2.2)	14.575*** (.000)
	대졸	179	35(19.6)	99(55.3)	38(21.2)	7(3.9)	
	대학원이상	8	1(12.5)	4(50.0)	3(37.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71(42.8)	67(40.4)	22(13.3)	6(3.6)	1.876 (.154)
	비정규직 취업	167	49(29.3)	86(51.5)	27(16.2)	5(3.0)	
	정규직 취업	167	49(29.3)	88(52.7)	27(16.2)	3(1.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8(33.9)	54(48.2)	18(16.1)	2(1.8)	1.537 (.218)
	한시적노동	49	9(18.4)	30(61.2)	7(14.3)	3(6.1)	
	비전형노동	6	2(33.3)	2(33.3)	2(33.3)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68(43.3)	63(40.1)	21(13.4)	5(3.2)	.001 (.977)
	시간제노동	9	3(33.3)	4(44.4)	1(11.1)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5(25.0)	58(58.0)	13(13.0)	4(4.0)	1.092 (.360)
	충청권	100	44(44.0)	38(38.0)	16(16.0)	2(2.0)	
	경상권	100	35(35.0)	49(49.0)	15(15.0)	1(1.0)	
	전라권	100	35(35.0)	44(44.0)	18(18.0)	3(3.0)	
	강원/제주권	100	30(30.0)	52(52.0)	14(14.0)	4(4.0)	

*P<.05, **P<.01, ***P<.001

(2) 청소년 대상 일자리 정보서비스 확대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대상 일자리 정보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5.6%(매우: 34.6% + 대체로: 51.0%)로 ‘불필요’ 응답 14.4%(전혀: 2.4% + 별로: 1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88.0%로 20대(83.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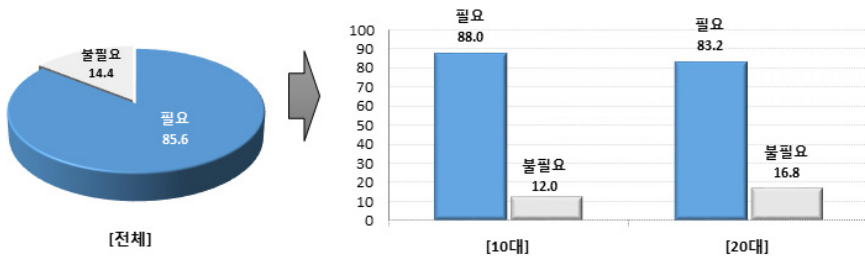


그림 III-79. 청소년 대상 일자리 정보서비스 확대

표 III-164 청소년 대상 일자리 정보서비스 확대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73(34.6)	255(51.0)	60(12.0)	12(2.4)	-
10대	250	110(44.0)	110(44.0)	25(10.0)	5(2.0)	11.519**
20대	250	63(25.2)	145(58.0)	35(14.0)	7(2.8)	(.001)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고졸 88.2%)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별에 따라 1% 수준에서, 거주지역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5 청소년 대상 일자리 정보서비스 확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73(34.6)	255(51.0)	60(12.0)	12(2.4)	-
성별	남자	250	80(32.0)	129(51.6)	34(13.6)	7(2.8)	0.159 (.690)
	여자	250	93(37.2)	126(50.4)	26(10.4)	5(2.0)	
학력별	고졸	313	127(40.6)	149(47.6)	30(9.6)	7(2.2)	6.763** (.001)
	대졸	179	46(25.7)	100(55.9)	28(15.6)	5(2.8)	
	대학원이상	8	0(.0)	6(75.0)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71(42.8)	73(44.0)	18(10.8)	4(2.4)	2.320 (.099)
	비정규직 취업	167	54(32.3)	90(53.9)	19(11.4)	4(2.4)	
	정규직 취업	167	48(28.7)	92(55.1)	23(13.8)	4(2.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8(33.9)	61(54.5)	11(9.8)	2(1.8)	1.086 (.340)
	한시적노동	49	14(28.6)	25(51.0)	8(16.3)	2(4.1)	
	비전형노동	6	2(33.3)	4(66.7)	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67(42.7)	70(44.6)	16(10.2)	4(2.5)	.254 (.615)
	시간제노동	9	4(44.4)	3(33.3)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2(32.0)	54(54.0)	12(12.0)	2(2.0)	2.440* (.046)
	충청권	100	42(42.0)	47(47.0)	9(9.0)	2(2.0)	
	경상권	100	41(41.0)	49(49.0)	9(9.0)	1(1.0)	
	전라권	100	31(31.0)	49(49.0)	17(17.0)	3(3.0)	
	강원/제주권	100	27(27.0)	56(56.0)	13(13.0)	4(4.0)	

*P<.05, **P<.01, ***P<.001

(3) 청소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감독 강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5.4%(매우: 46.0% + 대체로: 39.4%)로 ‘불필요’ 응답 14.6%(전혀: 2.0% + 별로: 1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6.8%로 10대(84.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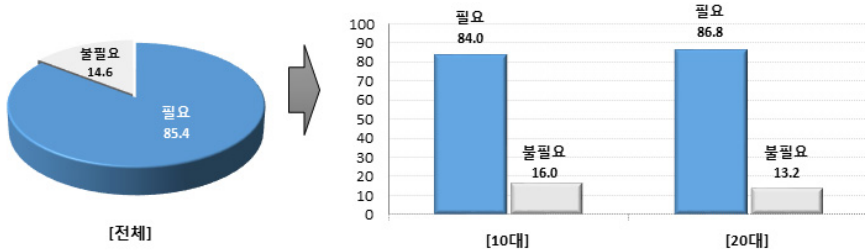


그림 III-80. 청소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감독 강화

표 III-166 청소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감독 강화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30(46.0)	197(39.4)	63(12.6)	10(2.0)	-
10대	250	120(48.0)	90(36.0)	35(14.0)	5(2.0)	1.633
20대	250	110(44.0)	107(42.8)	28(11.2)	5(2.0)	(.202)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67 청소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감독 강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30(46.0)	197(39.4)	63(12.6)	10(2.0)	-
성별	남자	250	96(38.4)	113(45.2)	34(13.6)	7(2.8)	.541 (.462)
	여자	250	134(53.6)	84(33.6)	29(11.6)	3(1.2)	
학력별	고졸	313	145(46.3)	120(38.3)	40(12.8)	8(2.6)	.093 (.911)
	대졸	179	82(45.8)	73(40.8)	22(12.3)	2(1.1)	
	대학원이상	8	3(37.5)	4(50.0)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82(49.4)	56(33.7)	25(15.1)	3(1.8)	.130 (.878)
	비정규직 취업	167	72(43.1)	70(41.9)	23(13.8)	2(1.2)	
	정규직 취업	167	76(45.5)	71(42.5)	15(9.0)	5(3.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9(43.8)	48(42.9)	14(12.5)	1(9)	.487 (.616)
	한시적노동	49	22(44.9)	18(36.7)	8(16.3)	1(2.0)	
	비전형노동	6	1(16.7)	4(66.7)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80(51.0)	51(32.5)	23(14.6)	3(1.9)	3.147 (.078)
	시간제노동	9	2(22.2)	5(55.6)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48(48.0)	39(39.0)	11(11.0)	2(2.0)	.865 (.485)
	충청권	100	48(48.0)	39(39.0)	12(12.0)	1(1.0)	
	경상권	100	49(49.0)	38(38.0)	12(12.0)	1(1.0)	
	전라권	100	44(44.0)	40(40.0)	15(15.0)	1(1.0)	
	강원/제주권	100	41(41.0)	41(41.0)	13(13.0)	5(5.0)	

*P<.05, **P<.01, ***P<.001

(4) 청소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5.4%(매우: 51.0% + 대체로: 34.4%)로 ‘불필요’ 응답 14.6%(전혀: 3.0% + 별로: 1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86.0%로 20대(84.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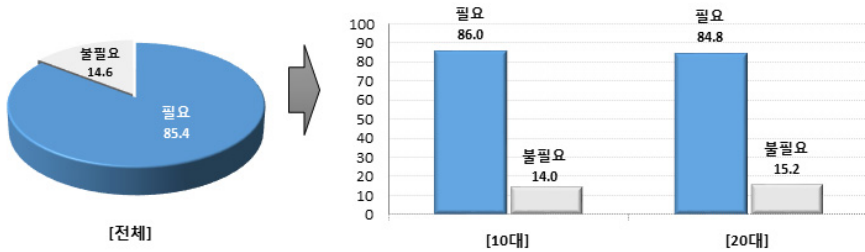


그림 III-81. 청소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표 III-168 청소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55(51.0)	172(34.4)	58(11.6)	15(3.0)	-
10대	250	130(52.0)	85(34.0)	24(9.6)	11(4.4)	.367
20대	250	125(50.0)	87(34.8)	34(13.6)	4(1.6)	(.545)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90.4%)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과거 취업형태(현재 미취업)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9 청소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55(51.0)	172(34.4)	58(11.6)	15(3.0)	-
성별	남자	250	112(44.8)	89(35.6)	39(15.6)	10(4.0)	4.939* (.027)
	여자	250	143(57.2)	83(33.2)	19(7.6)	5(2.0)	
학력별	고졸	313	161(51.4)	107(34.2)	33(10.5)	12(3.8)	.547 (.579)
	대졸	179	89(49.7)	62(34.6)	25(14.0)	3(1.7)	
	대학원이상	8	5(62.5)	3(37.5)	0(.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88(53.0)	53(31.9)	19(11.4)	6(3.6)	.355 (.701)
	비정규직 취업	167	81(48.5)	59(35.3)	22(13.2)	5(3.0)	
	정규직 취업	167	86(51.5)	60(35.9)	17(10.2)	4(2.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52(46.4)	43(38.4)	13(11.6)	4(3.6)	.620 (.539)
	한시적노동	49	26(53.1)	16(32.7)	6(12.2)	1(2.0)	
	비전형노동	6	3(50.0)	0(.0)	3(5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86(54.8)	47(29.9)	18(11.5)	6(3.8)	4.247* (.041)
	시간제노동	9	2(22.2)	6(66.7)	1(11.1)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52(52.0)	33(33.0)	12(12.0)	3(3.0)	.656 (.623)
	충청권	100	58(58.0)	31(31.0)	6(6.0)	5(5.0)	
	경상권	100	51(51.0)	35(35.0)	12(12.0)	2(2.0)	
	전라권	100	48(48.0)	38(38.0)	12(12.0)	2(2.0)	
	강원/제주권	100	46(46.0)	35(35.0)	16(16.0)	3(3.0)	

*P<.05, **P<.01, ***P<.001

(5) 노동관련 법률·행정 용어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률·행정 용어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6.8%(매우: 45.8% + 대체로: 41.0%)로 ‘불필요’ 응답 13.2%(전혀: 2.2% + 별로: 1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86.8%) 및 20대(86.8%) 응답이 86%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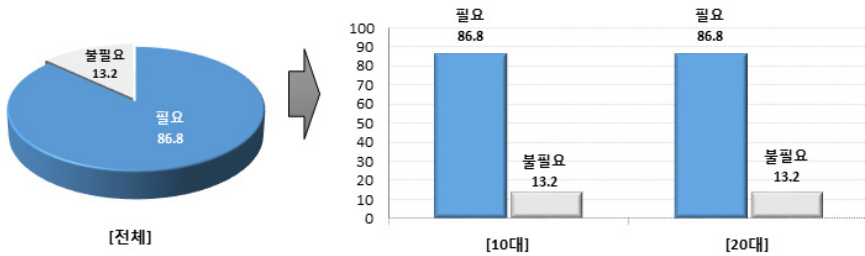


그림 III-82. 노동관련 법률·행정 용어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

표 III-170 노동관련 법률·행정 용어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29(45.8)	205(41.0)	55(11.0)	11(2.2)	-
10대	250	114(45.6)	103(41.2)	24(9.6)	9(3.6)	.448
20대	250	115(46.0)	102(40.8)	31(12.4)	2(.8)	(.504)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92.0%),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90.4%)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71 노동관련 법률·행정 용어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29(45.8)	205(41.0)	55(11.0)	11(2.2)	-
성별	남자	250	97(38.8)	107(42.8)	37(14.8)	9(3.6)	2.266 (.133)
	여자	250	132(52.8)	98(39.2)	18(7.2)	2(.8)	
학력별	고졸	313	142(45.4)	129(41.2)	33(10.5)	9(2.9)	1.641 (.195)
	대졸	179	85(47.5)	73(40.8)	19(10.6)	2(1.1)	
	대학원이상	8	2(25.0)	3(37.5)	3(37.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75(45.2)	67(40.4)	16(9.6)	8(4.8)	.892 (.410)
	비정규직 취업	167	80(47.9)	71(42.5)	13(7.8)	3(1.8)	
	정규직 취업	167	74(44.3)	67(40.1)	26(15.6)	0(.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50(44.6)	50(44.6)	10(8.9)	2(1.8)	.753 (.473)
	한시적노동	49	27(55.1)	19(38.8)	2(4.1)	1(2.0)	
	비전형노동	6	3(50.0)	2(33.3)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73(46.5)	62(39.5)	15(9.6)	7(4.5)	.103 (.749)
	시간제노동	9	2(22.2)	5(55.6)	1(11.1)	1(11.1)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48(48.0)	41(41.0)	10(10.0)	1(1.0)	1.301 (.269)
	충청권	100	43(43.0)	47(47.0)	7(7.0)	3(3.0)	
	경상권	100	51(51.0)	40(40.0)	8(8.0)	1(1.0)	
	전라권	100	38(38.0)	45(45.0)	15(15.0)	2(2.0)	
	강원/제주권	100	49(49.0)	32(32.0)	15(15.0)	4(4.0)	

*P<.05, **P<.01, ***P<.001

(6)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2.8%(매우: 31.2% + 대체로: 51.6%)로 ‘불필요’ 응답 17.2%(전혀: 1.6% + 별로: 1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4.4%로 10대(81.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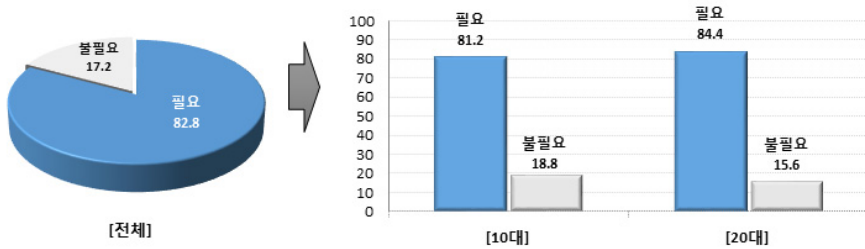


그림 Ⅲ-83.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표 Ⅲ-172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56(31.2)	258(51.6)	78(15.6)	8(1.6)	-
10대	250	83(33.2)	120(48.0)	44(17.6)	3(1.2)	2.070
20대	250	73(29.2)	138(55.2)	34(13.6)	5(2.0)	(.151)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88.0%)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173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56(31.2)	258(51.6)	78(15.6)	8(1.6)	-
성별	남자	250	71(28.4)	123(49.2)	50(20.0)	6(2.4)	.079 (.778)
	여자	250	85(34.0)	135(54.0)	28(11.2)	2(.8)	
학력별	고졸	313	108(34.5)	153(48.9)	46(14.7)	6(1.9)	1.063 (.346)
	대졸	179	46(25.7)	100(55.9)	31(17.3)	2(1.1)	
	대학원이상	8	2(25.0)	5(62.5)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50(30.1)	81(48.8)	33(19.9)	2(1.2)	.503 (.605)
	비정규직 취업	167	53(31.7)	87(52.1)	26(15.6)	1(.6)	
	정규직 취업	167	53(31.7)	90(53.9)	19(11.4)	5(3.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29(25.9)	61(54.5)	22(19.6)	0(.0)	2.766 (.066)
	한시적노동	49	22(44.9)	22(44.9)	4(8.2)	1(2.0)	
	비전형노동	6	2(33.3)	4(66.7)	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8(30.6)	77(49.0)	30(19.1)	2(1.3)	.047 (.829)
	시간제노동	9	2(22.2)	4(44.4)	3(33.3)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3(33.0)	53(53.0)	12(12.0)	2(2.0)	.690 (.599)
	충청권	100	30(30.0)	57(57.0)	11(11.0)	2(2.0)	
	경상권	100	31(31.0)	49(49.0)	19(19.0)	1(1.0)	
	전라권	100	27(27.0)	51(51.0)	20(20.0)	2(2.0)	
	강원/제주권	100	35(35.0)	48(48.0)	16(16.0)	1(1.0)	

*P<.05, **P<.01, ***P<.001

(7) 일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4.6%(매우: 37.0% + 대체로: 47.6%)로 ‘불필요’ 응답 15.4%(전혀: 2.8% + 별로: 1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84.8%) 및 20대(84.4%) 응답이 84%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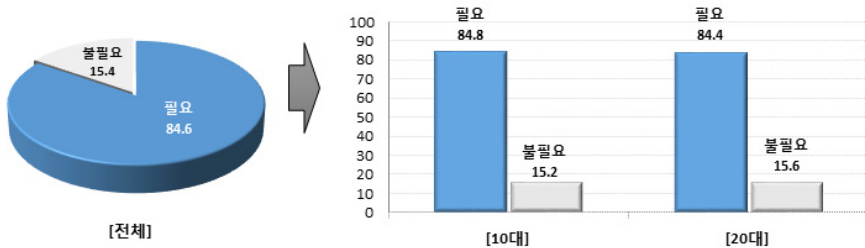


그림 Ⅲ-84. 일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표 Ⅲ-174 일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85(37.0)	238(47.6)	63(12.6)	14(2.8)	-
10대	250	101(40.4)	111(44.4)	29(11.6)	9(3.6)	2.797
20대	250	84(33.6)	127(50.8)	34(13.6)	5(2.0)	(.095)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90.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175 일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85(37.0)	238(47.6)	63(12.6)	14(2.8)	-
성별	남자	250	84(33.6)	112(44.8)	41(16.4)	13(5.2)	2.729 (.099)
	여자	250	101(40.4)	126(50.4)	22(8.8)	1(4)	
학력별	고졸	313	124(39.6)	143(45.7)	36(11.5)	10(3.2)	.764 (.466)
	대졸	179	59(33.0)	91(50.8)	25(14.0)	4(2.2)	
	대학원이상	8	2(25.0)	4(50.0)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63(38.0)	76(45.8)	21(12.7)	6(3.6)	.678 (.508)
	비정규직 취업	167	69(41.3)	73(43.7)	21(12.6)	4(2.4)	
	정규직 취업	167	53(31.7)	89(53.3)	21(12.6)	4(2.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1(36.6)	54(48.2)	14(12.5)	3(2.7)	.930 (.397)
	한시적노동	49	24(49.0)	18(36.7)	6(12.2)	1(2.0)	
	비전형노동	6	4(66.7)	1(16.7)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61(38.9)	71(45.2)	19(12.1)	6(3.8)	1.231 (.269)
	시간제노동	9	2(22.2)	5(55.6)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4(34.0)	53(53.0)	11(11.0)	2(2.0)	1.873 (.114)
	충청권	100	40(40.0)	49(49.0)	10(10.0)	1(1.0)	
	경상권	100	35(35.0)	50(50.0)	11(11.0)	4(4.0)	
	전라권	100	33(33.0)	41(41.0)	22(22.0)	4(4.0)	
	강원/제주권	100	43(43.0)	45(45.0)	9(9.0)	3(3.0)	

*P<.05, **P<.01, ***P<.001

(8)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8.0%(매우: 55.2% + 대체로: 32.8%)로 ‘불필요’ 응답 12.0%(전혀: 1.8% + 별로: 1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9.2%로 10대(86.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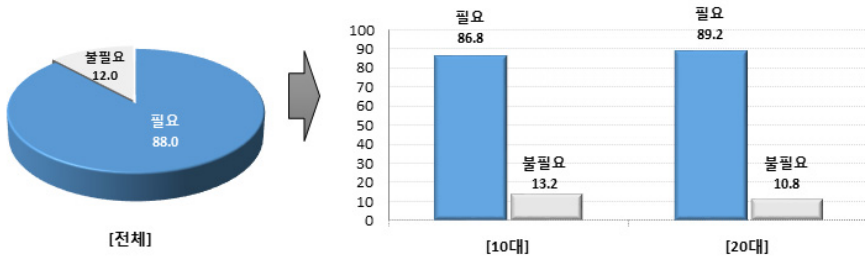


그림 Ⅲ-85.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표 Ⅲ-176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76(55.2)	164(32.8)	51(10.2)	9(1.8)	-
10대	250	144(57.6)	73(29.2)	28(11.2)	5(2.0)	1.067
20대	250	132(52.8)	91(36.4)	23(9.2)	4(1.6)	(.302)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91.6%),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86.6%), 경상권(94.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7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76(55.2)	164(32.8)	51(10.2)	9(1.8)	-
성별	남자	250	121(48.4)	90(36.0)	31(12.4)	8(3.2)	9.093** (.003)
	여자	250	155(62.0)	74(29.6)	20(8.0)	1(4)	
학력별	고졸	313	180(57.5)	96(30.7)	32(10.2)	5(1.6)	.650 (.522)
	대졸	179	92(51.4)	66(36.9)	17(9.5)	4(2.2)	
	대학원이상	8	4(50.0)	2(25.0)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98(59.0)	44(26.5)	21(12.7)	3(1.8)	.731 (.482)
	비정규직 취업	167	83(49.7)	64(38.3)	17(10.2)	3(1.8)	
	정규직 취업	167	95(56.9)	56(33.5)	13(7.8)	3(1.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56(50.0)	42(37.5)	12(10.7)	2(1.8)	.007 (.993)
	한시적노동	49	25(51.0)	18(36.7)	5(10.2)	1(2.0)	
	비전형노동	6	2(33.3)	4(66.7)	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95(60.5)	41(26.1)	18(11.5)	3(1.9)	.001 (.978)
	시간제노동	9	3(33.3)	3(33.3)	3(33.3)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51(51.0)	36(36.0)	11(11.0)	2(2.0)	1.423 (.225)
	충청권	100	60(60.0)	31(31.0)	8(8.0)	1(1.0)	
	경상권	100	59(59.0)	35(35.0)	5(5.0)	1(1.0)	
	전라권	100	56(56.0)	27(27.0)	14(14.0)	3(3.0)	
	강원/제주권	100	50(50.0)	35(35.0)	13(13.0)	2(2.0)	

*P<.05, **P<.01, ***P<.001

(9) 부당한 임금미지급이나 임금삭감으로부터 보호 강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당한 임금미지급이나 임금삭감으로부터 보호 강화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6.6%(매우: 51.2% + 대체로: 35.4%)로 ‘불필요’ 응답 13.4%(전혀: 1.6% + 별로: 11.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86.4%) 및 20대(86.8%) 응답이 86%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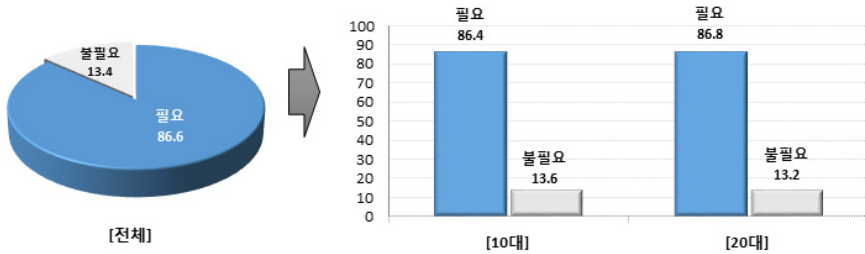


그림 Ⅲ-86. 부당한 임금미지급이나 임금삭감으로부터 보호 강화

표 Ⅲ-178 부당한 임금미지급이나 임금삭감으로부터 보호 강화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56(51.2)	177(35.4)	59(11.8)	8(1.6)	-
10대	250	134(53.6)	82(32.8)	30(12.0)	4(1.6)	.238
20대	250	122(48.8)	95(38.0)	29(11.6)	4(1.6)	(.626)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90.8%), 현재 취업상태가 정규직 취업(91.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9 부당한 임금미지급이나 임금삭감으로부터 보호 강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56(51.2)	177(35.4)	59(11.8)	8(1.6)	-
성별	남자	250	117(46.8)	89(35.6)	37(14.8)	7(2.8)	7.168** (.008)
	여자	250	139(55.6)	88(35.2)	22(8.8)	1(4)	
학력별	고졸	313	169(54.0)	103(32.9)	37(11.8)	4(1.3)	.888 (.412)
	대졸	179	84(46.9)	70(39.1)	21(11.7)	4(2.2)	
	대학원이상	8	3(37.5)	4(50.0)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89(53.6)	51(30.7)	25(15.1)	1(6)	.987 (.373)
	비정규직 취업	167	83(49.7)	57(34.1)	21(12.6)	6(3.6)	
	정규직 취업	167	84(50.3)	69(41.3)	13(7.8)	1(6)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56(50.0)	40(35.7)	12(10.7)	4(3.6)	.158 (.854)
	한시적노동	49	25(51.0)	14(28.6)	8(16.3)	2(4.1)	
	비전형노동	6	2(33.3)	3(50.0)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85(54.1)	48(30.6)	23(14.6)	1(6)	.0353 (.852)
	시간제노동	9	4(44.4)	3(33.3)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49(49.0)	40(40.0)	9(9.0)	2(2.0)	.729 (.573)
	충청권	100	52(52.0)	34(34.0)	14(14.0)	0(0)	
	경상권	100	58(58.0)	32(32.0)	8(8.0)	2(2.0)	
	전라권	100	49(49.0)	35(35.0)	14(14.0)	2(2.0)	
	강원/제주권	100	48(48.0)	36(36.0)	14(14.0)	2(2.0)	

*P<.05, **P<.01, ***P<.001

(10) 학교에서 노동인권(권익) 교육 강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권익) 교육 강화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4.6%(매우: 34.4% + 대체로: 50.2%)로 ‘불필요’ 응답 15.4%(전혀: 3.4% + 별로: 1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5.6%로 10대(83.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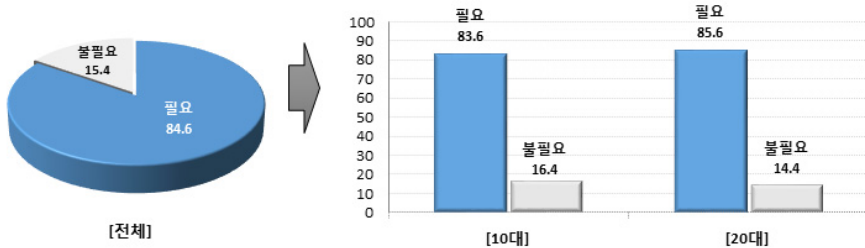


그림 Ⅲ-87. 학교에서 노동인권(권익) 교육 강화

표 Ⅲ-180 학교에서 노동인권(권익) 교육 강화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72(34.4)	251(50.2)	60(12.0)	17(3.4)	-
10대	250	88(35.2)	121(48.4)	33(13.2)	8(3.2)	.381
20대	250	84(33.6)	130(52.0)	27(10.8)	9(3.6)	(.537)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88.4%), 수도권(94.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81 학교에서 노동인권(권익) 교육 강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72(34.4)	251(50.2)	60(12.0)	17(3.4)	-
성별	남자	250	75(30.0)	127(50.8)	36(14.4)	12(4.8)	.141 (.707)
	여자	250	97(38.8)	124(49.6)	24(9.6)	5(2.0)	
학력별	고졸	313	110(35.1)	153(48.9)	40(12.8)	10(3.2)	.377 (.686)
	대졸	179	58(32.4)	95(53.1)	19(10.6)	7(3.9)	
	대학원이상	8	4(50.0)	3(37.5)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58(34.9)	82(49.4)	20(12.0)	6(3.6)	1.038 (.355)
	비정규직 취업	167	53(31.7)	86(51.5)	19(11.4)	9(5.4)	
	정규직 취업	167	61(36.5)	83(49.7)	21(12.6)	2(1.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6(32.1)	56(50.0)	15(13.4)	5(4.5)	.347 (.707)
	한시적노동	49	16(32.7)	26(53.1)	4(8.2)	3(6.1)	
	비전형노동	6	1(16.7)	4(66.7)	0(0)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56(35.7)	77(49.0)	18(11.5)	6(3.8)	.788 (.376)
	시간제노동	9	2(22.2)	5(55.6)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8(38.0)	56(56.0)	4(4.0)	2(2.0)	1.581 (.178)
	충청권	100	37(37.0)	51(51.0)	7(7.0)	5(5.0)	
	경상권	100	33(33.0)	47(47.0)	17(17.0)	3(3.0)	
	전라권	100	31(31.0)	47(47.0)	19(19.0)	3(3.0)	
	강원/제주권	100	33(33.0)	50(50.0)	13(13.0)	4(4.0)	

*P<.05, **P<.01, ***P<.001

(11) 학교 내에 노동인권 관련 상담 구제 서비스 체계 마련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내에 노동인권 관련 상담 구제 서비스 체계 마련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1.4%(매우: 32.4% + 대체로: 49.0%)로 ‘불필요’ 응답 18.6%(전혀: 3.4% + 별로: 1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2.0%로 10대(80.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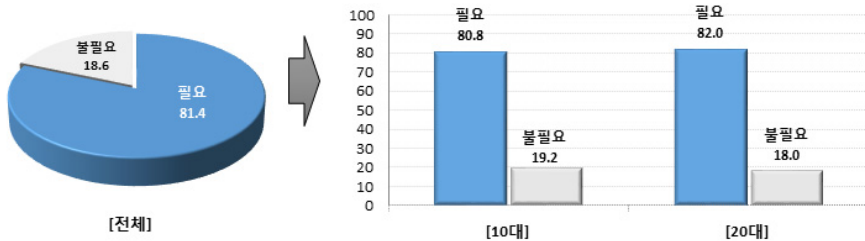


그림 Ⅲ-88. 학교 내에 노동인권 관련 상담 구제 서비스 체계 마련

표 Ⅲ-182 학교 내에 노동인권 관련 상담 구제 서비스 체계 마련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62(32.4)	245(49.0)	76(15.2)	17(3.4)	-
10대	250	87(34.8)	115(46.0)	33(13.2)	15(6.0)	4.427*
20대	250	75(30.0)	130(52.0)	43(17.2)	2(.8)	(.036)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87.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183 학교 내에 노동인권 관련 상담 구제 서비스 체계 마련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62(32.4)	245(49.0)	76(15.2)	17(3.4)	-
성별	남자	250	72(28.8)	116(46.4)	49(19.6)	13(5.2)	.517 (.472)
	여자	250	90(36.0)	129(51.6)	27(10.8)	4(1.6)	
학력별	고졸	313	104(33.2)	151(48.2)	43(13.7)	15(4.8)	.104 (.901)
	대졸	179	56(31.3)	90(50.3)	31(17.3)	2(1.1)	
	대학원이상	8	2(25.0)	4(50.0)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48(28.9)	85(51.2)	24(14.5)	9(5.4)	.989 (.373)
	비정규직 취업	167	59(35.3)	80(47.9)	22(13.2)	6(3.6)	
	정규직 취업	167	55(32.9)	80(47.9)	30(18.0)	2(1.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9(34.8)	55(49.1)	15(13.4)	3(2.7)	.508 (.603)
	한시적노동	49	18(36.7)	23(46.9)	6(12.2)	2(4.1)	
	비전형노동	6	2(33.3)	2(33.3)	1(16.7)	1(16.7)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47(29.9)	77(49.0)	24(15.3)	9(5.7)	3.732 (.055)
	시간제노동	9	1(11.1)	8(88.9)	0(.0)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29(29.0)	52(52.0)	16(16.0)	3(3.0)	.759 (.552)
	충청권	100	37(37.0)	48(48.0)	12(12.0)	3(3.0)	
	경상권	100	35(35.0)	46(46.0)	16(16.0)	3(3.0)	
	전라권	100	26(26.0)	52(52.0)	19(19.0)	3(3.0)	
	강원/제주권	100	35(35.0)	47(47.0)	13(13.0)	5(5.0)	

*P<.05, **P<.01, ***P<.001

(12) 업주와 동료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업주와 동료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90.2%(매우: 58.2% + 대체로: 32.0%)로 ‘불필요’ 응답 9.8%(전혀: 1.4% + 별로: 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90.4%) 및 20대(90.0%) 응답이 90%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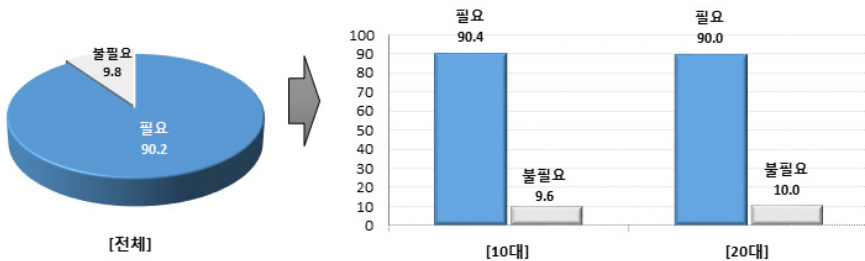


그림 Ⅲ-89. 업주와 동료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표 Ⅲ-184 업주와 동료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91(58.2)	160(32.0)	42(8.4)	7(1.4)	-
10대	250	144(57.6)	82(32.8)	18(7.2)	6(2.4)	.408
20대	250	147(58.8)	78(31.2)	24(9.6)	1(.4)	(.523)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94.4%)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5 업주와 동료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91(58.2)	160(32.0)	42(8.4)	7(1.4)	-
성별	남자	250	125(50.0)	90(36.0)	28(11.2)	7(2.8)	21.920*** (.000)
	여자	250	166(66.4)	70(28.0)	14(5.6)	0(.0)	
학력별	고졸	313	183(58.5)	103(32.9)	20(6.4)	7(2.2)	.090 (.914)
	대졸	179	104(58.1)	54(30.2)	21(11.7)	0(.0)	
	대학원이상	8	4(50.0)	3(37.5)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94(56.6)	56(33.7)	13(7.8)	3(1.8)	.272 (.762)
	비정규직 취업	167	101(60.5)	52(31.1)	11(6.6)	3(1.8)	
	정규직 취업	167	96(57.5)	52(31.1)	18(10.8)	1(.6)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69(61.6)	33(29.5)	8(7.1)	2(1.8)	.221 (.802)
	한시적노동	49	28(57.1)	17(34.7)	3(6.1)	1(2.0)	
	비전형노동	6	4(66.7)	2(33.3)	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90(57.3)	53(33.8)	11(7.0)	3(1.9)	.399 (.528)
	시간제노동	9	4(44.4)	3(33.3)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58(58.0)	32(32.0)	8(8.0)	2(2.0)	.138 (.968)
	충청권	100	57(57.0)	35(35.0)	7(7.0)	1(1.0)	
	경상권	100	61(61.0)	28(28.0)	9(9.0)	2(2.0)	
	전라권	100	56(56.0)	33(33.0)	9(9.0)	2(2.0)	
	강원/제주권	100	59(59.0)	32(32.0)	9(9.0)	0(.0)	

*P<.05, **P<.01, ***P<.001

(13) 고객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객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9.0%(매우: 60.0% + 대체로: 29.0%)로 ‘불필요’ 응답 11.0%(전혀: 2.0% + 별로: 9.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90.0%로 10대(88.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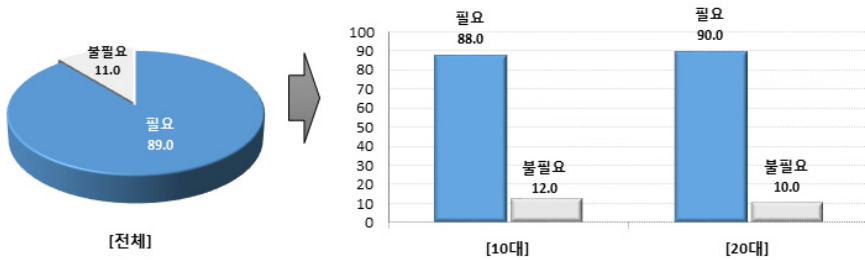


그림 III-90. 고객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표 III-186 고객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300(60.0)	145(29.0)	45(9.0)	10(2.0)	-
10대	250	148(59.2)	72(28.8)	23(9.2)	7(2.8)	1.786
20대	250	152(60.8)	73(29.2)	22(8.8)	3(1.2)	(.182)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92.8%)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187 고객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300(60.0)	145(29.0)	45(9.0)	10(2.0)	-
성별	남자	250	129(51.6)	84(33.6)	30(12.0)	7(2.8)	14.834*** (.000)
	여자	250	171(68.4)	61(24.4)	15(6.0)	3(1.2)	
학력별	고졸	313	188(60.1)	89(28.4)	27(8.6)	9(2.9)	.265 (.768)
	대졸	179	107(59.8)	53(29.6)	18(10.1)	1(.6)	
	대학원이상	8	5(62.5)	3(37.5)	0(.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94(56.6)	51(30.7)	17(10.2)	4(2.4)	.840 (.432)
	비정규직 취업	167	105(62.9)	47(28.1)	12(7.2)	3(1.8)	
	정규직 취업	167	101(60.5)	47(28.1)	16(9.6)	3(1.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75(67.0)	26(23.2)	9(8.0)	2(1.8)	.657 (.520)
	한시적노동	49	26(53.1)	19(38.8)	3(6.1)	1(2.0)	
	비전형노동	6	4(66.7)	2(33.3)	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90(57.3)	48(30.6)	15(9.6)	4(2.5)	.063 (.802)
	시간제노동	9	4(44.4)	3(33.3)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57(57.0)	29(29.0)	10(10.0)	4(4.0)	.589 (.671)
	충청권	100	61(61.0)	30(30.0)	8(8.0)	1(1.0)	
	경상권	100	63(63.0)	27(27.0)	7(7.0)	3(3.0)	
	전라권	100	55(55.0)	33(33.0)	12(12.0)	0(.0)	
	강원/제주권	100	64(64.0)	26(26.0)	8(8.0)	2(2.0)	

*P<.05, **P<.01, ***P<.001

(14)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7.4%(매우: 65.0% + 대체로: 22.4%)로 ‘불필요’ 응답 12.6%(전혀: 3.0% + 별로: 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9.6%로 10대(85.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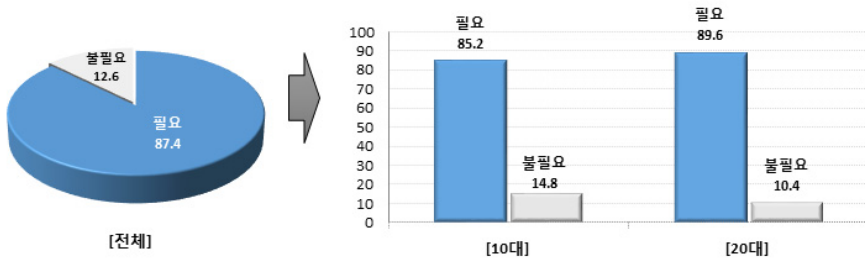


그림 III-91.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의 보호

표 III-188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의 보호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325(65.0)	112(22.4)	48(9.6)	15(3.0)	-
10대	250	160(64.0)	53(21.2)	27(10.8)	10(4.0)	5.279*
20대	250	165(66.0)	59(23.6)	21(8.4)	5(2.0)	(.022)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93.2%), 대졸(91.1%), 현재 취업상태가 비정규직 취업(93.4%)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9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의 보호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325(65.0)	112(22.4)	48(9.6)	15(3.0)	-
성별	남자	250	139(55.6)	65(26.0)	36(14.4)	10(4.0)	35.166*** (.000)
	여자	250	186(74.4)	47(18.8)	12(4.8)	5(2.0)	
학력별	고졸	313	206(65.8)	61(19.5)	34(10.9)	12(3.8)	.361 (.697)
	대졸	179	113(63.1)	50(27.9)	13(7.3)	3(1.7)	
	대학원이상	8	6(75.0)	1(12.5)	1(12.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107(64.5)	28(16.9)	25(15.1)	6(3.6)	1.587 (.206)
	비정규직 취업	167	110(65.9)	46(27.5)	8(4.8)	3(1.8)	
	정규직 취업	167	108(64.7)	38(22.8)	15(9.0)	6(3.6)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76(67.9)	31(27.7)	4(3.6)	1(9)	.954 (.387)
	한시적노동	49	31(63.3)	12(24.5)	4(8.2)	2(4.1)	
	비전형노동	6	3(50.0)	3(50.0)	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101(64.3)	26(16.6)	24(15.3)	6(3.8)	1.072 (.302)
	시간제노동	9	6(66.7)	2(22.2)	1(11.1)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67(67.0)	18(18.0)	12(12.0)	3(3.0)	1.243 (.292)
	충청권	100	66(66.0)	25(25.0)	7(7.0)	2(2.0)	
	경상권	100	71(71.0)	20(20.0)	7(7.0)	2(2.0)	
	전라권	100	60(60.0)	23(23.0)	11(11.0)	6(6.0)	
	강원/제주권	100	61(61.0)	26(26.0)	11(11.0)	2(2.0)	

*P<.05, **P<.01, ***P<.001

(15)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사기구 참여 보장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사기구 참여 보장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78.0%(매우: 33.0% + 대체로: 45.0%)로 ‘불필요’ 응답 22.0%(전혀: 2.2% + 별로: 19.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78.8%) 및 20대(77.2%) 응답이 77%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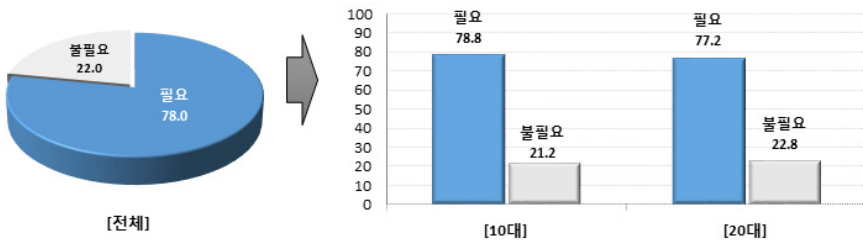


그림 III-92.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사기구 참여 보장

표 III-190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사기구 참여 보장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65(33.0)	225(45.0)	99(19.8)	11(2.2)	-
10대	250	92(36.8)	105(42.0)	44(17.6)	9(3.6)	4.711*
20대	250	73(29.2)	120(48.0)	55(22.0)	2(.8)	(.030)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91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사기구 참여 보장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65(33.0)	225(45.0)	99(19.8)	11(2.2)	-
성별	남자	250	78(31.2)	111(44.4)	54(21.6)	7(2.8)	.003 (.959)
	여자	250	87(34.8)	114(45.6)	45(18.0)	4(1.6)	
학력별	고졸	313	111(35.5)	134(42.8)	57(18.2)	11(3.5)	.384 (.682)
	대졸	179	52(29.1)	88(49.2)	39(21.8)	0(0)	
	대학원이상	8	2(25.0)	3(37.5)	3(37.5)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54(32.5)	73(44.0)	32(19.3)	7(4.2)	.804 (.448)
	비정규직 취업	167	58(34.7)	77(46.1)	31(18.6)	1(6)	
	정규직 취업	167	53(31.7)	75(44.9)	36(21.6)	3(1.8)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8(33.9)	49(43.8)	25(22.3)	0(0)	1.290 (.278)
	한시적노동	49	20(40.8)	23(46.9)	5(10.2)	1(2.0)	
	비전형노동	6	0(0)	5(83.3)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53(33.8)	69(43.9)	28(17.8)	7(4.5)	.037 (.848)
	시간제노동	9	1(11.1)	4(44.4)	4(44.4)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1(31.0)	47(47.0)	20(20.0)	2(2.0)	.395 (.812)
	충청권	100	38(38.0)	42(42.0)	17(17.0)	3(3.0)	
	경상권	100	33(33.0)	48(48.0)	18(18.0)	1(1.0)	
	전라권	100	32(32.0)	42(42.0)	24(24.0)	2(2.0)	
	강원/제주권	100	31(31.0)	46(46.0)	20(20.0)	3(3.0)	

*P<.05, **P<.01, ***P<.001

(16)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인력 및 역할 확대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인력 및 역할 확대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5.4%(매우: 38.8% + 대체로: 46.6%)로 ‘불필요’ 응답 14.6%(전혀: 3.2% + 별로: 1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6.8%로 10대(84.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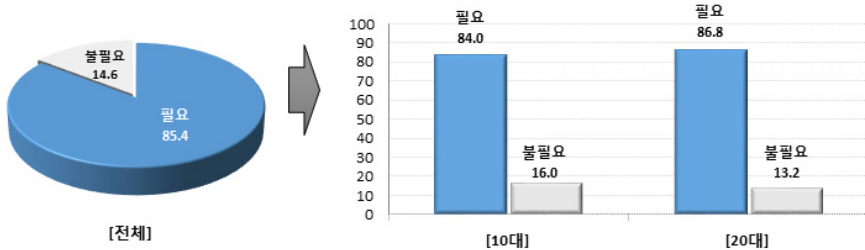


그림 III-93.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인력 및 역할 확대

표 III-192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인력 및 역할 확대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94(38.8)	233(46.6)	57(11.4)	16(3.2)	-
10대	250	101(40.4)	109(43.6)	30(12.0)	10(4.0)	2.136
20대	250	93(37.2)	124(49.6)	27(10.8)	6(2.4)	(.144)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88.4%)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93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인력 및 역할 확대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94(38.8)	233(46.6)	57(11.4)	16(3.2)	-
성별	남자	250	83(33.2)	123(49.2)	30(12.0)	14(5.6)	.023 (.880)
	여자	250	111(44.4)	110(44.0)	27(10.8)	2(.8)	
학력별	고졸	313	125(39.9)	142(45.4)	33(10.5)	13(4.2)	.197 (.821)
	대졸	179	66(36.9)	86(48.0)	24(13.4)	3(1.7)	
	대학원이상	8	3(37.5)	5(62.5)	0(.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66(39.8)	73(44.0)	20(12.0)	7(4.2)	.983 (.375)
	비정규직 취업	167	58(34.7)	82(49.1)	23(13.8)	4(2.4)	
	정규직 취업	167	70(41.9)	78(46.7)	14(8.4)	5(3.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7(33.0)	56(50.0)	16(14.3)	3(2.7)	.248 (.780)
	한시적노동	49	19(38.8)	23(46.9)	6(12.2)	1(2.0)	
	비전형노동	6	2(33.3)	3(50.0)	1(16.7)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64(40.8)	66(42.0)	20(12.7)	7(4.5)	3.574 (.060)
	시간제노동	9	2(22.2)	7(77.8)	0(.0)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4(34.0)	51(51.0)	12(12.0)	3(3.0)	.954 (.433)
	충청권	100	36(36.0)	53(53.0)	8(8.0)	3(3.0)	
	경상권	100	43(43.0)	44(44.0)	11(11.0)	2(2.0)	
	전라권	100	36(36.0)	44(44.0)	15(15.0)	5(5.0)	
	강원/제주권	100	45(45.0)	41(41.0)	11(11.0)	3(3.0)	

*P<.05, **P<.01, ***P<.001

(17)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법 위반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법 위반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7.8%(매우: 49.6% + 대체로: 38.2%)로 ‘불필요’ 응답 12.2%(전혀: 1.8% + 별로: 1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87.6%) 및 20대(88.0%) 응답이 88%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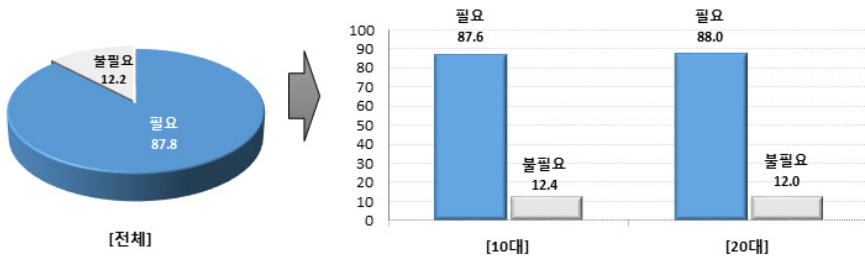


그림 11-9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법 위반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표 11-19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법 위반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48(49.6)	191(38.2)	52(10.4)	9(1.8)	-
10대	250	125(50.0)	94(37.6)	25(10.0)	6(2.4)	.0302
20대	250	123(49.2)	97(38.8)	27(10.8)	3(1.2)	(.583)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93.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9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법 위반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48(49.6)	191(38.2)	52(10.4)	9(1.8)	-
성별	남자	250	108(43.2)	97(38.8)	40(16.0)	5(2.0)	5.851* (.016)
	여자	250	140(56.0)	94(37.6)	12(4.8)	4(1.6)	
학력별	고졸	313	152(48.6)	120(38.3)	33(10.5)	8(2.6)	.729 (.483)
	대졸	179	92(51.4)	69(38.5)	17(9.5)	1(.6)	
	대학원이상	8	4(50.0)	2(25.0)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79(47.6)	61(36.7)	25(15.1)	1(.6)	.952 (.387)
	비정규직 취업	167	78(46.7)	71(42.5)	14(8.4)	4(2.4)	
	정규직 취업	167	91(54.5)	59(35.3)	13(7.8)	4(2.4)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50(44.6)	52(46.4)	7(6.3)	3(2.7)	.156 (.856)
	한시적노동	49	25(51.0)	16(32.7)	7(14.3)	1(2.0)	
	비전형노동	6	3(50.0)	3(50.0)	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76(48.4)	57(36.3)	23(14.6)	1(.6)	.247 (.620)
	시간제노동	9	3(33.3)	4(44.4)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50(50.0)	36(36.0)	12(12.0)	2(2.0)	.644 (.631)
	충청권	100	50(50.0)	40(40.0)	8(8.0)	2(2.0)	
	경상권	100	52(52.0)	36(36.0)	11(11.0)	1(1.0)	
	전라권	100	44(44.0)	40(40.0)	14(14.0)	2(2.0)	
	강원/제주권	100	52(52.0)	39(39.0)	7(7.0)	2(2.0)	

*P<.05, **P<.01, ***P<.001

(18)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 서비스 실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 서비스 실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5.0%(매우: 41.2% + 대체로: 43.8%)로 ‘불필요’ 응답 15.0%(전혀: 2.0% + 별로: 1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86.0%로 20대(84.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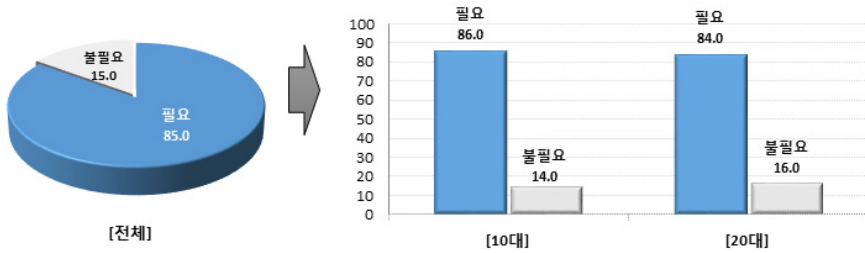


그림 III-95.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 서비스 실시

표 III-196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 서비스 실시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06(41.2)	219(43.8)	65(13.0)	10(2.0)	-
10대	250	104(41.6)	111(44.4)	29(11.6)	6(2.4)	.014
20대	250	102(40.8)	108(43.2)	36(14.4)	4(1.6)	(.907)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9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시간제노동(55.5%)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97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 서비스 실시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06(41.2)	219(43.8)	65(13.0)	10(2.0)	-
성별	남자	250	95(38.0)	105(42.0)	42(16.8)	8(3.2)	2.438
	여자	250	111(44.4)	114(45.6)	23(9.2)	2(.8)	(.119)
학력별	고졸	313	130(41.5)	139(44.4)	37(11.8)	7(2.2)	.085
	대졸	179	72(40.2)	78(43.6)	26(14.5)	3(1.7)	(.919)
	대학원이상	8	4(50.0)	2(25.0)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70(42.2)	70(42.2)	23(13.9)	3(1.8)	.683
	비정규직 취업	167	60(35.9)	84(50.3)	18(10.8)	5(3.0)	(.505)
	정규직 취업	167	76(45.5)	65(38.9)	24(14.4)	2(1.2)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38(33.9)	58(51.8)	13(11.6)	3(2.7)	.568
	한시적노동	49	19(38.8)	23(46.9)	5(10.2)	2(4.1)	(.568)
	비전형노동	6	3(50.0)	3(50.0)	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69(43.9)	66(42.0)	19(12.1)	3(1.9)	.087
	시간제노동	9	1(11.1)	4(44.4)	4(44.4)	0(0)	(.768)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9(39.0)	43(43.0)	17(17.0)	1(1.0)	.197 (.940)
	충청권	100	44(44.0)	43(43.0)	10(10.0)	3(3.0)	
	경상권	100	41(41.0)	47(47.0)	10(10.0)	2(2.0)	
	전라권	100	40(40.0)	45(45.0)	12(12.0)	3(3.0)	
	강원/제주권	100	42(42.0)	41(41.0)	16(16.0)	1(1.0)	

*P<.05, **P<.01, ***P<.001

(19)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6.2%(매우: 42.8% + 대체로: 43.4%)로 ‘불필요’ 응답 13.8%(전혀: 1.6% + 별로: 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88.4%로 10대(84.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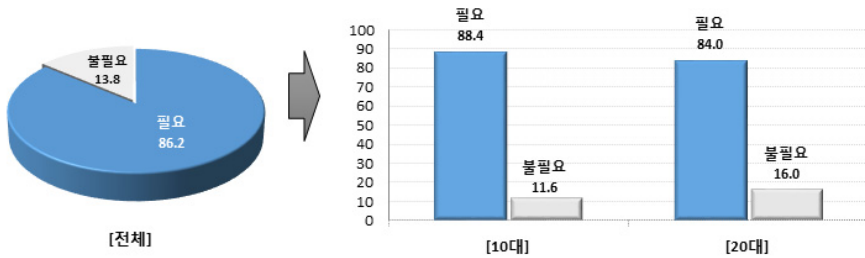


그림 III-96.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

표 III-198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14(42.8)	217(43.4)	61(12.2)	8(1.6)	-
10대	250	110(44.0)	111(44.4)	25(10.0)	4(1.6)	.446
20대	250	104(41.6)	106(42.4)	36(14.4)	4(1.6)	(.505)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9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199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14(42.8)	217(43.4)	61(12.2)	8(1.6)	-
성별	남자	250	98(39.2)	108(43.2)	37(14.8)	7(2.8)	1.487 (.223)
	여자	250	116(46.4)	109(43.6)	24(9.6)	1(4)	
학력별	고졸	313	138(44.1)	136(43.5)	35(11.2)	4(1.3)	2.432 (.089)
	대졸	179	76(42.5)	75(41.9)	24(13.4)	4(2.2)	
	대학원이상	8	0(0)	6(75.0)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70(42.2)	71(42.8)	22(13.3)	3(1.8)	.126 (.882)
	비정규직 취업	167	72(43.1)	73(43.7)	18(10.8)	4(2.4)	
	정규직 취업	167	72(43.1)	73(43.7)	21(12.6)	1(6)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8(42.9)	48(42.9)	14(12.5)	2(1.8)	.028 (.973)
	한시적노동	49	22(44.9)	21(42.9)	4(8.2)	2(4.1)	
	비전형노동	6	2(33.3)	4(66.7)	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69(43.9)	66(42.0)	19(12.1)	3(1.9)	.700 (.404)
	시간제노동	9	1(11.1)	5(55.6)	3(33.3)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40(40.0)	46(46.0)	13(13.0)	1(1.0)	1.071 (.370)
	충청권	100	45(45.0)	44(44.0)	9(9.0)	2(2.0)	
	경상권	100	50(50.0)	37(37.0)	12(12.0)	1(1.0)	
	전라권	100	34(34.0)	50(50.0)	14(14.0)	2(2.0)	
	강원/제주권	100	45(45.0)	40(40.0)	13(13.0)	2(2.0)	

*P<.05, **P<.01, ***P<.001

(20) 고용주 및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강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용주 및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강화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88.2%(매우: 46.8% + 대체로: 41.4%)로 ‘불필요’ 응답 11.8%(전혀: 2.2% + 별로: 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88.8%) 및 20대(87.6%) 응답이 88%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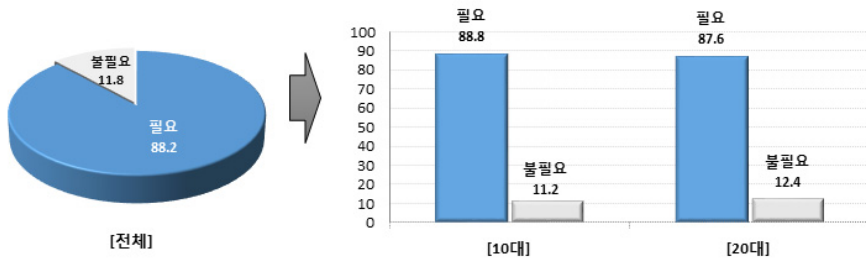


그림 Ⅲ-97. 고용주 및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강화

표 Ⅲ-200 고용주 및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강화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34(46.8)	207(41.4)	48(9.6)	11(2.2)	-
10대	250	125(50.0)	97(38.8)	21(8.4)	7(2.8)	.565
20대	250	109(43.6)	110(44.0)	27(10.8)	4(1.6)	(.452)

*P<.05, **P<.01, ***P<.001

필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여자(94.4%)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01 고용주 및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강화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34(46.8)	207(41.4)	48(9.6)	11(2.2)	-
성별	남자	250	106(42.4)	99(39.6)	37(14.8)	8(3.2)	8.359** (.004)
	여자	250	128(51.2)	108(43.2)	11(4.4)	3(1.2)	
학력별	고졸	313	152(48.6)	126(40.3)	27(8.6)	8(2.6)	.364 (.695)
	대졸	179	77(43.0)	80(44.7)	19(10.6)	3(1.7)	
	대학원이상	8	5(62.5)	1(12.5)	2(25.0)	0(.0)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66	86(51.8)	58(34.9)	19(11.4)	3(1.8)	.576 (.562)
	비정규직 취업	167	68(40.7)	81(48.5)	15(9.0)	3(1.8)	
	정규직 취업	167	80(47.9)	68(40.7)	14(8.4)	5(3.0)	
현재 비정규직 취업인 경우	시간제노동	112	43(38.4)	56(50.0)	11(9.8)	2(1.8)	1.047 (.353)
	한시적노동	49	21(42.9)	23(46.9)	4(8.2)	1(2.0)	
	비전형노동	6	4(66.7)	2(33.3)	0(.0)	0(.0)	
과거 취업형태 (현재 미취업)	취업경험없음	157	82(52.2)	55(35.0)	17(10.8)	3(1.9)	.093 (.761)
	시간제노동	9	4(44.4)	3(33.3)	2(22.2)	0(.0)	
거주 지역별	수도권	100	38(38.0)	48(48.0)	12(12.0)	2(2.0)	.671 (.612)
	충청권	100	49(49.0)	40(40.0)	9(9.0)	2(2.0)	
	경상권	100	48(48.0)	40(40.0)	11(11.0)	1(1.0)	
	전라권	100	51(51.0)	36(36.0)	10(10.0)	3(3.0)	
	강원/제주권	100	48(48.0)	43(43.0)	6(6.0)	3(3.0)	

*P<.05, **P<.01, ***P<.001

○———— 제4장 정책 제언 및 결론

- 1. 정책 비전 및 분야
- 2. 정책 제언
- 3. 결론

1. 정책 비전 및 분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근로환경에 대한 선행연구와 정책동향, 그리고 설문조사를 근거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이란 비전 하에 다음과 같이 5개 정책분야에서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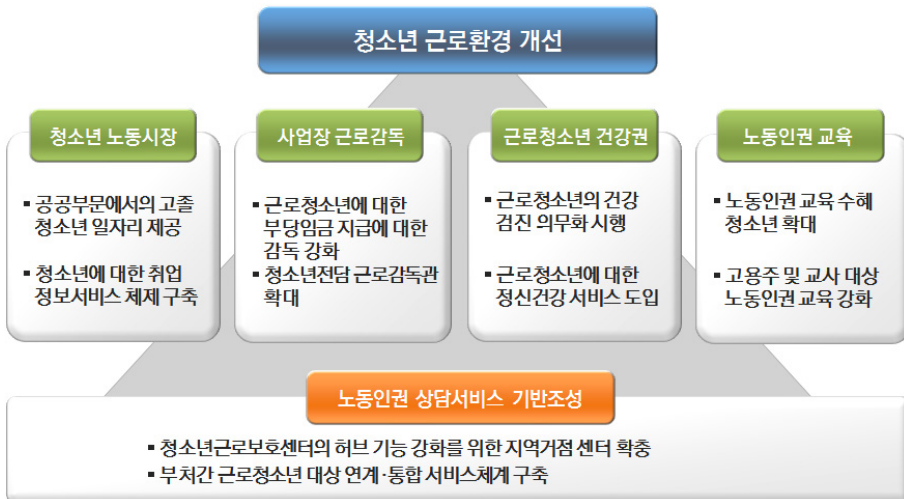


그림 IV-1.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정책 비전 및 분야별 정책과제

4)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정책 제언

1) 청소년 노동시장 분야

(1) 공공부문에서의 고졸 청소년 일자리 제공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 취업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대 대졸생 이상의 연령층을 중점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교졸업자나 대학중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 2012년 이후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최근 60%대로 하락하는 등 대학 미진학자도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고졸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공공부문에서도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제공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불필요 응답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10대가 20대 보다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제공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69(33.8)	241(48.2)	76(15.2)	14(2.8)	-
10대	250	115(46.0)	105(42.0)	24(9.6)	6(2.4)	7.158**
20대	250	54(21.6)	136(54.4)	52(20.8)	8(3.2)	(.008)

*P<.05, **P<.01, ***P<.001

다. 추진내용

공무원 공채의 경우 이미 학력 제한이 없지만 기술자격 소지 고졸자, 마이스터 고교 졸업생에 대한 특별채용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학력 철폐가 아니라 고졸생에 대한 별도의 직군과 채용 인원을 배정하는 방식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단시간 비정규직 근로의 경우도 고졸생 직군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공공부문의 일자리 문제는 여러 부처가 관할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청소년에 대한 취업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의 경우 대학교육 단계에서 전공별 취업정보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학의 취업지원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기준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경우 취업관련 정보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한 사설 취업정보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의 취업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체계적인 취업정보서비스에 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대상 일자리 정보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응답이 불필요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가 20대 보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표 IV-2 청소년 대상 일자리 정보서비스 확대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73(34.6)	255(51.0)	60(12.0)	12(2.4)	-
10대	250	110(44.0)	110(44.0)	25(10.0)	5(2.0)	11.519** (.001)
20대	250	63(25.2)	145(58.0)	35(14.0)	7(2.8)	

*P<.05, **P<.01, ***P<.001

다. 추진내용

청소년에 대한 취업정보서비스는 콘텐츠 측면과 시스템 측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취업정보를 수집, 분류, 체계화하는 콘텐츠 개발 사업과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취업정보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정보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사업평가도 병행하여 사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라. 추진체계

취업정보서비스의 체계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중앙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 교육부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담당하고 지방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거점 서비스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전체적인 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분야

(1) 근로청소년에 대한 부당임금 지급에 대한 감독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우리 사회의 청소년 노동환경과 관련하여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7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부당근로 문제의 상당부분이 임금체불, 임금지연지급, 계약임금이나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임금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적정한 임금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났으며, 연령 별로는 20대가 10대에 비해 다소 높기는 하나 비슷한 수준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표 IV-3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76(55.2)	164(32.8)	51(10.2)	9(1.8)	-
10대	250	144(57.6)	73(29.2)	28(11.2)	5(2.0)	1.067 (.302)
20대	250	132(52.8)	91(36.4)	23(9.2)	4(1.6)	

*P<.05, **P<.01, ***P<.001

다. 추진내용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부당 임금 지급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최저임금의 현실화나 노동조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해 적법한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환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갑의 역할을 하는 고용주가 사회적 약자층인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 임금지급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근로감독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청소년 분과 소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관련 근로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갖고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역할을 분담하여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고용노동부는 2012년 12월부터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와 성희롱 사건 대처를 위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제도가 노동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효과를 낼 만큼 적절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청소년들의 적법한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직접적인 대응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인력 및 역할 확대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0대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4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인력 및 역할 확대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94(38.8)	233(46.6)	57(11.4)	16(3.2)	-
10대	250	101(40.4)	109(43.6)	30(12.0)	10(4.0)	2.136 (.144)
20대	250	93(37.2)	124(49.6)	27(10.8)	6(2.4)	

*P<.05, **P<.01, ***P<.001

다. 추진내용

2012년부터 추진된 청소년 권익보호 및 사업장내 성희롱 사건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규모를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희롱 사건을 병행하여 대처하기 위해 가급적 여성감독관을 지정하고 신고센터에 담당교사의 입회하에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동행서비스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의 지정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라. 추진체계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의 확대 운영은 근로감독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근로청소년 건강권 분야

(1) 근로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시행

가.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의 근로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비정규직이고 그 중에서도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 근로청소년의 사업장 내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한 사회가 당연히 짊어져야 할 책무이고, 따라서 노동현장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권도 제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불필요하다는 응답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가 10대 보다 필요 응답이 다소 높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5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56(31.2)	258(51.6)	78(15.6)	8(1.6)	-
10대	250	83(33.2)	120(48.0)	44(17.6)	3(1.2)	2.070 (.151)
20대	250	73(29.2)	138(55.2)	34(13.6)	5(2.0)	

*P<.05, **P<.01, ***P<.001

다. 추진내용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고용주에게 이를 시행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의 경우는 이러한 건강검진 의무시행이라는 법적 보호의 밖에 위치해 있으며 그렇다 보니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환경과 근로계약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근로청소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를 국가 혹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라. 추진체계

근로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화에 대한 입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지원예산 확보 혹은 고용보험기금의 활용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근로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도입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설문조사 중에서 근로청소년 관련 정부정책이 요구되는 중점분야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의 보호, 업주와 동료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고객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와 같은 근로상황은 청소년들이 심각한 정서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나. 추진근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모두 84%대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6 일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185(37.0)	238(47.6)	63(12.6)	14(2.8)	-
10대	250	101(40.4)	111(44.4)	29(11.6)	9(3.6)	2.797 (.095)
20대	250	84(33.6)	127(50.8)	34(13.6)	5(2.0)	

*P<.05, **P<.01, ***P<.001

다. 추진내용

근로청소년이 사업장 내에서 겪는 여러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상담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 추진체계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노동인권 교육 분야

(1) 노동인권 교육 수혜 청소년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는 청소년 스스로에게 매우 중요하다. 미래에 사회인으로서 진출할 예비 근로자로서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근로청소년 자신이 어떤 근로권익이 있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권익이 침해 되었을 때의 제도적 해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최근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의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는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의 첩경이 된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노동권 관련하여 학교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3명 중 2명이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아직 30% 가까이는 전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또한 학교 이외의 곳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과반수 이상이 전혀 교육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학교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χ^2 (유의도)
전체	500	82(16.4)	274(54.8)	144(28.8)	-
10대	250	60(24.0)	137(54.8)	53(21.2)	2.750 (.098)
20대	250	22(8.8)	137(54.8)	91(36.4)	

*P<.05, **P<.01, ***P<.001

표 IV-8 학교 이외의 곳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χ^2 (유의도)
전체	500	52(10.4)	192(38.4)	256(51.2)	-
10대	250	33(13.2)	88(35.2)	129(51.6)	5.323* (.021)
20대	250	19(7.6)	104(41.6)	127(50.8)	

*P<.05, **P<.01, ***P<.001

다. 추진내용

현재 노동인권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부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외에서 학업중단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사업도 실시하여 교육수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추진체계

노동인권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주관이 되어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교육부의 학업중단예방센터 등이 협력기관으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 고용주 및 교사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근로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근로환경 둘러싼 주요 역할은 기성세대들이다. 즉, 고용관계의 갑인 고용주 그리고 가장 가깝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은 학교 교사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이들을 학교에서 보호하는 교사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는 중요하다.

나. 추진근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용주 및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강화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0% 가까이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표 IV-9 고용주 및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강화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34(46.8)	207(41.4)	48(9.6)	11(2.2)	-
10대	250	125(50.0)	97(38.8)	21(8.4)	7(2.8)	.565 (.452)
20대	250	109(43.6)	110(44.0)	27(10.8)	4(1.6)	

*P<.05, **P<.01, ***P<.001

다. 추진내용

고용주와 학교교사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고용주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갖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여성가족부는 교육부(혹은 시·도교육청)의 협력 하에 학교 교사에 대한 노동인권 연수를 직무연수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협력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5) 노동인권 상담서비스 기반조성 분야

(1)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 센터 확충

가. 필요성 및 목적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실행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경우 근로청소년에 대한 중앙지원단으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지원본부 4개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만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근로청소년 보호사업을 하는데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의 인지도 조사 결과, 상담서비스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0% 가까이 나타났으나 대신 이와 같은 상담서비스를 어디서 하는지에 대한 인지 정도는 30%대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0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구분		사례수 [명]	긍정 (인지, 도움)	부정 (비인지, 비도움)	X ² / F (유의도)
인지 여부	전체	500	167(33.4)	333(66.6)	-
	10대	250	99(39.6)	151(60.4)	8.640** (.003)
	20대	250	68(27.2)	182(72.8)	
도움 정도	전체	500	390(78.0)	110(22.0)	-
	10대	250	206(82.4)	44(17.6)	3.100 (.079)
	20대	250	184(73.6)	66(26.4)	

*P<.05, **P<.01, ***P<.001

다. 추진내용

전국적으로 근로청소년에 대한 근로보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현행 중앙지원단과 지역지원본부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노동인권 상담서비스의 기능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지원본부를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여 지역의 노동인권 상담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라. 추진체계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부처간 근로청소년 대상 연계·통합 서비스체계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생활임금을 고려한 최저임금 책정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문제도 애초에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도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도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관계부처간의 연계와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추진근거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 서비스 실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 모두 같은 수준으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11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 서비스 실시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F (유의도)
전체	500	206(41.2)	219(43.8)	65(13.0)	10(2.0)	-
10대	250	104(41.6)	111(44.4)	29(11.6)	6(2.4)	.014
20대	250	102(40.8)	108(43.2)	36(14.4)	4(1.6)	(.907)

*P<.05, **P<.01, ***P<.001

다. 추진내용

청소년정책의 경우 정부의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가 수립하고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별도로 수립하여 여성가족부가 총괄·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책사업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총괄 부처가 되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관련 부서 국장급 책임자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계 및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와 함께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제언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인식, 실태, 요구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환경, 정책대안 등을 중심으로 시사점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로서 청소년 근로환경에 관한 선행연구와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정책 동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만 15세부터 24세까지의 500명 내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정도인데, 헌법의 경우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반면,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한다’ 조항은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경우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장/사업주는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반면, ‘임금의 시효는 3년이다’, ‘노동자가 사망/퇴직 시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조항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18세 미만 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고용을 금지한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반면, ‘18세 미만자의 야간, 휴일 노동 제한, 본인 동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가능하다’ 조항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관련법령의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고용을 금지한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반면, ‘(청소년기본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한 청소년 권리 홍보/교육, 근로기준법에 정한 청소년노동자 권리 교육 및 상담을 한다’ 조항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타 노동관련 법령의 경우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 조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반면, ‘(최저임금법)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감액 가능하고, 단순응답자 특성별로 큰 업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는다’ 조항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근로 경험과 관련한 인식 및 실제에 있어서 노동문제에 관한 인식의 경우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등의 순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나타났다. 노동문제 관련 실제 경험의 경우는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등의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권 관련 교육·정보 경험의 경우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 접함’, ‘학교에서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음’,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접 관련 정보 찾음’ 등의 순으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련 피해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인식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나 노동관서에 도움 요청’,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 ‘관련 상담 등을 해주는 기관에 도움 요청’ 등의 순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도움정도에 있어서, 중앙부처 정책에 대한 이해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역할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정도의 경우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인지도 및 도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원’ 인지도 및 도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역할에 대한 인지도와 도움정도의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 대상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 인지도 및 도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의 보호’, ‘업주와 동료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고객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등의 순으로 정부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이란 비전하에 총 5개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 노동시장 분야에서 공공부문에서의 고졸 청소년 일자리 제공, 청소년에 대한 취업 정보서비스 체제 구축, 둘째,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분야에서 근로청소년에 대한 부당임금 지급에 대한 감독 강화,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셋째, 근로청소년 건강권 분야에서 근로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시행, 근로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도입, 넷째, 노동인권 교육 분야에서 노동인권 교육 수혜 청소년 확대, 고용주 및 교사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 다섯째, 노동인권 상담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의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 센터 확충, 부처 간 근로청소년 대상 연계·통합 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노동문제는 학교교육과 대학입시라는 교육문제에 밀려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과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근대 산업화 이후에 청소년의 근로조건과 노동인권 문제는 모든 나라의 중요한 노동문제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도 청년층 취업난 문제와 더불어 대학입학지원율 감소 등 예전보다 빠른 노동시장 진입현상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단기간에 소액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수시 연구과제로서 폭넓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정책제언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8). 2018년판 고용노동백서.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4).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 추진방안.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연수원 (2019). 2019년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고용노동교육 과정안내. 광주: 고용노동연수원.
- 김동재 (2007).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130. 서울: 시대의 창.
-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최은진, 이봉주, 김선숙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김지경, 연보라, 정은진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경, 이상준 (2015). 청소년 근로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2005).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서울: 노동부.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안선영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16(2014.08.), 1-11.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Ⅰ.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선영, 황여정, 이수정, 이로사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9).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이제 그만!"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가 해결해 드립니다. 여성가족부, 2019.01.30.
- 여성가족부 (2018a).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b). 정책뉴스: '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여성가족부, 2018.03.08.
- 여성가족부 (2017). "근로청소년 대상 부당행위 꿈쩍 마!"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 실시. 여성가족부, 2017.02.17.
-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유성렬, 최창욱 (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이종원, 유한구, 채창균, 오승근, 김윤나 (2016).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9). 2019 청소년 통계. 통계청·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5.01.
- 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여정, 김지경, 이운주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 부 록

— 청소년 근로환경에 관한 설문
조사지

부 록

청소년 근로환경에 관한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실태를 알아보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사회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되며, 응답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밝혀드립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 문항에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9

※ 문의사항 : 실사담당자 : (☎ - -)

1. 배경문항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재학중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재학중
- ⑤ 고등학교 졸업 ⑥ 대학교 재학중 ⑦ 대학교 졸업 ⑧ 대학원 재학중
- ⑨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 ⑨ 경기 ⑩ 충북 ⑪ 충남 ⑫ 강원 ⑬ 경북 ⑭ 경남 ⑮ 전북 ⑯ 전남
- ⑰ 제주

5. 귀하의 현재 취업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취업/구직중
- ② 비정규직 취업 : 시간제노동(단시간, 파트타임 등)
- ③ 비정규직 취업 : 한시적노동(기간제, 계약직 등)
- ④ 비정규직 취업 : 비전형노동(파견, 용역, 특수형태 노동, 가내, 호출노동 등)
- ⑤ 정규직 취업

6. [5번 문항에 '①미취업'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귀하의 과거 취업경험은 어떻게 되십니까? (복수의 취업경험이 있다면 가장 오래 근무한 곳을 기준으로 응답)

- ① 미취업(취업한 경험 없음)
- ② 비정규직 취업 : 시간제노동(단시간, 파트타임 등)
- ③ 비정규직 취업 : 한시적노동(기간제, 계약직 등)
- ④ 비정규직 취업 : 비전형노동(파견, 용역, 특수형태 노동, 가내, 호출노동 등)
- ⑤ 정규직 취업

II.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정도

☐ 노동환경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 있는 다음과 같은 보호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항목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1)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노동조건을 기준으로 정한다	4	3	2	1
(2)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4	3	2	1
(3)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4	3	2	1
(4) 연소자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한다	4	3	2	1

☐ 노동환경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있는 다음과 같은 보호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항목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1)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	4	3	2	1
(2)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을 하지 못한다	4	3	2	1
(3) 누구든지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4	3	2	1

□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계약 및 임금지급’ 관련 다음과 같은 보호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항목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1) 사장 또는 사업주는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4	3	2	1
(2)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조건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4	3	2	1
(3)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한다	4	3	2	1
(4)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 금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해지, 서면 명시 및 교부한다	4	3	2	1
(5)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3	2	1
(6) 임금지급은 월 1회 이상 전체 금액을 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지급한다	4	3	2	1
(7)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해 가산 임금을 지급한다	4	3	2	1
(8)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4	3	2	1
(9) 임금의 시효는 3년이다	4	3	2	1

□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시간 및 건강’ 관련 다음과 같은 보호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항목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1) 18세 미만자의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원칙, 초과 노동은 하루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제한한다	4	3	2	1
(2) 18세 미만자의 야간, 휴일 노동 제한, 본인 동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로 가능하다	4	3	2	1
(3)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60분 이상 자유로운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4	3	2	1
(4)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4	3	2	1
(5)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4	3	2	1
(6) 18세 미만 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함 업무의 고용을 금지한다	4	3	2	1
(7)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4	3	2	1
(8) 노동법 위반 사실이 있을 때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3	2	1
(9) 감독 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4	3	2	1

□ 「청소년 관련법령」에 있는 ‘청소년 근로’ 관련 다음과 같은 보호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항목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1) (청소년기본법)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청소년노동자(9세 이상 24세 이하)에 대한 특별 보호 및 필요 시책을 마련한다	4	3	2	1
(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신고를 의무화한다	4	3	2	1
(3)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노동자 기본권 침해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를 금지한다	4	3	2	1
(4) (청소년기본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정한 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 근로기준법에 정한 청소년노동자 권리 교육 및 상담을 한다	4	3	2	1
(5)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고용을 금지한다	4	3	2	1
(6)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	4	3	2	1

□ 「기타 노동관련 법령」에 있는 다음과 같은 보호 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항목	매우 잘 알고있다	알고있는 편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1) (기간제법)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4	3	2	1
(2) (최저임금법) 1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감액 가능하고, 단순업무 종사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않는다	4	3	2	1
(3)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	4	3	2	1
(4)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중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4	3	2	1
(5) (직업안정법)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비치한다	4	3	2	1

III. 근로 경험과 관련한 인식 및 경험

□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자주 있다	간혹 있다	전혀 없다
(1)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	2	1
(2)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3	2	1
(3)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3	2	1
(4)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3	2	1
(5)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3	2	1
(6)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3	2	1
(7)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	3	2	1
(8)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3	2	1
(9)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3	2	1
(10)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해준 경우	3	2	1
(11)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3	2	1
(12)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3	2	1

※ (8)과 관련 참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시급의 1.5배 이상을 받아야 함

□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직접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배경문항에서 현재 혹은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응답 즉, 5번문항 혹은 6번문항에서 ②, ③, ④, ⑤에 응답한 사람들만 응답)

항목	있다	없다
(1)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	1
(2)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	2	1
(3)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경우	2	1
(4)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2	1
(5)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 받지 않은 경우	2	1
(6) 계약된 근로(채용)기간 전에 계약해지를 강요받은 경우	2	1
(7)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가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2	1
(8) 유급휴일과 휴가를 못 받은 경우	2	1
(9)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해준 경우	2	1
(10)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2	1
(11)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 못 받은 경우	2	1

※ (7)과 관련 참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시급의 1.5배 이상을 받아야 함

□ 귀하께서는 노동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이나 정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항목	많이 있다	조금 있다	전혀 없다
(1) 학교에서 노동권(노동인권 또는 노동기본권)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2	1
(2) 학교 이외의 곳에서 노동권(노동인권 또는 노동기본권)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2	1
(3) 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서 노동권(노동인권 또는 노동기본권) 관련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3	2	1
(4) 노동권(노동인권 또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3	2	1
(5) 본인이나 아는 사람이 노동(근로)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아서 전문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3	2	1

☐ 만약 귀하가 근로 관련 부당한 피해를 받는다만 도움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 ① 관련 상담 등을 해주는 기관에 도움 요청
- ② 고용노동부나 노동관서에 도움 요청
- ③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도움 요청
- ④ 학교 선생님(혹은 교수님)에게 도움 요청
- ⑤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도움 요청
- ⑥ 노동조합에 도움 요청
- ⑦ 그냥 무시하고 넘어감
- ⑧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음

IV. 청소년 근로환경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도움정도

☐ 귀하께서는 중앙부처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항목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별로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1) 여성가족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4	3	2	1
(2) 고용노동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4	3	2	1
(3) 교육부가 근로청소년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4	3	2	1
(4)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4	3	2	1
(5)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4	3	2	1
(6) 교육부/교육청이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4	3	2	1

-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란 청소년들의 노동현장에서 경험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아르바이트 현장 도우미를 연계하여 밀착상담, 현장방문, 노동관서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설치한 기관임
- ※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란 공인노무사를 통해 부당피해사례를 지원하고 청소년 근로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인권 교육 등을 하는 고용노동부가 설치한 기관임

□ 귀하께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양쪽 모두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인지여부		도움정도			
	알고 있다	모른다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	대체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1)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2	1	4	3	2	1
(2)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지원	2	1	4	3	2	1
(3)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	2	1	4	3	2	1

□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양쪽 모두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인지여부		도움정도			
	알고 있다	모른다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	대체로 도움이 될 것 같다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1) 청소년의 노동인권 관련 상담서비스	2	1	4	3	2	1
(2) 청소년 대상 노동권에 대한 자료제작 및 배포	2	1	4	3	2	1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2	1	4	3	2	1

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

□ 귀하께서는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부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별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제공	4	3	2	1
(2) 청소년 대상 일자리 정보서비스 확대	4	3	2	1
(3) 청소년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감독 강화	4	3	2	1
(4) 청소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4	3	2	1
(5) 노동관련 법률·행정 용어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	4	3	2	1
(6)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검진 의무화	4	3	2	1
(7) 일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4	3	2	1
(8)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감독 강화	4	3	2	1
(9) 부당한 임금미지급이나 임금삭감으로부터 보호 강화	4	3	2	1
(10) 학교에서 노동인권(권익) 교육 강화	4	3	2	1
(11) 학교 내에 노동인권 관련 상담 구제 서비스 체계 마련	4	3	2	1
(12) 업주와 동료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4	3	2	1
(13) 고객의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4	3	2	1
(14) 성희롱·성추행으로부터의 보호	4	3	2	1
(15) 일하는 청소년에게 노사기구 참여 보장	4	3	2	1
(16)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인력 및 역할 확대	4	3	2	1
(17) 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법 위반행위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4	3	2	1
(18)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상담 및 구제 서비스 실시	4	3	2	1
(19)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전환	4	3	2	1
(20) 고용주 및 성인 대상으로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교육 강화	4	3	2	1

♪ 설문에 응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Support Plan for Youth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work environment of Korean youth and to suggest support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actual conditions and needs of Korean youth with regard to their work environment, and presented implications and support measures based on overall surroundings and policy alternatives to better youth work environment. To begin with,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preceding works on youth work environment and policy trends in youth labor protection.

This study surveyed around 500 people aged 15-24 years, which primarily explored Korean youth over: 1) their levels of understanding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for work environment protection, 2) their perceptions and experiences related to work, 3) their knowledge of government policies for youth work environment and the levels of assistance they receive, and 4) their needs for government policies to improve youth work environmen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en policy tasks in

five areas under the vision of 'Youth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as follows:

Youth labor market: Provide high school graduates with jobs in the public sector, and establish a job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youth

Supervision of workplaces hiring youth: Strengthen supervision of paying unfair wages for youth workers, and increase the number of labor inspectors dedicated to youth

Youth workers' right to health: Implement mandatory medical check-up for youth workers, and introduce mental health care services for youth workers

Education of labor rights: Increase the number of youth eligible for labor rights education, and reinforce labor rights education for employers and teachers

Foundation for labor rights counseling services: Expand regional centers to strengthen the role of youth workers protection centers as a hub, and establish a linked and integrated system across ministries serving youth workers

In Korea, the issue of youth labor has been pushed aside by school education and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ereby receiving less attention and support. Authors hope that the findings and policy suggestions in this study can help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ke policies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for Korean youth.

Keywords: Youth Workers, Work Environment, Labor Rights, Workers' Rights, Counseling Service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 고유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최정원·강정한
-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성윤숙·김승보·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황세영·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변금선·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이경상·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서정아·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남화성·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문호영·염유식
-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자·김희진·이민하·김진호
-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자·김희진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이윤주·송민경·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성은·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김준엽
-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유민상·김창환·정지운 (자체번호 19-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Ⅱ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현·유민상(자체번호 19-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임희진·백혜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 시 과 제

-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탁과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인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인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4종)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교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 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해정·류정희·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현·하형석·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13~14)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 방안(11.7)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이중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추진사항' 개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인 쇄 2019년 11월 14일

발 행 2019년 11월 1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